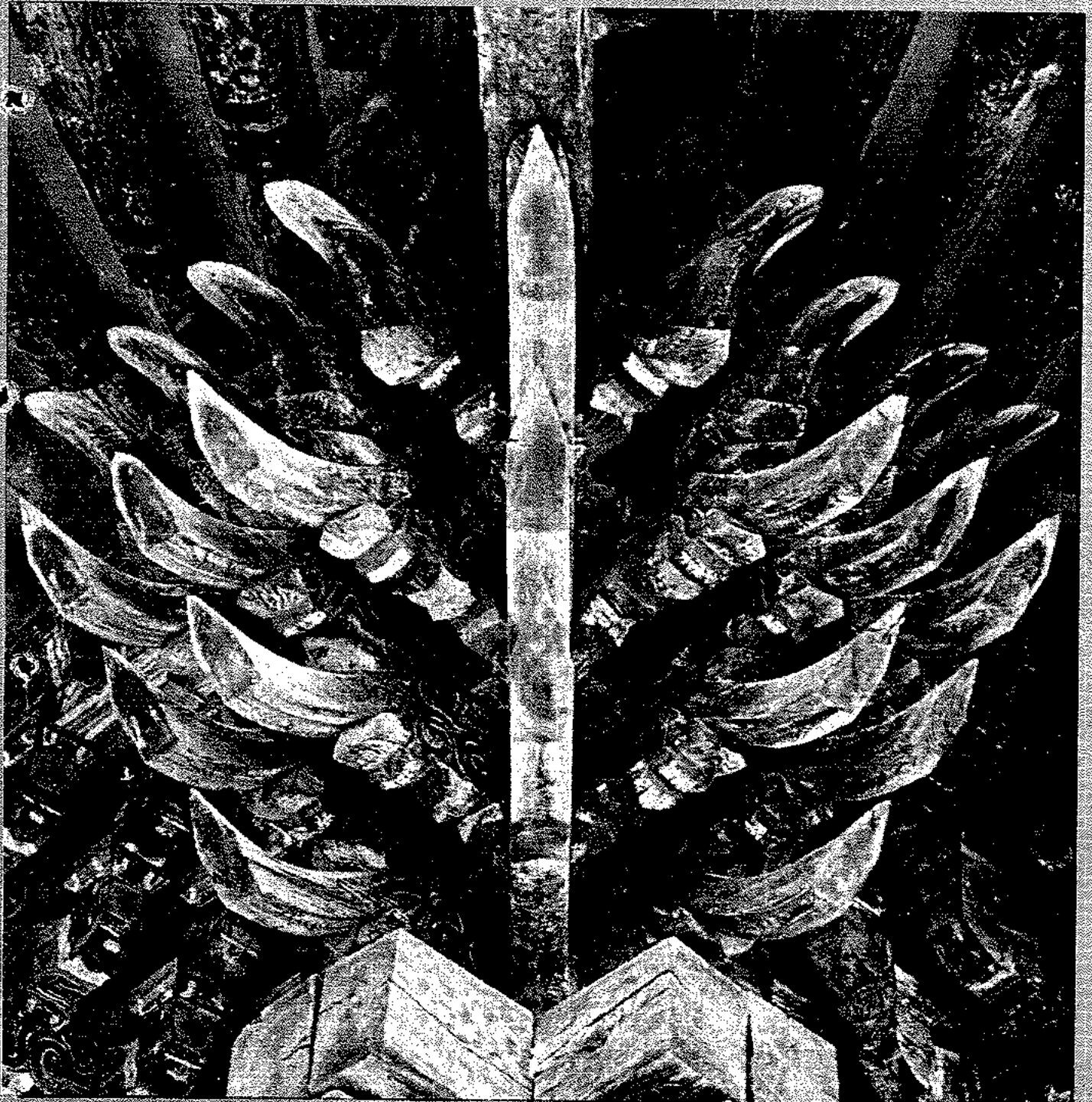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録日字：1967年 3月23日 登録番号：제 리-1251 月刊 建築士
発行日字：1978年 10月31日 毎月1回発行 通巻 第116号

197810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來蘇寺大雄殿 外部科共〉

李朝中期와 末期로 보는 것이 있으나 平面構成에서 架構手法에 이르기까지 中期的의 要素가 많은 多包式 건물이다. 사진은 귀包細部로서 昌枋과 平枋이 隔柱에서 각각 十字맞춤되고, 그 위에 柱頭를 놓아 귀包를 짰다. 出目數가 많아 질수록 귀包도 복잡해 진다. 45°角으로 짜여진 귀살미를 中心으로 左右 4列의 장혀뿔목이 살미 모양으로 彫刻되어 結構 展開된다. 가장 무거운 荷重을 받고 있는 部分이 귀포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고 施工도 어렵고 까다로운 점이 많다. 귀포위에 짜여진 櫨木이 扇子櫨이다. 扇子櫨의 짜임새 技法에 따라 집의 전체 모양이 결정된다.

編纂委員會

委員長 俞 景 哲
委 員 安 箕 泰
" 吳 昌 熙
" 尹 道 根
" 李 璟 會
" 李 文 輔
" 鄭 日 榮
" 黃 一 仁

月刊 建築士

1978. 10

目 次

□ 建築行政機構 改編을 促求한다.....	金熙春.....	2
協會記事		4
建築士法 施行令 改定令.....		10

第13周年 紀念 學術討論主題論文

建築許可制度.....	李文輔.....	16
建築設計審議.....	金眞一.....	19
建築工事監理.....	李明煥.....	23

病院建築78. (2).....	金東珪.....	26
學校建物の 適応性과 融通性研究分析(2).....	劉香山.....	30
屋外騒音과 防止	李聖國.....	36

(特輯) 創立13周年 紀念大賞施賞作品및 1977~1978

1年間 會員作品 紙上展.....		39
-------------------	--	----

建築行政相談.....		63
構造計算을 하기위한 電子計算機에 關하여	鄭日榮.....	75
創作人과 共同体意識	姜斗錫.....	78
建築法令 및 建築條例參考文案內.....	서울시지부.....	80
海外作品.....	A+U.....	85
建築許可統計.....		89

發行人兼 編輯人・姜奉辰 / 登錄番号・第4-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23日 / 月刊'建築士'

發行日字・1978年 10月31日 / 通卷 第116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區 端麟洞 89番地

〈非売品〉 電話：73-9491~2

印刷人：申 基 澈 (合同社) 中區 忠武路3街59-8 266-2583

建築行政機構 改編을 促求한다

金 熙 春

建築은 文化의 尺度라고 하며 文化는 經濟의 뒷받침 밑에 成長한다.

우리나라 經濟는 予想보다 훨씬 빨리 發展하고 있다. 80年代의 우리의 生活의 豊饒함을 期約하면서 모든 文化의 發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建築의 傳統文化 定立을 위한 準備作業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建築은 많은 勞働力과 資材가 必要하며 일단 지어진 建築은 종던 나쁘던 오래 持續되어 우리 文化의 하나의 表現이 되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建築은 經濟的, 文化的 側面에서 볼때 그 比重이 大端히 크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建築 政策은 慎重히 다루어져야 한다. 우선 政策을 樹立하고 施行하는 行政機構의 改編이 절실히 要望되는 바이다.

現在 建築行政機構體制는 本然의 目的과 機能을 效率의으로 遂行하기에는 몇가지의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그 代表的인 問題點으로서는 우선 建築行政機構는 中央官署의 여러 部処에 여러가지 形態로 分割 配置되어 있어 제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할뿐 아니라 建築關係法 施行上에도 難點이 뒤따르고 있다. 地方官署의 境遇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保健關係業務開設 許可는 保健課에서 取扱하나 建築物은 建築法에서 規制하고 있으므로 建築課 또는 建築係에서 技術的 檢討가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이 2개의 機構는 전혀 別個의 原則에서 構成되어 있어 그 運營은 円滑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多元的인 運營은 여러가지 浪費와 차질을 招來하기 쉬우며 實地로 行政機能을 弱化시킬 憂慮가 있다. 더 나아가서 都市環境 住居狀態 등이 우리가 期待하는 바와 어긋나게 進行될 可能性이 많다.

都市公害問題 國土造景化問題 爆發的인 人口增加에 따른 都市住宅問題 交通駐車問題 等 農村環境 近代化問題 等 이런 問題들이 相互 關聯性이 깊은 理由는 모든 問題들이 建築이 直接的인 對象이 되거나 또는 建築이 媒介體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未來像을 左右할 위의 重要하고도 時急한 問題 解決方案은 建築을 主軸으로 하는 一元化된 綜合的인 行政機構 編成에 있으며 또한 일의 進行에는 高位에 屬屬 強한 뒷받침이 必要하다.

아래에 建築行政機構改編案을 例示하고자 한다. 中央官署機構 속에 住宅都市部(仮稱) 또는 建築庁 (仮稱)을 둔다.

內容:

1) 國土計劃局

國土 全般에 걸친 綜合計劃 樹立, 計劃의 對象은 人口 配定, 國土造景化 國土의 物理的, 社會的 形態에 順應할 수 있는 産業構造와 形態의 適切한 按配 等.

2) 都市開發局

都市公害, 都市再開發, 都市美觀 等 問題를 담당한다.

3) 農村指導局

各 地方別 農村近代化 綜合計劃樹立 새 마을事業地區의 團地計劃 住宅計劃 地域的 建築資材開發 生活樣式改善 等 問題를 담당한다.

4) 住宅局

都市住宅計劃, 住宅의 標準化, 建築資材部品の 規格化, 都市庶民住宅의 改善과 組立化 等 事業을 담당한다.

5) 建築局

建築法 建築士法 施行에 關한 問題를 다룬다.

6) 社會福祉施設局

社會福祉施設, 體育施設 및 醫療施設 等の 計劃과 運營 管理에 關한 問題를 調整한다.

7) 資勞動員局

위의 事業을 爲한 資材受給計劃과 勞力動員計劃樹立 技能者의 技術指導 訓練 等 事業을 담당한다.

8. 建築管理局

持殊部処를 除外한 모든 部処의 官庁 建築의 計劃樹立 維持, 管理 等の 事業을 담당한다. 文化財 建築의 保存, 管理, 復元 等 事業을 담당한다.

9) 國立建築研究所

各種 建築의 計劃的研究 建築材料研究 建築構造研究 等を 擔當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賦存材料의 開發研究 및 建築에 利用될 太陽熱研究 風力研究 가장 時急히 要望되는 火災 地震 等 防災에 關한 研究 等도 遂行되어야 할 것이다. 海外建設에 關한 情報수집도 담당한다.

위의 같은 中央官署 建築行政의 一元的이며 綜合的인 體制下에 計劃된 事業은 地方官署와의 縱的인 連絡에 依하여 執行하게 된다.

위의 改編案에서 提示하고 있는 內容의 各部署는 現在의 行政機構속의 여기 저기에 分散되어 있으며 名稱과 規模는 多少 다르지만 同一한 機能을 갖고 事業遂行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意味에서 根本的인 改編이 아니고 오히려 統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國內外에서 育成된 有能한 建築家, 都市計劃家, 技術者들과 現在의 行政機構에 屬하여 있는 各部署의 이 方面의 專門家들을 適在適所에 再 配置하여 그들의 能力을 效果的으로 國家行政에 適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合理的으로 行政을 運營 管理하므로써 技術의 發展과 모든 浪費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各 教育機關에 從事하는 사람들도 積極 參與시켜 建築에 關한 各種研究 政策 等이 教育에 積極 反映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工大 教授

本協創立第13周年紀念 協會賞審査

일 시 : 1978. 10. 22. 13:00

장 소 : 本協會議室

審査委員 : 委員長 姜奉辰(本協會長)
 委員 領武城(建築學會會長)
 委員 李丞雨(建築家協會副會長)
 委員 姜明求(本協前任會長)
 委員 金熙春(서울工大教授)
 委員 尹道根(弘益大教授)
 委員 李聚會(延世大教授)
 委員 朴胤成(高麗大教授)
 委員 俞景哲(本協理事)

審査方法

作品部門

住居用과 非住居用으로 区分하고 住宅은 大賞에서 除外한다는 原則과 他団体에서 受賞된 作品및 本協 1, 2회 施賞時 受賞된 作品도 그 対象에서 除外한다는 前提下에 審査를 하였으며.

論文部門 :

論文 및 施工部門 審査는 小委員會를 構成 別途審査키로 決定 各各別途審査에 들어가 論文部門에서는 會員과 非會員으로 나누어 個別審査하였으며, 첫째 集筆目的을 本協「建築士」誌에 寄稿를 위한 論文을 予先의 으로 審査對象으로 壓縮하여, 學術 創意性에 主眼點을 두고 審査를 하였다.

施工部門 :

大規模 施工業體보다는 規模는 작으나 國內技術을 最大限動員하고 精誠껏 그使命으로서 建築施工에 臨하여 業績을 남기고 新開發 單種業으로 지난 一年間 貢獻한 業體를 優待하였다.

當選作品

大 賞 留保

協會賞(作品) 黃 一 仁 김현사 건축 연구소
 (論文) 金 眞 一 漢陽工大教授
 優秀賞(作品) 金 枝 泰 삼아건축사무소
 優秀賞(作品) 金 仁 錫 우신건축연구소
 (論文) 金 鴻 植 금성종합설계공사대표

아날 1次審査選定 作品을 보면

가) 住居用

황일인, 유승근, 강중윤, 홍순인, 배동권
 조구현, 강순일, 공일곤, 유경철, 김기석, 정 소

나) 非住居

주영백, 김지태, 김인석, 홍철수, 차동명, 박운옥,
 송기덕, 박상호, 안창원, 김정철, 이승우, 김기석, 안일성

施工優秀賞 : 우림공크리트株式會社



본협제 2 회회장기쟁탈축구대회

協會記事

일자 : 1978. 10. 13. 09:30~18:00

장소 : 서울 오류동 소재 (현송 럭비구장)

지난 10월13일 본협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국 회원의 체력향상과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로서 마련된 제2 회회장기쟁탈 전국시도지부대항 축구시합이 약500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속에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소를 벌였다.

이날 경기는 현송축구장 1구장·2구장으로 나누어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전,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단체상

우 승	전남지부팀
준우승	서울시지부 A 팀
3 위	강원도지부팀
4 위	충남지부팀
장려상	충남지부팀
응원상	전남지부
"	서울시지부
"	전북지부
입장상	제주지부

나)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전남 박재현 선수
우수상	서울 이성복 선수
최 다 득 점 상	강원 민경수 선수
최우수방어상	충남 이종휘 선수
감독상	경북 이수원 선수
감독상	경남 황문성 선수
미기상	경기 이일운 선수
미기상	충북 빈칠원 선수
인기상	강원 박종삼 선수
인기상	서울 송인창 선수
모범선수상	부산 정문일 선수
모범선수상	제주 고정식 선수
우수감독상	전남 조춘원 선수

다) 참가상 : 참가지부전원



우승을 한 전남팀의 수상광경



준우승의 서울A팀



3 등 강원도팀

서울市支部會員 自然保護

캠페인

78. 10. 20 서울支部에서는 會員(직원포함) 경기도 벽제근교 진달래동산 유원지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인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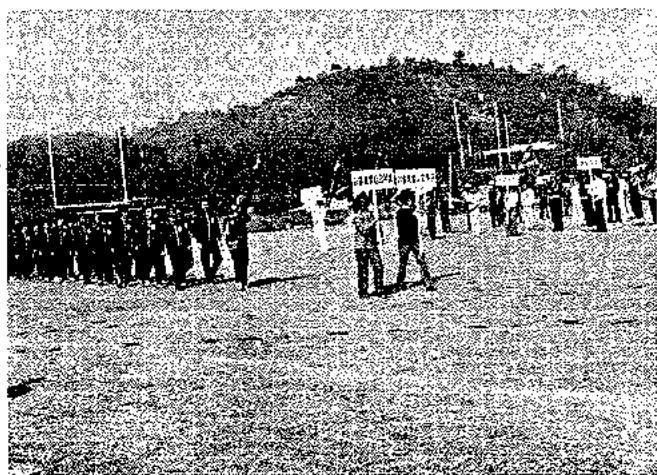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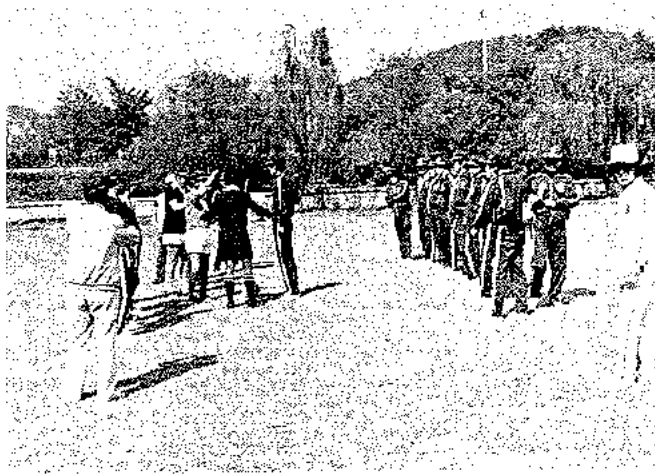
개회사를 하는 본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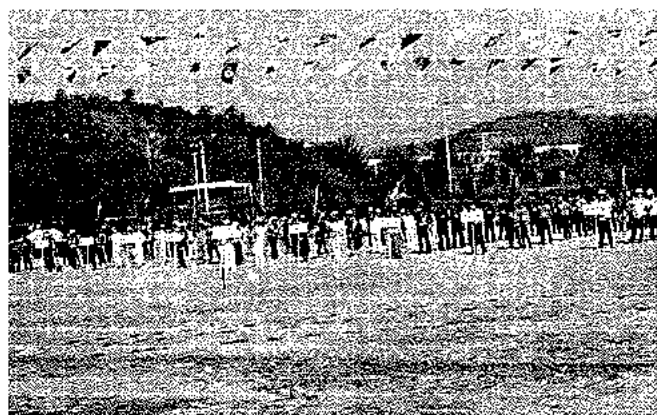
시축을하는 대회장



입장식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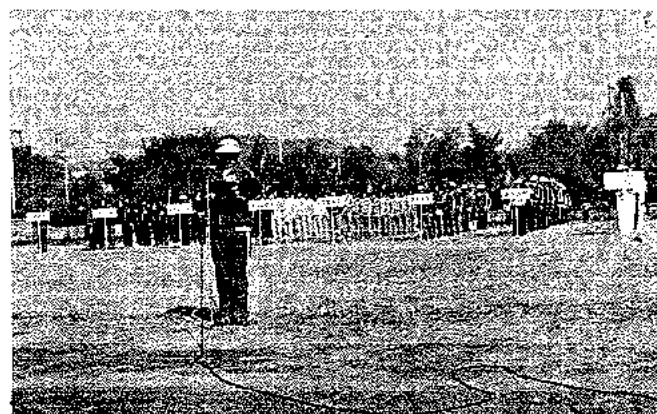
입원팀대 각지도지부장 대항전



입장식 광경



우승을 향한 집념의 일촉



선수선서



전남응원단의 단합된 모습

제18회 이사회의 개최

1. 일 시 : 1978. 9. 8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부의안건 : 가) 각종행사 개최 계획승인전
 - ① 회장기쟁탈 전국지부대항 친목 축구대회 개최
 - ② 심포지움 개최
 - ③ 협회상 시상 작품심사
 - ④ 회원작품 전시회
4. 결의사항 : 가) 제2회 회장기 쟁탈 전국지부대항 친목축구대회 예산은 4,500,000원으로 확정하고 세부시행 사항은 담당이사에게 위임토록 결의
 - 나) 심포지움 개최 소요예산은 국제 세미나 예산 1,000,000원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제를
 - ① 건축허가제도 문제
 - ② 건축심의 문제
 - ③ 건축감리문제로 결정하고 추진 담당이사인 "김두섭" 총무이사들 "장종울" 이사로 교체하기로 결의
 - 다) 협회상 시상 작품 심사위원회 구성은 총무이사 및 담당이사가 협의하여 회원중에서 1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작품심사기준을 78. 10. 1~10. 15까지로 결의
 - 라) 회원 작품 전시회 개최 계획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의
 - 리) 총무부 직원(사환) 여미애양 상조금으로 100,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의
(불우이웃돕기 56,148원, 경조비 43,856원 제 100,000원)

제19회 이사회의 개최

1. 일 시 : 1978. 9. 22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부의안건 : 가) 전북지부 임시총회 승인의건
 - 나) 체육대회 담당 임원 선정의건
 - 다) 직원 상조회 회칙 승인의건
 - 라) 감사실 운영방침 결정의건
 - 마) 예비비 사용 승인의건
 - 바) 기타사항
 - ① 직원채용에 관한 건
 - ② 윤리위원회 결의사항 수락의건
4. 결의사항 : 가) 전북지부 임시총회 승인의 건은 하기

로 결의

(9월23일자로 취임(지부장)키로 승인)

나) 체육대회 담당임원.

대회장 : 회장 부대회장 : 총무이사

진행위원장 : 한영수 준비위원장 : 유경철

섭외위원장 : 박우하 심판위원장 : 장종울

심사위원장 : 최춘화 규율위원장 : 양상규

다) 최춘화 감사와 총무이사가 연구 검토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결의

라) 직원 4명을 보충하되 총무이사 및 각

부 담당이사의 협의 채용토록 결의

② 전남지부 유연옥 회원의 자격정지 6

개월을 원안대로 승인

제20회 이사회의 개최

1. 일 시 : 1978. 9. 29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부의안건 : 가) 열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물 구조연구에 관한건
 - 나) 직원 채용에 관한 건
 - 다) 기타사항
4. 결의사항 : 가) 동 연구를 위해 예비비에서 300 만원을 사용승인하며 용역으로 연구토록 결의.
 - 나) 임시직 직원 2 명만 정식직원으로 채용토록 결의
 - 다) 징계 위원회에 회부했던 이규일 부장과 박영목 실장은 시말서를 제출토록하고 본건은 종결토록 결의

제21회 이사회의 개최

1. 일 시 : 1978. 10. 11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부의안건 : 가) 1979년 예산 심의에 관한 건
4. 결의사항 : 나) 실적회비 0.4% 정수 및 월정 회비를 4,170원을 5,000원으로하고 인건비를 20% 증액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금액 총액 5억 4천만원으로 책정 결의.
 - 나) 확정된 5억 4천만원중 직원상조회 예산 300만원 책정금액은 비축금액으로 놓아두기로 결의
 - 다) 본회 역대 임원 및 전국지부장 중에서

지금까지 본회 표창을 수상치 못한 회원을 중심으로 금번 총회에서 표창기로 결의.

제22회 이사회의 개최

1. 일 시 : 1978. 10. 20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부의안건 : 가) 회원 교육에 관한 건
4. 결의사항 : 가) 회원 교육에 대하여는 건설부 지시사항을 실시토록 결의하되 이에 따른 경비는 30만원씩 6회분 180만원을 1978년 예산중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그외 금액과 1979년 예산중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결의
- 나) 1978년 7월 11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협회광고에 대한 금액 330,000원(300 백만원)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결의
- 다) 제 13회 정기총회 개최경비중 부족금액 756,560원을 예비비 사용토록 결의
- 라) 서울지부소속 정성훈회원 사망보조금 지불의 건은 연고자나 직계가 아니므로 지불할 수 없는것으로 유권해석 되므로 지불치 않기로 결의

마) 금번 총회에 추대된 대상자 제주지부장기정 회원은 정관 제 7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만 65세에 미달되므로 대상자가 안되므로 판정 다음기회에 추대하 기로 결의

바) 금번 총회에 표창할 회원 및 직원은 각 지부에서 상신한 명단을 불구하고

진직 임원 및 각 시도지부장 중에서 지금까지 수상치 못한 임원에게 수상토록 결의

사) 금번 총회에 직원 표창은 본부지도사업부 허종택, 서울지부 이정남, 경북이 자리, 부산 이영환 4 명을 수상기로 한.

제10회 편찬위원회 개최

1. 일 시 : 1978년 10월24일(화) 16:00시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토의안건 : 가) 9월호회지 학평및 10월호회지편집기획(안)검토
- 나) 기타사항
4. 참 석 : 위원장 : 유경철
위 원 : 이경희 오창희
윤도근 안기태
이문보 정일영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서 울
성 명 : 윤 영근
명 칭 : (주) 매일건축연구소
소 재 지 : 중구충무로 4 가125-1
면허번호 : 1-1386
등록번호 : 805
월 일 : 9. 26



본 적 : 충 남
성 명 : 구 성형
명 칭 : 양우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종로구창성동122-12
면허번호 : 1-889
등록번호 :
월 일 : 9. 26

서울시지부회원 사무소이전

성명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면허번호	월일
김진성	삼판건축연구소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6-11	64-3595	2-11	10	9. 5
오성근	(주) 대한건축연구소	용산구 동자동 17-18	795-2553	1-720	952	9. 5
손민수	경인건축연구소	성북구 삼선동 5가 298-3	92-1931	1-58	404	9. 5
조건영	기인건축연구소	강남구 학동 산16-89	58-5177	1-761	1431	9. 5
이일란	삼인건축연구소	강남구 천호동 410-246	48-8775	2-485	1689	9. 5
김기석	아람건축연구소	중구 정동 1-11	23-2334	1-511	1238	9. 5
이상수	(주) 한양엔지니어링	영등포구 여의도동 94-151	63-6870	1-660	697	9. 5
김화옥	삼양건축연구소	서대문구 용암동 96-2	389-0132	2-390	625	9. 5
김철희	(주) 정진엔지니어링	영등포구 독산동 55-2	85-2613	1-419	103	9. 5
이용환	아랑건축연구소	관악구 신림동 527-2	86-2408	2-429	1377	9. 5

강원지부회원 사무소이전

손준섭	동아건축설계사무소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206	홍천제 1호	1-66	8. 30
-----	-----------	--------------	-----	--------	------	-------

경북지부회원 사무소이전

김남수	공평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 동문동13	22-9772	1-16	1-307	8. 17
이상익	신라건축사무소	대구시 중구 동문동13	22-9772	2-45	2-74	8. 17
이성영	미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 동문동13	22-9772	2-49	2-513	8. 17
김대룡	동아건축연구소	대구시 동구 범어동 189-5	44-8356	1-17	1-767	8. 21
안상은	동아건축	대구시 동구 범어동 189-5	44-1510	2-10	2-1741	8. 21
이근상	동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동구 범어동 189-5	44-1510	2-34	2-216	8. 21

경남지부회원 사무소이전

백금웅	아주건축설계공단	마산시 장군동 4가 11번지	2-4157	마산 제18호	1-205	10. 3
-----	----------	-----------------	--------	---------	-------	-------

서울지부 전임회원

양대원	선광건축연구소	중구 인현동 2가 192-30	266-2459	2-492	510	9. 5
-----	---------	------------------	----------	-------	-----	------

경기지부 전임회원

임병석	세영건축설계사무소	인천시 남구 주안동 248		제65호	1-426	8. 31
-----	-----------	----------------	--	------	-------	-------

경북지부 재임회

김준필	동한건축	대구시 중구 북성로 1가 75-1	22-0795	1-43	1-756	9. 2
-----	------	--------------------	---------	------	-------	------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

◎ 대통령령제9,183호
1978년 10월 6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제 1 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사감리) 법 제 2 조 제 4 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한 사항
2.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 3 조(표준설계도서등) ①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건설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거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10개동 이상을 설계하게 되어 2층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다만, 연면적이 85평방미터를 넘는 주택(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넘는것)의 설계도서를 제외한다.

②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는 건축법에 규범한 구조이외의 구조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새로운 공법이라고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나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당해 설계도서를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제 1 항 및 제 2 항의 표준설계도서와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의 관리·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건축사면허신청 등) ①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제 5 조(건축사면허 등) ① 건설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할 때에는 건설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신상변동신고 등) ① 건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 제 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신고서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본 적

2. 주 소

3. 성 명

4. 생년월일

5. 군 무 처

②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의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시험방법 등) ① 시험은 제 1 차시험 및 제 2 차 시험으로 구분하고, 제 1 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제 2 차 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으로 이를 실시하며, 제 1 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 2 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은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8 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 1 차시험과목(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가. 건축계획

나. 건축구조

다. 건축시공

라. 건축법규

2. 제 2 차시험과목(주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가. 건축설계

나. 건축계획

다. 건축구조

라. 건축시공

마. 건축법규

②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은 자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은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건설부장관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1 차시험을 면제하고, 제 2 차시험과목중 건축법규 이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이 경우에 제 2 차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으로 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과목을 과할 수 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시공분야의 기술사 면허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건축시공과목을 면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분야의 기술사면허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과목을 면제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합격기준)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평균성적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시험 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 인정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제13조(건축사위원회) 시험과 건축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축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및 위원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차기시험시행 공고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건축사의 면허취소,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그 폐쇄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설계도서의 신고 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정면도·평면도·추정공사금액 및 설계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도서가 건축물의 마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는 제1항의 설계도서 기타서류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설계도서를 합동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등록신청)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실원증명서

3. 면허증사본
4. 건축보조사 및 직원의 명단
5. 시설보유증명서
6. 사무소안내도
7.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23조(등록기준) 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 조사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소
2. 전 화
3. 제도판

- ② 제1항의 건축보조사 및 시설의 기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의 인구규모와 단독건축사사무소 또는 합동건축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별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중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의 과반수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 ④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플랜트 엔지니어링용역업체와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특수공장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가 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⑤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은 건축사·건축보조·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및 제도판수로 한다.

제24조(등록증의 교부등) ① 건설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의 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사무소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건축사사무소 등록부와 등록증의 서식 및 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 ① 법 제2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건축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로 한다.

1. 단독주택·다만, 인구 20만 미만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내의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로서 연면적 1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3. 2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 ② 법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행하게 할 수 있는 조사 및 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에 적합한 설계도서인가의 여부
2.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3.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인가의 여부

제26조(합동사무소 등록인의 책임) ①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건축사는 당해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명으로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1.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각호의 사항

②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날인하여야 할 건축사의 수와 확인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면허증 등의 게시와 장부의 비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라 한다)는 건축사사무소내에 면허증과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합동사무소의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 건축사)이 당해 개설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교육) ①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협회 기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 법 제28조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 제 1 항 제 6 호 또는 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8조 제 1 항 제 8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건축보조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다. 법 제28조 제 1 항 제 9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라. 법 제28조 제 1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한 경우

2.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1 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보수기준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업무에 관한 보수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
| 1. 목적 | 7. 회비에 관한 사항 |
| 2. 명칭 |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 3. 사업 | 9. 자산에 관한 사항 |
| 4. 사무소의 소재지 | 10. 임원에 관한 사항 |
|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11. 회계에 관한 사항 |
|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

제33조(사업) 협회는 법 제3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교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4조(보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보고 조사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2. 제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수리에 관한 권한
4. 제2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면허증 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 호 건축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내에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면허증 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은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제 4 조 제 2 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 호 건축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서에 제 23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자연 보호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불의 오락,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建築許可制度

李文輔

※ 本稿는 創立 13周年 紀念 學術討論 主題論文임

1. 建築許可制度의 개요

우리나라 建築許可制度는 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비롯된다. 이 規定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建築許可의 대상

(1) 実体 : 建築物과 工作物이 대상이 된다.

建築物에 있어서는 鐵道·軌道敷地の 건축물,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건축물은 協議 또는 承認의 대상이 된다. 소규모의 건축은 地域 등에 따라 申告의 대상이 되거나 제외된다.

工作物에 있어서는 建築物과 관계깊은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은 許可의 대상이 된다.

(2) 行為 : 建築(新築·増築·改築·再築·移転), 用途變更, 大修繕이 대상이 된다. 허가대상이 되는 用途變更에 대한 구체적인 規定은 아직 없다.

(3) 地域 : ① 都市計劃區域內, ② 市邑의 區域內, ③ 高速國道·一般國道·國有鐵道の 中心線으로 부터 양측 500m 이내의 區域內, ④ 國土利用 管理法에 의한 基準地價告示對象地域·工業地域 및 聚落地區內가 전면적인 허가대상구역이 되고, 이 이외의 區域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것만이 대상이 된다.

〔2〕 建築許可의 權限 등

(1) 建築許可權은 市長·郡守에게 있다. 法會의 規定에 의하여 區廳長, 邑·面長에게 그 權限을 위임할 수 있다.

(2) 建築許可의 事前承認 : 일부 大規模 高層建築物 등의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事前에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3) 許可処分 등에 대한 是正命令 : 建設部長官·道知事는 市長·郡守 등의 行政処分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때에는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4) 建築許可에 대한 制限 : 建設部長官은 國防·經濟

地域計劃 및 都市의 過大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3〕 建築許可를 받아야 할 시기 등

(1) 建築許可를 받아야 할 시기 : 建築하기 전에 즉 "미리" 받아야 한다.

(2) 建築許可의 着工前 有效期間 :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1年 이내

(3) 建築許可의 取消 등 : 違法한 建築·大修繕, 기타 소정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市長·郡守는 建築許可를 取消하거나 그 效力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建築許可規定 위반시의 罰則

特殊建築物이나 3層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許可없이 建築·大修繕한 때에는 6月 이상 3年 이하의 懲役に 처하고 3,000만원 이하의 罰金を 併科한다. 기타의 건축물의 경우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2. 建築許可制度의 필요성과 그 機能

建築許可制度(또는 그 유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를 建築許可의 대표적인 機能과 같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事前是正機能

建築法은 그 내용이 最低基準이라 하지마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個人의 自由意思를 구속하게 마련이므로 모든 건축활동에 있어서 건축법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建築法에 있어서는 여러 단계의 違法防止對策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時期上으로 구분하면,

事前防止規定……建築許可規定 등

中間防止規定……着工申告와 檢査, 中間申告와 檢査,

竣工申告와 검사 등

事後防止規定……違反是正命令, 維持管理報告, 罰則規定 등

이 중에서 建築許可는 어떤 建築計劃의 내용이 이법의 규정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됨으로써 違法建築을 事前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豫防의 機能이 있다.

〔2〕國防・經濟・社會的인 調節機能

建設部長官은 國防上, 經濟上, 地域計劃 및 都市의 過大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建築計劃의 내용이 建築法 및 關係法令의 여러 규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건축허가의 充分條件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한을 할 때의 절차는, 建設部長官은 그 目的・対象區域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市長・郡守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市長・郡守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조절에 관한 권한은 建設部長官에게만이 부여되어 있다.

3. 建築許可制度上的 문제와 연구과제

建築許可制度에 있어서의 문제는 建築法上的 문제보다는, 주로 運用上에 문제가 있다. 그 주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建築許可行政能力의 未及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당시, 建築許可対象地域은 都市計劃區域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후 오늘날에 이르는 사이에 都市計劃區域이 新設 追加되고 또 擴張되었고, 모든 市・邑의 구역, 国道・鐵道の 沿邊區域, 国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基準地價告示対象地域・工業地域・緊落地域 등이 전반적인 許可対象區域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郡・面에도 建築職公務員의 増員・配置를 요구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급증한 건축활동은 종전의 상황에서 벗어나 高層化・大型化함으로써 構造・設備 등이 高度化하여, 建築許可行政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고도의 능력과 더욱 풍부한 경험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公務員의 離職을 유발하였다.

또 수년전부터 海外建設輸出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流出을 가속되고 얼마 안되는 建築職 公務員의 충원도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다.

건축직 공무원의 대량 부족을 당연히 建築許可 行政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建築法에 있어서 큰 規則事項의 하나인 用途變更에 관한 行政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임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다음에 언급될 苦肉之策이라 아낄 수 없는 여러가지 운용제도를 창안하게 된다.

사회가 개발될수록 전반적인 許可対象區域은 全國區域으로 확대될 것이며, 건축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처하여 建築職 公務員의 확보에 대담한 결단이 요

구된다. 그것은 우선 報酬의 現實化와 業務環境의 改善이다.

〔2〕建築許可에 있어서 建築計劃의 審査內容과 責任
建築許可處분에 앞서서 建築行政庁(즉 市長・郡守)은 무엇을 審査하여야 하는지의 明文規定은 없지만, 우선 建築法 및 同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의 규정 그리고 關係法令의 규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高層・大型화된 建築物의 許可申請이 폭주하는데, 제한된 시간과 담당 공무원으로 그 모두를 建築計劃의 審査를 함에 있어서 그 많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철두철마 점검할 수 있는지——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자신있는 대답은 못할것이다. 예를들어 建築許可申告書에 첨부된 그 많은 構造計算書를 일일이 검사할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무리하다.

실제로 쉽게 발견할 수 없고 고도의 기술능력을 요하는 사항에 결함을 가진 建築計劃이 실현이 된다고 하였을때 담당 공무원도 책임이 추궁될 것이며 設計者인 建築士가 制裁될것이다.

따라서 建築許可를 하기 위한 建築計劃의 審査에 있어서 그 內容과 責任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 方案의 예로 생각할 수 있는것은, 建築法中 소위 集團規定(法 第3章 道路 및 建築線, 第4章 地域 및 地區內的 建築物, 第5章 建築物의 面積 및 높이)은 建築許可行政庁이 하는 建築計劃의 審査內容으로 하고, 소위 個體規定(法 第2章 建築物의 地・構造의 建築設備)은 建築士의 責任으로만 한다. 이것이 可能하다면 建築許可行政의 간소화・신속화, 責任限界 등이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것이다.

〔3〕建築法과 行政의 符合

建築行政의 근거가 되는 法律上的 여러 규정이 완벽하지 못하면, 그 行政은 혼란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건축법의 여러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하더라도, 건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都市計劃行政 기타 關係行政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면 결국 建築行政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또 建築計劃上的 하자가 建築許可申請 이외의 여러 규정 또는 他法令上的 여러 관계규정에 대한것이더라도 당연히 不許可處分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建築許可制度上的 잘못으로 인식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예는 있으므로 우선 關係法令 規定의 整備, 특히 裁量規定의 極小化를 계속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關係行政의 未及으로 인한 建築許可 抑制 등이 없도록 建築行政能力을 시급히 보강하여야 할것이다.

〔4〕建築許可節次 改善策과 建築士의 連帶署名

建築許可節次 改善策의 하나로 建築許可申請書에 設計者인 建築士 이외의 제 2의 建築士의 連帶署名으로서 建築許可行政의 審査節次를 대행한다는 편의상의 행정운용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行政制度는 第2의 建築士가 連帶責任署名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設計圖書를 철저히 심사하게 될것 이므로 違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審査節次를 대행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不足을 보완할 수 있고, 建築許可行政의 신속·간소화를 기할 수 있다는 착상에서 비롯 된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建築許可상의 문제를 현실적 으로 해결해보자는 비상한 研究結果임에 틀림 없으나 여 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建築許可는 建築法에 의하여 市長 및 郡守에게 부여된 고유의 权限이며 責任이다. 区庁長이나 邑·面長 등 下級官庁에 그 权限을 위임하는 경우 모두 建築法상의 明文化된 規定에 의하고 있다.

建築士의 連帶責任署名에 의하여 建築計劃의 審査 없이 建築許可処分을 한다는것은, 連帶責任署名을 한 建築士가 担当公務員을 대신하여 建築許可処分을 담당하는것 과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建築士의 連帶責任署名이 있 다 하더라도 市長·郡守는 建築許可가 고유의 权限이며 責任이므로 建築許可処분에 앞서 당연히 建築計劃의 審査를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行政運用은 建築法の 改定 없이는 곤란하다.

한편 위와 같은 行政運用을 전면적으로 제도화하여 실

행하는 경우, 建築士는 本人의 意思에 반하여 報酬 없이 他人의 業務를 審査하여야 하고 또한 共同으로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建築設計活動이 創作活動이라는 주장에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4. 綜 合

(1) 현시점에서 建築法상의 許可制度에는 부분적인 미비점이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는 그 행정운용에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행정운용의 改善策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建築法을 개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2) 앞으로 建築許可対象은 社会發展과 더불어 그 대상 지역이 全国的으로 擴大될것이 예상되며, 대상건수도 더욱 폭주하게 될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行政体制와 유능한 建築職 公務員의 大量確保에 결단이 필요하다.

(3) 建築許可를 위한 建築計劃의 審査에 있어서, 非現實的인 審査를 탈피하고, 현실적으로 責任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制度가 필요하다.

(4) 조속히 전반적으로 法令상의 未備規定을 보완하고, 裁量規定을 극소화하는 한편 法令規定대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關係行政이 整備되어야 한다.

(5) 建築士의 連帶署名에 의한 행정운용에는 法律上, 또는 建築의 本質上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

(6) 建築行政은 현재의 統制行政으로부터 助長行政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東国大学校教授)

建築設計 審議

金 眞 一

※ 本稿는 創立 13周年 紀念 學術討論 主題論文임

1. 基準은 目標가 아니라 最低線이다

우리가 職務上 다루는 하나의 建築이 實像으로 形成되어가는 과정에는 어떤 尺度에 의한 基準이 있다. 그것이 동일 규모에 같은 機能의 建築에서 조차 지역이나 建築主에 따라 그 基準은 다를 수 있다.

이 基準이라는 것은 法の 물이 같은 것이고 어느 경우에서나 그렇게하면 된다, 또는 그것을 지키면 許容된다라는 最低線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大學에서 60點이 落第를 면하는 最低點인것이지 그 점수가 바람직한 점수가 아닌것과 같다. 따라서 基準의 뜻을 되새기면 그 映像과 實像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類이전 創作世界에서는 基準이니 십의 따위는 어느모로 봐도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오늘 本人에게 주어진 主題『建築設計審議』는 어찌보면 創作의 방해자, 同業間의 교란자와 같은 役이 될까 두려워 적지아니 망설였으나 代打者가, 아니 打者가 없어 대타자로 등장하는 것이니 理解하시기 바란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두 本人의 의견이며 서울시 建築審議委나 建設部의 中央設計審議委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 創作과 審議의 갈등

名分이나 이유는 여하튼 作品과 審議가 양립되고 있는 현실의 갈등을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考察하여 이 냉혹한 사실에서 調和點을 모색하는데 主題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분은 當局의 審議행위를 다소의 抵抗과 違和感을 가지면서도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는 높은 知性과 理性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있기에 견해에 따라, 必要惡일수도 있는 審議行爲의 正當性을 本人이 찾아서 展

開시켜야 이야기가 될것 같다.

審議는 왜 해야하며, 꼭 必要한 것인가하는 愚問인지 賢問인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어느 잡지에서 본 前 건축가협회장 崔昌奎씨의 글의 일부를 여기에 인용하여 우리들 建築家가 처해있는 주변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과거 우리들은 건축가라는 專門家로서, 建築이라는 교향악의 指揮者임을 자처해 왔다. 그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의 성과는 동원된 樂士들과 악기들의 능력에도 있겠으나 지휘자의 능력이 決定的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어떤 경우는 지휘자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악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새로운 樂器들이란 Town planning, Land scape Architecture, Environmental Design, Social Ecology, Human Psychology등의 악기들인데, 지휘자인 건축가가 이 새로운 악기들의 性能이나 音律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建築을 計劃할 수 있겠는가.

3. 計劃은 容器性的의 設定

計劃을 한다 라는 作業에는 그 計劃의 개념을 유도하는 일이 先行된다. 따라서 計劃이 하나의 技法으로서 독립하여 대상의 복합성에 따라 高度의 정보와 기술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어느면에서는 建築이 예술과 담을 쌓고 技術化 되었다고 개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건축계획의 科學的인 근이 보편화 됨에 따라 建築이 人間環境의 本質에서 기탈하는 것이 아니냐고 기우를 가지는 층도 있다.

그러나 建築計劃이란 현대가 필요로 하는 容器性的의 設定인 것이다. 이 자체는 人間이 무엇인가 만들려는 行爲속에서 보편적으로 볼수있는 과정과 같은것이다. 이때

그 対象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과정은 分業化 되어 計劃의 중요성이 강조 되므로 容器性에는 3 가지가 동시에 규정 되어야 한다.

첫째 : 機能의 측면에서의 規定.

둘째 : 機能의 時間變化와 적응에 대한 規定.

셋째 : 生産技術과 環境에서의 規定.

이것들이 서로 관련되고 영키면서 現代建築의 容器性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製圖板上的 작업보다 發想주변 사정을 밝히고 體系를 주는 艱難한 手法는 없고 各人各人이다. 이렇게 어떤 部分과 部分의 영키는 創造의 神秘로운 배 일 뒤에 가려지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정보의 論理的인 裁量이라고도 한다.

이 과정(計劃이나 設計)이 개인 이거나 Groupe이던 社會共益이면서 都市進化的 軸에도 타당한가 하는 새 問題點을 남긴다.

4. 審議와 社會公益

設計圖書의 심의는 序頭에서 말한 基準의 언저리를 맴도는 일이지만 그 어휘에 作家의 저항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교향악에 새로 등장하는 樂器와 그 音律 조절의 필요성이 建築主와 건축가에게 있듯이 社會公益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루어야겠다는 論理도 肯定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룬 審議내용은 社會公益 이전에 建築主의 측면에서 다룬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新舊樂器의 音律調節에는 아직 능숙치 못함을 뜻한다.

여러분에게 아직 보편화 되지 못한 새 樂器의 사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own Planning Landscape Architecture, Environmental design은 이미 審議에서 검토하지만 數年內에 Social Ecology, Human Psychology도 따져보게 될 것이다. 지금 大學構座에서 前者의 악기는 서서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불원한 정식 강좌로 등장할 것이다.

審議에는 公務員이 행하는 適法與否의 확인과, 공무원이 法으로 가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적법이지만 건물 立地條件에서 調整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이외로 시공단계에 그 建物의 건립으로 인하여 住居環境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민의 항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완전히 적법일지라도 역시 제약을 받는다는 事例를 우리는 住宅街의 教會新築에서나, 고층 건물로 인한 Privacy, 日照, 電波妨害등의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규제는 建築 創作活動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이른바 公的인 규제와, 住民측의 環境保全을 위해 규제를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后者에는 전혀 예측이 어려워 건축인들을 더욱 난처하게 한다. 이렇게 法律이나

條例에 의한 규제나 이들 合法性의 건축에 마저, 住民들로부터의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 社會의 背景을 前記한 崔희장의 글에서 우리도 感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 발생할만한 問題點의 關係法이나 條例를 사전에 改正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겠으나 그 結果는 독선적인 방법이 되기 쉽고, 현재의 建築行政機構로서는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혹자는 어느나라에선 우리와 같은 심의 따위의 번거로운 節次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美國에서의 Zoning, 英國의 Planning Permission, 그리고 독일에서의 Detail Plan이라는 것 등으로 방법과 양상은 다르나, 일종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本人은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規定들은 日本것을 다분히 본받았으나 그 일본식은 위의 西歐式的 복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5. 美國의 Protective Covenants

美國의 주택지 개발은 엄격한 宅地分割規制(Subdivision Control)하에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Stage를 규제할 뿐이지 주택지의 環境保全에 보충되는 것은 아니다. 상세한 Zoning도 개개 주택지의 特性保全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開發規約이나 Restrict Covenants(制限規制)는 developer로부터 宅地·建物 구입자에 물건을 인도되는 단계에서 쌍방의 契約으로 맺어지고, 居住후의 Stage에 대한 環境保全을 약속하는 制度이다. (Covenants는 建築行為의 규제를 중심으로한 Hard한 규약이지만 共有地나 Pool등의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Homes Association이 조직되어 그 규약에 따라 Soft한 면의 관리가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규제의 표준(Model form)은 F H A에서 주택지의 형벌로 여러종류가 나와 있다. developer와 구입자간의 계약으로 맺어진 規制는 土地台帳(Plat)과 함께 등록되어, 그에 의해 규약위반의 금지,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규제력이 생긴다. 이를테면 美國版 建築協定인 것이다. 일반적인 규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정의 내용으로서 주택이외의 건축을 금지하는 土地利用규제, 住宅의 型, Design, Fance등의 규제, 건축선 규제, 最少限宅地(면적, 폭, 길이)規定, 생활상의 不適當行為와 廣告行為의 규제, 최저 건축비를 정하여 건축의 질적보전이다. 그 유효기간은 25~45年이고 자동 연장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이들 규약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居住者에 의한 建築規制委員會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6. 審議는 基準의 주변을 맴돈다

(審議와 調整의 例)

連立住宅이란 자기 들을 가지고 1·2層을 1住居로 단위

짓는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후반부터 建築審議에 서서히 나타난 連立住宅의 設計圖에 의하면 준공검사만 필하면 1·2層에는 자기 독립된 世帯가 들수 있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下層居室 한쪽의 階段 처리에는 무리가 생기고, 2층 주방이 될수 있는 位置에 房이 어색하게 되었다. 1·2층에 자기 다른 세대가 입주해야겠다는 우리 실정을 外面할 길이 없어서 審議委에서 이를 陽性化시키기 시작한 것이 금 3月 전후인가 기억된다. 이를 합법화시키고 적응시키기 위해 平面에서의 조정은 계단실型Apt의 계단실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上下層의 出入이 완전 분리되었다. 그후 건축자재 파동으로 일반건축이 대폭 억제되어 아직 解除 되지 않았는데 5月경 부터 이 계약에서 벗어난 연립주택의 審議申請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런데 그 平面에는 심의위가 권장한 계단처리(계단실型)방법이 보편화 되어 設計에 약 80% 반영되기까지는 4·5개월이 걸렸다.

그 결과는 連立住宅이란 1·2층에 자기 다른 세대가 거주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지금은 95% 정도가 이런 平面으로 되어 있다. 이에 당황한 위원회에서는 계동을 가할 필요를 느껴 연립주택의 원 개념으로 서서히 유도해야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같은 審議에서의 調整結果는 입주 후 2층 욕실이나 주방에서의 滲水の 관리문제등이 없지 않으나, 法이나 條例의 개정이 없이 설계상의 모순점을 조절한 예가 되었다.

옛말에, 아는 것과 行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여기서의 行에는 專門性的의 요구가 있다. 심의과정에서 번번히 문제시되는 設計는, 그저 안다고 하는 次元에서 다룬 設計인 것이다.

事例를 보자. 住居浴室의 욕조, 변기, 세면기 등의 배치에서 配管이 一字, ㄱ字, ㄷ字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또, 욕실 출입문의 폭이나, 안으로 열 것인가, 밖으로 열 것인가 등 基本的인 문제를 아는 次元에서 다루었지, 行하는 차원에 미치지 못한 設計가 어림잡아 심의진수의 약 20%는 하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하든 심의라는 것은 참으로 妙한것으로서, 위의 예와 같은 경우는 修正의 要求가 따르겠으나, 水準 이상의 설계라하여 반드시 그냥 넘여가는 것은 아니다. 법규상 흠될 것은 특히 없으나, 어느 部分을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다 라는 意見(권장사항)이 첨부되어 나가는데 이때 그 의견을 作家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느냐에 問題가 있다.

심의위의 이런 류의 의견은 묵살하여도 無妨하나, 당신의 수준이라면, 그 점을 再考하면 더 좋은 案이 나올 것

이라는 Hint로 담담히 받아들이면 분명히 더 좋아지고, 또 심의위의 존립의의도 더 높아지는 셈이 된다.

이러한 심의위의 의견은 大家, 老作家에게도 서슴없이 던져지는데 그 분들은 거의 아무소리 없이 순수하게 받아 個性을 반영시켜 심의위의 존경을 받는다.

한편, 建築家の 의도보다 建築主의 강력하고 무리한 요구가 반영된 作品도 審議委의 설득으로 注文者를 간접적으로 납득시키거나 이해시켜 作品의 特色을 높일수 있다는 例는 통쾌한 일에 속한다.

再審이다. 조건부다. 권장사항이다 하여 서로 긴장하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建築主에 대한 建築家の 입장이 작품의 질적 향상으로 이를 도와준다. 또 하나의 例는, 심의 과정에서 아무 군소리 없이 통과되는 수가 많다. 그러면 그 設計가 좋았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소위 基準에 억지로 맞춘 것이니 그런 作品(?)에 條件을 붙여야 소화될상 싶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냥 넘긴다. 이런 設計를 模範答案紙라고 한다. 점수로 치면 낙제점을 면한 60점인 것이다. 이 때 손해보는 측은 물론 建築主가 된다.

이런 건축가들의 변명에는 분주하여 圖面Check가 불신했다고 한다. 옳은 말씀일 것이다. 그러면 補助士가 設計했다는 물이가 되는데, 이야기가 좀 빗나가지만 雄志를 지니고 大學을 나온 者에게 보조사라는 호칭이 어느 직장, 어느 직종에 또 있는지 알 수 없다. 남은 大學을 나오면 國家의 干城이요, 산업의 기수라고 추켜세우는데, 補助士란 무슨 잡끄래 같은 소린지 모르겠다. 세상 돌아가는걸 좀 直視하자. 이것은 다분히 徒第時代의 유물인데 이점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本論에 다시 돌아가자. 내 이론 석자를 써놓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否定은 오늘新聞에 보도된 偽造古書画에는 통할 수 있다. 원래, 위대한 作家는 더 위대해 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偽造品일지라도 내 것 보다 더 잘 그려진 것이라면 서슴치 않고 내 것이라 해도 위조한 자가 표면에 나올 수는 없는 일이니 그만이다. 또 그것이 내가 그린 眞品일지라도 그림이 시원치 못하면 일언지하에 이걸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하면 그만인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建築作品은 書画에서와 같은 편리한 점이 없다.

작품이라 자처하는 設計圖가 어떤 法이나 基準에 의해 척척 가려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創作品이 아니고 工產品인 것이다. 때문에 法에 의한 기준이라는 어떤 尺度의 언저리에서 이리저고, 저리 따져보는 設計審議라는 것이 있음직 하지 않는가.

7. 審議를 調整으로 보자

국가의 發展에는 유명 무명의 建築人들의 기여를 잊을 수 없으나 功을 받거나 하는 建築人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순박하다. 그만큼 建築에는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다. 創作과 審議라는 이율 배반적인 현실도 建築은 都市環境의 요소이며, 경제적 산물이라는 부산물이다. 때문에 建築을 순수藝術로 받아들이던 한가로운 時代가 못 되니 復合社會의 安全裝置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建築審委에서 보는 설계도의 質的向上은 季節이 바뀌는 속도만큼 빠르다는 일은 여러분이 부단한 努力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누구는 더알고 잘 나서 높은자리에서 내려다 보는 심의자세나, 심의風土는 이미 있을수도 없고, 그런 것을

믿을 사람도 없다. 다만 주어진 직무상 機能의 分割로 새겨보면 된다.

作品은 情感에 기대되는 바 크지만 건축이 知性으로, 도시환경적인 면에서 이를 다루지 못하면 建築設計 審議는 아마 계속될 것이다.

지금 서울市에서나 建設部에서 행하는 설계도심의의 기본정신은 指導에 의한 조정이라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 이유는 어떤 새로운 문제점에 합당하는 法律이나 條例도 그것이 제정되어 効力을 발생하기 까지에는 긴 시일을 요하는데, 그간에도 建築活動을 중지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角度에서 생각 한다면 作品에 대한 侵害라는 Hard한 것이, Soft한 調整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漢陽工大 敎授)

建築工事監理

李 明 煥

※ 本稿는 創立 13周年 紀念 學術討論 主題論文임

I. 序 論

1. 建築家の位置

人間이 生活을 營爲해 나가는데 있어 衣, 食, 住는 三大基本 要素이며 其中에서도 住에 屬하는 建築物이 차지하는 比率은 金錢的으로나 規模, 時間的 持續性 等에 있어서 衣나 食에 比해 越等히 크며, 그 時代의 政治, 經濟, 文化的 活動의 根據가 되기 때문에 時代性과 公益性 藝術性 等を 띄고 있음은 本人이 여기서 새삼스럽게 論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아는 問題라고 보며 이렇게 重要한 建築物을 建築하기 爲해 設計 監理業務에 従事하는 建築家 여러분의 任務는 그만큼 重要하다고 보며, 또한 이에 못지 않게 矜持를 갖저도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俗談이 있습니다만은 建築家は 죽어서 이름도 重要하지만 建築物은 永遠히 남아 社會에 持續影響을 주게 된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되리라고 生覺합니다.

2. 建築士の現実

그러나 오늘날 우리 建築士の 現實은 어떠한 것일까요. 建築主로부터 立地 및 建築的의 條件을 提示받아 제대로 設計를 했건 建築許可만을 얻어내기 爲한 設計를 했건 이는 모두가 한개의 型式行爲 또는 具備圖書에 不過하다면 지나친 表現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各種 審議過程에서 果然 其 效果가 몇%나 있었는지, 버체는 建築主를 代身해서 圖面보마리를 들고 굵실거리며 얻어낸 榮光스럽게 조차한 建築許可證을 찾아다 주면 그 다음부터 建築主되는 사람은 그렇지도 가다롭고도 어렵던 建築許可圖書 內容은 돌보지도 않은채 直接 마음대로 工事を 해치우거나 圖面도 없이 業者를 選定하여 恣意원짜리가 단 五千萬 원에라도 建物만 된다면 하는식의 工事に 내가 그래도 工事監理者인데 하고 干涉를 하려한다고 工事의 質은 커녕 違法되었으니 是正해 달라고 하면 是正할 生覺은 故事하고 그것하나 適當히 못하는 無能한 建築士로 전략을 하게

될뿐 아니라 일 많은 집장사는 干涉이 많다고 약에 다시는 찾아주지도 않게되는 이러한 現實은 그 누구의 責任이며 原因은 어디에 있으며, 結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才月은 멈추지 않고 흘러만 가고 오늘날도 來日도 똑같은 타성에 젖어 是正되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將來에 歷史는 가혹한 審判을 내릴것이며 오늘의 建築士됨을 탓만 한다고 되지않으리라고 生覺합니다.

우리는 한시 바빠 各自의 타성과 고집을 反省하고 建築主인 國民을 탓하기에 앞서 建築士나 當局이나 協議團結하여 새로운 覺悟로 이러한 矛盾點을 是正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矛盾은 原因이 어디에 있는것일까?

干先 建築士の 業務는 무엇이며 責任의 限界는 무엇이며 하는式으로 하나 하나 찾아나가야 하리라고 生覺합니다.

3. 建築士の業務範圍와 責任

建築士法 第19条〔業務內容〕① 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에 관한 業務를 행한다. ② 建築士는 第1項의 業務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各號의 業務를 행할수 있다. 1. 建築物의 調査 또는 鑑定에 관한 事項 2. 建築에 관한 法會에 의한 範次履行 代理 등에 관한 事項」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 同法 第20条〔業務上の 誠實等 義務〕① 建築士는 誠實히 業務를 수행 하여야 하며, 建築物의 美觀 機能 및 構造上 支障이 없도록 設計하고 建築物의 質의 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1977. 12. 31. 東項改正)② 建築士는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서 工事が 設計圖書 대로 實施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工事施工者에게 注意를 주어야 하며, 工事施工者가 그 注意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建築主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建築士는 工事監理를 終了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結果를 書面으로 建築主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

읍니다.

以上에서 建築士의 業務範圍가 規定지어졌으며 책임의 範圍또한 大体的으로 規定지어졌다 하겠읍니다.

여기서 建築士의 主業務는 設計와 工事監理이며 附帶的으로 建築物의 調査 鑑定, 法令에 依한 節次履行代理라는 點에 留意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生覺합니다. 即 다 시말해서 法會에 依한 節次履行代理가 主業務가 아니며, 우리가 흔히 建築物의 調査나 鑑定업무를 나눈다 하지않는다 하는식의 生覺을 해보지하다고 生覺하며 建築許可나 받아들여 내는것이 建築士의 主業務가 아니라고 生覺할때 派生되는 問題는 때로는 代行만을 專担하는 建築士를 生覺할수도 있는가 하면 一律的으로 建築士는 節次代理業務를 必須的으로 해야하는것으로 生覺하고있는 現實과의 差異가 있을수도 있는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問題도 惹起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建築士法第20條의 「業務上の 誠實等 義務」에 있어서 「建築物의 美觀, 機能 및 構造上 支障이 없도록 設計하고 建築物의 質의 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라는 改正事項은 建築設計의 基礎的인 問題라고 生覺되며 同 2項 工事監理者의 責任의 限界는 뒤의 工事監理問題에서 說明됩니다마는 建築士의 工事監理業務責任限界는 終局的으로 建築主에게 報告함으로 끝나는것으로 規定하였으나 建築法을 볼것같으면 違反工事に 對하여는 當該官署에 報告하지 않으면 그責任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同法大統領令別表12號에서는 工事監理者는 違反내지 構造安全上의 責任만을 強調한듯한 말하자면 一貫性이 欠如된 느낌을주는 이러한 것은 調整의 必要가 있는것이 아닌지.

II. 工事監理

(1) 工事監理의 定義

法에서는 「建築士法 第2條〔用語의 定義〕第4號 “工事監理”라 함은 工事が 設計圖表대로 實施되었는지, 與否의 確認과 設計圖書에 表示되어 있지 아니한 事項에 대한 施工方法의 指導 및 大統領이 정하는 事項을 確認하는 行爲를 말한다. (1977. 12. 31 本條改定)로 되었으며 아직 施行令에서 무엇을 더 추가 하게될지모르겠으나, 이번 建築士法 改正에서 보다 明白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참고로 日本의 能井定義氏著 「建築의 工事監理」에 의하면 「建築工事を 建設業者가 諸負施工할 境遇, 建築主로 부터 依頼받아, 其工事を 設計圖書와 對照하여, 工事が 其設計圖書와같이 實施되고 있는지의 與否를 其者の 責任아래 確認하는 業務를 工事監理라 한다. 이는 建築士로서는 設計와 共に 重要한 業務이며 建築士法에 工事監理의 定義로 規定되어 있다」라고 說明 하고 있습니다. 또 工事監理와 設計監理로 区分하여 「設計監理란 設計는 建築士法에서 말하는 設計圖書의 作成이며 監理는 干先 業者選定에서 契約時까지 相談에 協力하여 設計者의 立場에서 設計意圖를 分明히 하기爲해 詳細圖作成, 工事監理나 業者가 作成한

重要한 施工圖나 業者가 提出한 材料見本 其他의 承認, 設計變度의 處理等 外에 現場에 派遣된 工事監理者의 指揮監督, 工事費의 中間 또는 完拂의 承認等 모든일에 參與하는것이다. 그래서 日本建築家協會에서는 監理란 摘正한 工事契約에 協力하여 建築家의 設計意圖를 實現시켜 工事が 契約과 合致되도록 公正한 立場에서 業者를 指導하는대 있다」라고 말하며 「建築士法에서의 工事監理와 一般設計事務所에서 말하는 設計監理의 監理와는 多少 意味가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問題等を 比較해볼때,

여기서 가장 重要한것은 業者選定에서 “工事契約時 建築士가 協力を 한다”는 問題라고 봅니다. 日本建築士法の 業務內容에는 이러한 句節이 包含되어 있어 建築士가 作成한 設計圖書에 適合한 工事を 할수있느냐 없느냐를 建築士立會下에 工事契約을 하게되므로 其設計圖書는 價值를 發揮하게되고 建築士의 責任도 더욱 무거워지게 됨으로인한 建築士의 技術向上과 品位向上이 이루어지게 될뿐 아니라, 設計나 工事監理의 實을 期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工事監理와 監督

日本鹿島研究所版 「建築의 實務」에서는 工事段階에 들어가서 建築家의 運營業務를 遂行하는 일을 一般的으로 施工監理라 부르며 이 안에는 지금까지의 工事監督이라고 부르는 業務도 包含된다」 또 社団法人 當該協會版 「建築工事監督要領」에서는 「建築士法的 根據에서 法的 監督員의 業務는 施工計劃의 範圍를 包含해서 다음 事項을 遂行하는것으로 본다.

- (1) 工程表의 檢討, 承認
- (2) 各工事 種別마다 施工計劃圖의 檢討, 承認
- (3) 細部設計圖, 原尺圖의 作成 및 檢討, 承認
- (4) 材料의 檢査 및 試檢
- (5) 施工立會
- (6) 施工檢査

라고 하였으며 日本建築協會發行 「四會連合協定 “工事清負契約約款 解説” 中 監理技師의 自務를 (여기서 丙 이라 함은 監理技師를, 甲은 建築主, 乙은 業者를 말함)

① 丙은 다음과 같은 일을 甲에 代身하여 行한다.

- a. 乙의 提出하는 清負代金内尺書, 工程表 其他 仕様書에 明示한 書類를 調査 承認할것.
- b. 設計圖 仕様書에 依한 施工에 必要한 詳細圖, 現尺圖等を 만들어 工程表에 따라 適當한 時期에 乙에 交付한다.
- c. 乙이 作成하는 工作圖, 模型案을 檢査하고 承認한다.
- d. 施工一般에 對해 指導 立會한다.
- e. 工事材料와 施工의 檢査를 하고 試驗時 立會한다.
- f. 設計圖, 詳細圖, 現尺圖와 仕様書에 準하여 既成

樣査와 竣工檢査를 하며 引敎時 立會한다.

g. 乙의 請求하는 既成高請求書를 現場과 對照하고 技術的으로도 調査한다.

h. 工期 또는 清負代金の 變及書類를 技術的으로 調査한다.

i. 當該工事와 關係있는 其他工事와의 綜合調整한다.

② 乙이 協議, 指導, 檢査, 立會, 意見, 承認等을 要淸할時는 丙은 곧 이에 應한다.

③ 工事に 関한 当事者間의 通知, 協議는 丙을 通해서 行한다.

④ 丙은, 甲이 承認하는 代理人 또는 監督員을 둘수있다. 이럴때에는 事前에 乙에게 通知한다.

⑤ 監督者은 工事現場에 常駐하여 丙을 代理해서 施工을 監督한다」라고 規定되고 있는것과 같이 工事監督者는 監督業務를 包含한 工事進行에 技術的 總指揮役割을 하게된다고 生覺합니다.

(3) 工事監理의 位置

工事監督者는 누구를 爲해 있어야하며 窮極的으로 무엇을 爲해 있어야 하는 것일까? 日本의 建築学会, 建築士會 建築協會 全國建設業協會의 連會協定에 依한 工事清負契約約款에 依하면 (2-2 監理技師의 任務 参照) 建築主를 代身하여 工事契約履行에 必要한 事務를 다루며 一般的으로는 法的으로 建築主가 技術的 事務를 委任시키기위해 工事に 介入시키는 建築主의 代理者이다. 그러나 工事監督者는 建築主의 代理者 役割만을 遂行하는것이 아니라 工事의 經過過程을 忠實히 記錄하는 公証人的 性格을 띠며 나가서 建築主와 業者사이에서 公平하게 契約을 履行시키는 職務를 가진者라고 解釋한다. 위의 相反되는 立場이되는 矛盾은, 工事監督者가 技術的良心을 가지고 行動하는 學識과 技術, 人格等に 信賴를 받을수 있는 者라면 建築主는 理解를 할수있을것이라」라는 表現은 가장 適切한 表現이라고 할수있다.

또 다음으로 「工事監督者가 業務를 遂行함에 工事의 確認에 소홀함이있어 工事に 하자가 생겼다는 치드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清負業者의 責任이지 工事監督者는 其判斷에만 責任이 있는것이다. 따라서 工事監督者는 設計圖書를 眞理解하고 工事を 確認할때 誤判이 없도록 細心한 注意와 正當한 態度로 專問知識을 活用하도록 할것이며 이에 對備해야 한다」라고 한것 또한 배놓을수없는 重要한 問題라고 봅니다. 以上の 內容은 建築士業務를 바로잡아 보기위한 既略的인 것이며 制限된 時間의 아쉬움을 남기며 省略합니다.

III. 結 論

(1) 改善되어야할 問題

a. 工事監理業務를 効率化시키고 建築物의 質의 向上과 建築主의 利益을 爲해 建築士가 監理業務에 들어가기

前に 工事契約時 參與할수있는 法的 뒷받침을 工事監理의 用語의 定義만 가지고는 實施키 어려우므로 建築士法 第20條 [業務의 誠實等 義務] 內에 삽입되어야 합니다.

b. 設計費80%에 工事監理費 20%의 報酬比率은 實質的인 工事監理를 行할 境遇 設計期間과 工事期間의 比率에 비춰보거나 經費面에서만 보더라도 이만 저만한 予算이 있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工事が 억지되든 設計나 論하고 말겠다는 式의 生覺을 갖게되기 쉬워 建築士業務를 寄形化시키고 있는 原因의 하나라고도 生覺할수 있으며 現在 大部分의 建築士들이 얼마 안되는 監理費라고 經視하다보니 干洗도 못하는 工事監理의 責任만 지다가 処罰만 받게되는 要因의 하나라고도 生覺될수 있기때문에 이는 現實에 맞도록 調整이 되어야한다고 보며 建築士業務量을 呑먹는 結果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日本같은 나라에서는 文明의 程度差異에서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予算이 나타나지 않는것은 기이한 일이라고 生覺됩니다.

c. 契約의 分離

設計와 工事監理의 契約은 分離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其理由는 報酬의 現實化와 아울러 工事監理의 責任을 区分하는것이 工事監督者의 責任感을 더느끼게되며 建築主亦시 같은 느낌을 갖게되며 現在의 建築士業務의 혼돈상태를 改善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d. 工事監督者報告는 着工時에 한때 서울市庁에서는 建築許可後 着工時에 建築主名義로 工事監督者와 業者選定報告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좋은 方法이 왜 變更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위의 列挙한 問題도 問題이나 여기에는 以外에도 問題가 있습니다. 建築許可後 一個年까지는 着工을 얹어도 許可가 有効한데 着工도 언제할지 모르는 狀態에서 建築許可도 나오기前에 業者를 選定하지 않으면 안되며 許可申請에 急하다보니 實地 工事は 乃終에 着工할때 다시 따지기로하고 干先 얼마간의 돈을주고 業者印章을 許可申請書에 捺印치 않을수없는 이러한 일은 着工時 큰 紛爭問題가 되기도 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發生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業者의 選定과 工事監督者 選定報告는 工事着工届와 같이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 工事監理 專擔機構 設置

小規模工事에서는 別問題가 없다고 보나 漸次 建築技術의 發展과 各種科學의 發展과 規模가 커지는 建築工事의 工事監理도 이에 따라가야 한다고 보며 이에따른 各種試驗機器의 備置와 高度로 専門化되는 技術要員 確保等 専門化된 工事監理機構가 必要하게 되리라고 보며 이에 對한 準備로서 建築士協會傘下에 公信力있는 專擔機構가 다만 몇個라도 設置되기를 希望하는 바입니다.

病 院 建 築 - 78

金 東 珪

各室計劃

Porch (Vest i blue)

病院玄關은 正門이 있는 境遇 自動車가 玄關門에 와서 닿는 平面이 救急車等이 接車하는데 便利하나 玄關一部가 救急車에 車台높이에 맞도록 하는것이 病院에서 救急患者를 接受하는데 便利합니다. 또한 正門에서 玄關까지 距離가 있는 境遇 車道와 歩道を 区分하는것도 한 方法입니다. 이 玄關은 入口로비 (lobby) 에만 延長입니다. 이 玄關에 壁과 바닥(floor)은 美觀을 考慮하고 花崗岩破이 나뉘라조等으로 깨끗하고 硬質에 材料를 使用하는것이 좋습니다. 照明과 外部에 구두닦는 설비 (특히 雨天인 때를 生覺해서)를 하여야 病院内部가 깨끗해진다는 點을 考慮하여야 합니다.

待期室(lobby)

이 待期室에서 모든 手續과 藥을 타고 料金を 支拂하는 동안 기다리는 人員과 時間과 各 外來診療部와 外來試驗室 採血室 採尿室等에 作業을 하기 위하여 充分한 面積과 動線計劃이 完成되어야 합니다. 待期하는 患者나 保護者를 위한 飲料생크, 便所, 公衆電話 등이 架設되어야 합니다. 階段室 昇降機와에 連結이 便利하게 配置되어야 합니다. 隣接되어야 할室, 設備는 醫務記錄(medical Record), 이 醫務記錄保管室, 保管室에서 患者가 가는 各 診察室 外科에 記錄書類가 보내지는 設備 (人力이든, 氣送管設備이든(pneumatic tube transport System) 考慮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室은 換氣가 잘 되어야하고, 防音設備가 良好하여야 하며, 患者나 保護者가 기다리는 동안에 便하게 時間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入退院事務室 (院務課라 함) 診察卷發給事務 또는 醫療保險關係事務室이 待期室(lobby)과 隣接되어야 합니다. 또한 壁面의 色彩도 方向에 따라서 白色이 아닌 淡綠, 淡紅, 淡黃色等으로 可能한限 부드러운 色彩로 塗裝하여야 할것입니다.

階段室 Stair Case.

平面如何에 따라서 位置와 個수가 決定되지만 建築法에 位置距離에 制限이 있습니다. 계단너비, 단높이는 30cm×15cm가 가장 便한 角度입니다. 그리고 防火門이 要求대로 設置되어야 합니다.

傾斜路室(ramp)

充分한 階段室이 있더라도 昇降機가 있더라도 傾斜階段은 必要한 設備입니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은 材料로 傾斜度는 6°가 가장 適合합니다. 建築法規는 1/8로 制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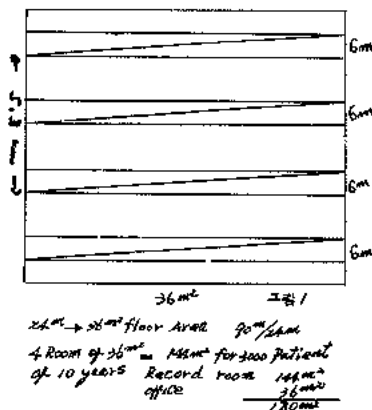
複道(Corridor)

複道에 市은 建築法規에 여러가지 制限이 있습니다만은 病院建物에 複道는 病室寢台가 並例로 往來하는 것을 考慮해서 最少限 3m가 所要됩니다. 同時에 各 壁面 1m 높이에 壁을 保護하는 防板을 부쳐야합니다. 이 保護板이 없으면 壁이 破損되는 것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醫務記錄室(medical Record Room)

第一 主要한 問題는 面積이다. 300病床에 病院인 境遇 外來患者와의 比例를 10:1로 假定하면 1日外來患者數가 3000名이 된다. 1年 1名에 記錄書を 1人 1年 3cm로 하면 $3\text{cm} \times 3000 = 9000\text{cm}$, 90m이다. 10年余保管이면 900m가 된다. 선반의 크기를 $0.4\text{m} \times 0.3\text{m} \times 10\text{段}$ 으로 計算하면 $90\text{m} \div 10 = 9\text{m} \times 0.3\text{m} \times 0.4\text{m}$ 임으로 그 點有面積은 $0.4\text{m}^2 \times 90\text{m} = 180\text{m}^2$, 선반과 선반사이를 0.6 m로 하면 $0.6 \times 90 = 54\text{m}^2 + 36 = 90\text{m}^2$

$90 \times 2 = 180\text{m}^2 / 3000\text{人}$ 분이 소요된다. 이 室은 完全한 防火設備가 考慮되어야 한다. 醫務記錄급에 保管方法이 잘 考慮되어야 하며 換氣設備가 完全하여야 합니다. 醫務記錄保管室이 180m²가 必要하다.



入退院 事務室 admit retire office

院務課事務室에 一部이나 150病床以上에 病院이면 따로 獨立해서 配置되어야 합니다. 天井이나 壁面修裝은 一般事務室에 準하고 醫務記錄室과 連結이 잘 되는 것이 理想입니다. 特히 患者와의 接觸이 많은 곳입니다. 特히 照明과 換氣에 注意하여야 하며 可能한限 外部(複道나 待期室等 空氣氣圧이 一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事務室 office(s)

面積은 3m²/人에 比率로 面積을 配分하면 됩니다. 院務室, 一般事務室(人事予算會計經理 및 社会事業班事務室 管理室等)이 病院에 組織表와 照合하여 人員器具等이 잘 配置되어야 한다. 天井材料는 防音이 잘되는 材料가 좋겠고 壁面은 淡色, 바닥은 아스팔트-비닐-타일이나 同質品이 適合합니다. 診察券發給을 爲한 여러가지 計器가 準備되어야 하며 接受事務室인 境遇 外部空氣와 内部空氣에 氣壓이 달라야 합니다.

藥局 Pharmacy

藥局은 外來部에서 診察이 끝난 患者는 누구나 들리는 곳이고 藥을 投藥받기 爲하여 長時間 待期하는 待期室 藥을 調製하는 調製室, 藥品倉庫等이 附設되어야 합니다. 天井과 壁은 淡色으로 修裝하고 耐水性塗料로 修裝하여야 하며 바닥은 可及的 硬質耐水性인 材料 테라소 타일等으로 修裝하는게 使用하기 便利합니다. 照明과 換氣設備가 完全히 架設되어야 합니다. 作業台投藥設備等 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外來診療室 名料 out patient Department

內科系-內科 internal medicine. 이 室에 組織은 患者 待期室, 予診室, 再來患者室, 檢査室, 醫員室等으로 編成된다. 脫衣室, 看護員室, 醫療裝備庫 및 診察台, X線透視設備等 이 갖추어져야 한다. 照明과 換氣設備가 必要하며

綜合病院에서의 患者分布는 이 內科診療室이 全患者數의 30%가 集中됩니다. 따라서 患者便所도 이 近處에 配置되어야 합니다.

小兒科 pediatric와 Well baby clinic

小兒科診療室은 꽃이라할 程度로 保護者가 同行을 해서 옵니다. 이 小兒科室은 다음과 같은 附屬室이 꼭 連結되어야 합니다.

- A. 待期室
- B. 診療室
- C. 受付
- D. 檢査室
- E. 處置室

身長計, 體重計等이 準備되어야 하고, 注射室用具가 備置되어야 합니다. 特히 待期室에는 兒童用品(그림책, 玩具)等이 準備되어야 하고, 待期室 全体를 色彩나 장식도 兒童들이 조와하는 樣式으로 修裝되어야 합니다. 모든 機具는 小兒患者에 身長에 맞도록 設置되어야 합니다. 이 小兒科診療室은 患者用以外에 健康兒에 周期的 診察을 爲하여오는 患者아닌 健康兒診察을 爲하여 오는 小兒들에 別도로 出入口, 便所等이 配置되어야 합니다. 勿論 出入口, 待期室도 別途로 配置함이 바람직합니다.

産婦人科 Obsteric- Gynecology

小兒科診療室에 近接하는 것이 理想的이고 이 室에 診察器具는 婦人科用으로 設置되어야 합니다. 特히 이 室에는 洗面器以外에도 洋式大便器가 設置되어야 합니다. 特히 內診室은 그 設備를 不安하지 않도록 配置하여야 합니다.

外科 General Surgical

外科診療室과 整形外科中間에 小手術室이 配置되어야 하고 特히 応急室이 가깝게 配置되어야 합니다. 各室 連結은 整形外科와 비슷하다.

整形外科 Othopedic Surgical

各室連結은 外科와 同一하다.

皮膚科 Oermatology

皮膚科는 医科分類로 內科系이다.

耳鼻咽喉科(ear-Norse-and throat Clinic)

医科分類로는 外科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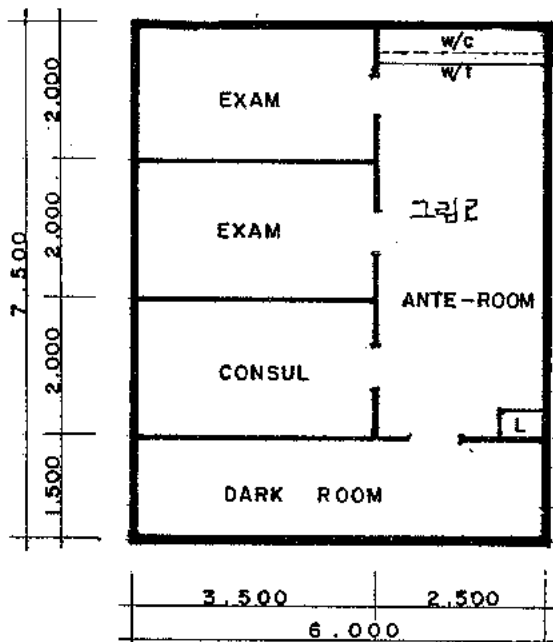
齒科 Dental Clinic

이 科도 医科分類로는 外科系이다. 本齒科室은 電氣配管과 水道配管이 余他에 診療室과 다르다.

眼科 eye clinic

医科分類로는 外科系이다. 附屬室로는 暗室이 附屬된

다. 以上 3 科(耳鼻咽喉科, 齒科, 眼科)에 各其消毒施設이 되도록 併設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簡單한 回復室이 設置되었으면 합니다. 綜合病院에 Universal form을 本人은 즐겨使用하므로 그 Sample 을 하나 紹介한다.



病理検査室 Laboratory

中央診療部(Adjunct Diagnostic Treatment)에 屬하고 모든 最終診察率 이 病理試驗室에 作業이 끝나야 確定될수 있다. 이 病理試驗室은 病院에 規模에 따라서 다음 各 分科로 分離된다.

- | | |
|---|---------------|
| 1. 生化学科 | Chemistry |
| 2. 血清科 | Heamatology |
| 3. 病理科 | Pathology |
| 4. 病菌科 | Virology |
| 5. 血清科 | Serology |
| 6. 細菌科 | Bacteriology |
| 7. 組織科 | Histology |
| 8. 寄生虫科 | Parasitology |
| 9. 新陳代謝(BMR) EKG. EEG. 心身機能 또는 検
腦波検査室 細菌科 | micrology |
| 生物科 | bio-chemistry |
- 二種으로 分離한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部는 洗條室과 消毒室이 附設되어야하며 各科外來 또는 病棟으로 보내질 各種試驗에 記錄도 保管되어야 합니다. 이 事務를 取扱하기 爲하여 事務室이 必要합니다.

物理治療室 Physio therapy

主로 精神神經科에 屬하며 外來部에 屬하고 患者가 再來인 境遇 直接을 수 있는 곳이다. 充分한 待期室이 必要하며 大部分의 患者는 步行에 不便이 있다. 모든 電氣治療, 맞사지 등이 取扱됩니다. 또한 水療室, 附屬室 등이 所 要됩니다.

手術部 Operating Department

手術室과 附屬室로서 構成되며 完全히 消毒된 部分이다. 消毒室과 手洗室, 回復室로서 構成된다. 이 部分은 完全히 電導된 바닥이 要求된다. 外國에 統計로는 “가스”로 因한 爆發事故는 170,000對 1이다. 空氣보다 比重이 무거운 ‘가스’를 使用하기때문에 接地와 換氣에 充分한考慮가 要求된다. 手術室에 크기는 3.5×4.5m에서 8×10m까지 病院에 患者狀態에 따라서 다르고 本人은 一般的으로 使用하는 規格은 6×6m이다. 壁面은 白色아닌 彩色할것이며 白色타일 같은 資材는 使用치 않는것이 좋다. 壁面이 白色이면 手術途中 醫師눈에 殘影이 生起기 때문에 좋지않다. 換氣fan은 天井가까이 設置하지 않고 바닥에서 1m以下에 設置하여야 한다. 手術室에서 使用되는 깨쓰가 空氣比重보다 무거운 것이 많기 때문이다. 同時에 방안에 空氣는 十가 되어야 하며 排氣뿐이 아니라 消毒된 新鮮한 空氣가 供給되어야 한다. 照明은 手術燈以外에 照明이 必要하며 時計, 中央供給式에 깨쓰 施設도 設置되어야 한다. 室內氣壓은 恒時十가 되도록 할것이며 溫度는 25°C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放射線科 radiology Department

放射線科는 放射線室, 暗室 待期室, 필름倉庫室, 作業室, 撮影室 등으로 構成되어야 하며 放射線機器에 容量에 따라서 室內部를 完全히 鉛板防護를 하여야 한다. 診察用과 治療用이 있으니가 注意하여 動線計劃을 作成하여야 합니다.

病棟 Nursing Unit or Ward

病棟(Ward)는 平均面積에 分布가 15m²/bed-25m²/bed입니다. 이 面積은 大衆的인 것이고 萬一에 獨室이 많이 配置되면 이比率은 더 많아집니다. 看護員勤務室(Nurse Station)에서 最長距離가 病방에 分까지 30m 前後이어야 합니다. 너무 멀으면 看護活動에 支障이 있습니다. 이病棟에는 一般病棟과 特殊病棟이 区分되어야 합니다.

分娩室 Delivery Suite

産婦人科病棟과 同一層에 配置하는것이 理想的입니다. 育兒室(nursery)과 陣痛室(labor room) 등이 配置되어야 하고 育兒室은 早産兒室이 付設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退院時까지 訪問客이 들어다볼 수 있는 觀察窓(observation window)가 待期室이나 復道쪽으로 設置되어야 합니다.

屍體室, 解剖室 Morque and Autopsy

電氣屍體冷藏機와 解剖台가 設置되고 完全한 換氣設備가 되어야 합니다. 外國에서 發達된 病院行政學에서 論議되는 屍體室은 外國에 風俗上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韓國에서 建設되는 屍體室은 韓國에 風俗을 考慮하여 家族室 玄間(Lobby)등도 充分히 面積을 配分하여야 합니다. 屍

体室外部는 아담하게 할 것이며 建物週囲에 造景에도 充分한 考慮를 하여야 합니다. 職員에 Shower室,便所, 換氣等도 完全한 設備가 要求됩니다.

補給部 Utility Department

洗濯室(laundry shop)完全한 洗濯器設備를 하거나 分類室을 만들고 外注를 주어도 無防하니 消毒設備는 갖추어야 합니다. 完全한 設備를 갖추려면 病床當 \$200 (₩100,000) 이 들고 그나마 그 器具는 거의가 輸入하여야 합니다.

中央消毒室(Central Sterilizing & Supply)

病院에서 使用되는 모든 器機 注射器에서 봉대까지 여기서 消毒 保管하다 各科로 分配됩니다. 殺菌水發生器機, Steam 消毒機等이 設置되어야 합니다. 室内는 充分한 作業面積을 保有하여야 하고 換氣設備가 完全하여야 합니다.

補給室 Central Supply

中央消毒部內에 配置되고 復道쪽에 出入口가 있어야 합니다.

補給倉庫 General Supply Storage

一般物品을 取扱하며 病院에서 所要되는 모든 器材를 取扱합니다. 비누에서 事務用品까지, 總務課 一用度係에 屬하며 充分한 倉庫室 과 事務室이 있어야 합니다.

廚房 Kitchen

患者와 職員全部에 食事を 準備한만큼 充分한 面積을

分布하여야 합니다. 作業台, steam 器機, 食器消毒機等이 設置되어야 하며 充分한 容量에 換氣設備를 하여야 합니다. 室内는 耐水性材料로 施工되어야 하며 天井은 없는것이 便利합니다. 充分한 倉庫와 從業員施設이 要求됩니다.

食堂 Dining Room

患者는 各病室로 配達하여주므로 全職員이 2-3交代로 食事할수 있는 面積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暖房과 換氣가 完全하여야 합니다. 또한 病棟으로 配膳하여야 할 配膳車에 電氣부락도 準備하여야 합니다.

보일러室 Boiler Room

完全한 自動式보일러 設置로 建築法과 市建築條例또 各保安規則에 適用을 받습니다. 보일러는 必히 2台 以上으로하고 附帶設備를 가져야 합니다. 特히 夏期에는 消毒用스팀, 廚房用스팀 洗濯室用스팀 供給을 計劃하여야 합니다.

動物舍 Animal House

病理試驗室에 屬하며 여러種類가 있습니다. 病院内部와 防音設備를 考慮하여야 하고 汚物清掃等飼料庫等이 設備되어야 합니다. 保温과 換氣를 充分히 하여야 합니다.

以上 大略의인 各室에 對하여 記述하였습니다. 좀더 具體的인 面積의 配分은 建築士誌 1974-4 號에 詳論되어 있으니 參照하시기 바랍니다.

未来变化에 対応하는 学校建物の 融通性と 適応性에 関한 究研

(II)

劉 香 山

III. 事例研究

2. 適応性에 関한 事例研究

学校建物の 適応性이란 앞에서 提示한 바와같이 教育活動 變化에 適応하는 建物を 말한다. 여기서 實驗하고 있는 英國, 佛蘭西, 캐나다의 学校建物は 서로 各其 다른 社会背景을 中心하여 適応性에 差異는 있으나 建物の 適応程度의 限界의 規定이 教育活動의 發展의 變化에 最大限으로 現實的이고 自然的인 適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適応」을 成就시키기 위하여 英國은 11~16才 學生 1350名을 가진 綜合中高等学校(Comprehensive School)를, 佛蘭西는 12~15才 學生 1290名을 가진 스지앙브리(Sucy-en-Brie)에 있는 學校를 캐나다는 12~14才 學生 700名을 가진 아링톤(Arlington)에 있는 學校로 選定하였다. 이들 學校는 모두다 地域社会에서 生活하는 똑같은 分田氣를 學生들에게 提供하고자 하며, 教育活動 變化에 積極적으로 適応하도록 하는 学校建物로 만 들고자 하고 있다. 다만 英國은 綜合中高等學敎이기 때문에 學生들의 家庭背景 및 學生들의 慾求를 各各 다른 變數로 놓고 實驗하고 있다. 특히 英國은 法定 教育課程 가운데 必須科目을 強要하지 않기 때문에 学校建物の 模型을 固定된 變數(parameter round)로 強要하지 않으며, 一般教育課程과 特殊教育 課程內容의 時間配當 比率을 갖 게 하고자 하는 教育者들과는 달리 本研究者들은 教育課程을 多樣하게 運營하도록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社会的인 變數 및 敎授構造(teaching structure)變數에서 오는 可能的인 여러 變數를 받아 들이고 있다.

1) 英國 모델 学校建物(1971~1972)

英國이 모델로 採한 學校는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綜合 制中高等学校이다.

学校建物 構造는 中學校와 高等学校로 区分하며, 다시 中・高가 겸용하는 構造로 나누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各其 經驗을 中心한 學習센터가 있고, 高等学校에서는 語

學 및 人文中心 센터가 더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人員數가 適応적으로 配定되어 있고 中學校에 경우, 2年 過程 동안에 經驗센터중 言語, 人文系, 自然系 數學, 芸能 및 手工을 하는 센터가 있고 더러 이러한 教育內容을 高等学校 資料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高等学校와 겸용하는 藝術實驗센터, 體育室 등에서 各各 이에 해당하는 科目을 學習하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高等学校 經驗센터에서는 특히 資料室에서는 生活科學, 地理, 社会生活學, 經濟, 數學, 家庭學, 物理學, 芸能 및 手工, 手芸 등을 學習하게 하며 語學 및 人文系 센터에서는 특히 圖書館 및 資料室에서는 英語, 英文學, 現代語學, 歷史, 宗教, 哲學 등을 學習케 하도록 構造化 되었다.

以上과 같은 建物 構造의 組織의 全般的인 特徵은 첫째 地域社会性 및 田園的인 性格을 갖는다. 둘째 個人的인 면서도 集團的인 特性을 갖는다. 셋째 靑少年들의 集團 地域生活의 터전이 된다. 넷째 學習目的을 위해서 實現 可能한 敎授種類에 適応하는 "Teaching Department"가 되고 있다. 다섯째 建物 自体는 상당히 有動的이고 可變될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壁과 設備 등을 再配置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特徵을 살리기 위하여 設計者에게 몇가지 注意事項을 提示하고 있다. 즉 学校建物은 多樣한 學習活動에 適応하는 것이라야 할것, 特殊科目이나 광범위한 敎科領域에 너무 치우쳐서 다른 科目이 차지 않도록 適応할것, 새로운 教育의 要求에 對備한 場所를 再配置할 수 있도록 할것, 技術 및 體育敎育은 다른 學科와 区分하여 設置할 것 등이다.

以外에 特記할 內容은 서비스 施設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學生 80% 以上이 同時에 利用할 수 있는 食堂이라든가, 敎科時間에 使用할 수 있다든가 地下室 및 庭에 상하수도 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이 잘 배치되어 있는것 등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소음이 심하거나 먼지가

나는 시설은 지하실에 배치시키는 경우를 들수 있다.

英國에서는 學校建物 基準法(E. B. R.)과 教育 및 學科 基準法(D. E. S. R. G.)에 依하여 “teaching areas”의 最少 絕對面積을 주장하며, 동시에 이 面積은 學生數 및 學生年令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그 面積에서는 通路, 管理室, 食堂 等の 面積은 제외한 것으로 要求하고 있다.

2) 佛蘭西 모델 學校建物(1972~1973)

佛蘭西가 모델로 選擇한 學校는 스킵 브리지에 있는 中等學校(Collège d'enseignement secondaire)이다. 이는 파리 南東쪽 20km 떨어진 조그마한 邑區에 있으며, 새로 移住해온 學生들이 모인 學校로 유쾌하고 開放된 學校로 師宅 및 中央建物 3層이 있으며 이는 地下室과 네개의 큰 프레스룸으로 되었고, 層마다 제단과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으며, 프레스룸 자체는 상당히 適應的인 “department”를 형성할수 있게 되었다. 이 學校는 特別 文敎部가 関心을 가질 정도로 착실한 건축가와 청부업자들에 의해서 설계된 학교중에 하나이다.

이 學校는 英國 모델이 나온 바로 뒤에 나온 것으로 英國 모델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既存建物 은 校內 體育教育을 위해서 變形해야 한다는것, 두께, 食堂 面積을 再設備하는 경우에만 기존 식당과 부엌을 再整備하도록 하는것, 行政管理室의 位置를 수정하도록 하는것, 드라마 스튜디오는 수리하지 말 것, 큰 창고를 증축하는 경우 네개의 作業場을 갖는 기술작업장의 부분을 재 설계 할것, 英國의 中學校 같은 學校는 佛蘭西에서는 地下室에 位置해야 한다. 同時에 靑少年들을 위하여 이러한 位置는 外部와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할것, 또 이러한 學校는 반드시 기존 화장실과 탈의실 또는 의류보관실을 둘것, 여기에는 반드시 사회집단에 필요한 세개의 프레스룸을 각각 두어야 한다는 것들을 감안하여 설계하고 있다. 더욱이 교과내용에 맞는 장소의 적응성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분화된 교과내용과 관련학과와의 긴밀성을 참작하여 설계하고 있다.

英國 學校設計에서 強調되는 점은 環境條件의 質問題에 있다. 그러나 佛蘭西는 教室 數의 均等性을 강조한다.

3) 캐나다의 모델 學校建物(1970~1971)

캐나다 요크 버로우(York, Borough)에 있는 아링턴 公立 中高等 學校(Arlington)는 직사각형의 3層 建物로만든 層마다 連結이된 外部의 층계탑이 4개가 있다. 현관은 이중 정도에 위치하며 행정관리실에 직접 인접해 있으며 音樂室과 變化에 쉽게 適應하도록 되있는 두개의 體育室이 있다.

中央에 位置한 敎授施設은 1層에 있고 큰 中央 圖書館을 가지고 있으며, 同時에 資料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學習活動과 社會生活을 하는 장소 옆에 있는 이들 施設들은 開放된 것이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學校建物은 미래

변화에 對備할수 있게 設計됐고 建物을 再配置할수 있게 되어있다. 캐나다 學校는 英國이나 佛蘭西 보다는 面積基準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IV. 모델을 中心한 適應性에 對한 提議

위의 세나라의 모델을 通하여 얻어지는 그들의 強調點은 各其 다르다.

英國은 學校建物內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敎授面積(total teaching areas)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可能的 變數”란 서로 다른 “學校組織의 形態와 敎授方法”에 建物이 適應해야 한다는 것이다.

佛蘭西에서는 現在 모델을 약간씩 變化시키는 것이 새로운 教育의 要求에 適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캐나다에서는 폐쇄된 敎授面積의 比率와 變化를 達成하고자 하여 英國에서 선정한 환경기준은 다른 경우에서보다 層面積을 유용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함께 주장하는 것은 유동적 설비나 유동적 장소로서 창고면적을 크게 이용하면 보다 건물의 적응성을 달성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1) 變化에 對備한 關聯事項

(制度的이고 管理的인 對備)

學校建物을 未來變化에 適應시키는 問題는 技術的인 問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制度的이고 管理的인 問題이다. 이것은 마치 “재단사가 만들어 놓은 양복 같은 건물”이 아니고 建物에 適應하는 學校組織의 基本能力에서 생기는 것이다.

“Multi-Option School Report”에서 Jean Ader는 學校建物 設計에 있어서 教育이 要求하는 것은 그要求가 간단히 活動으로 옮겨질수 있는 要求가 아니며 그 要求는 우선 施設과 밀접히 結合될수 있어야 한다고 시사하였다. 즉 바람직한 行動類型과 그 바람직한 行動類型에 對備하는 施設類型이 하나로 一致될수는 없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하였다. 즉 바람직한 活動들은 처음부터 결코 규정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改革要因들을 區別할수있게 하는 教育에 實際的인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實驗에서 부터 規定되어 지는 것이라고 했다. 즉 바람직한 행동과 공공연히 인정하는 규제 사이에서 긴장된 상태가 그 가능성을 규정해 준다고 했다. 다시말해서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活動을 약하게 하는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施設이 예견할수 없는 活動을 가능하게 하는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또한 敎師들의 利用度 및 限度度 또는 施設에 適應하는 敎師의 能力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施設에 適應할수 있는 個人과 組織이 필요하며 適應에 必要한 計劃을 作成해 내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안전하게 되야하고 실제로 계획안과 창안에 方向을 가져야 한다. 비록 設計는 모르더라도 제도상으로 관리상 建物組織을 通하여 變化할수 있는

기회를 나타내게 하거나 有用한 施設을 使用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공헌인 것이다. 分離된 건물들의 집합속에 中學校가 생겼거나 이런 建物이 종종 “large multi-Option School”을 지을때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校長과 教師陣들은 學生들이 一定期間 또는 全教育期間 중에 分離된 建物에서 時間을 보내도록 教授 프로그램을 組織하게 된다. 더욱이 갑자기 일어나는 學校行事は 建物內的 教育施設 範圍를 종종 넓혀주고 있다. 이것은 學校施設 管理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事例가 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 보다 學校建物內에서 教授施設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건물의 제도적 관리적인 문제의 해결점은 設計者와 學校校長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건물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위의 兩者는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기존건물의 적응성을 새건물의 적응성과 비슷하게 할수 있다.

그다음에는 設計者와 利用者間의 共同研究가 필요하다. 이용자는 자기의 요구를 보다 더 잘 설계자에게 제시할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나온 모든 管理的인 要素들은 根本的으로 組織의 유연성과 組織의 要求 및 組織의 절충적인 能力에 있다. 이러한 제도상, 관리상의 연구는 앞으로 지을 건물가운데 교육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건물을 막는데 큰 공헌을 할수 있다고 본다.

2) 場所配定과 設計

비록 學校建物の 目的이 教育的인데 있다 하더라도 空間設計가 物理的 條件의 變化가 없이 成功的으로 대단히 많은 多様な 目的에 対応할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위의 세나라의 경우).

요즈음 상당히 많은 教育活動들은 책상에 앉아서 達成할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들면 읽기, 쓰기, 듣기 等이다.

그러나 반대로 요즈음 개발되고 있는 유동성 설비(tape-recorder, headphone 等)는 他人을 방해하지 않고 作業場에서 提供하는 活動範圍를 增加시킬수 있다.

동시에 基本作業場과 資料室을 겸한 作業場은 서로 밀접하게 隣接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부수적인 시설의 이용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것은 교정교육(remedial teaching)을 위해서 個人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場所配定 및 設計方法이 된다. 또한 “Committed Spaces”와 “general spaces” “special workplaces”와 “basic workplaces” 등은 서로 밀접히 隣接해야 한다. 同時に “workplaces”는 “committed spaces”를 設置할 必要가 생긴다. 이와같은 作業場과 空間場所는 移動設備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그 場所들은 多目的(예: 체육실)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面은 學校建物이 教育內容을 多様하게 이끄는

바로 融通性(flexibility)인 것이다.

學生들이 한가지 以上の 活動을 하는 경우에나, 場所가 學生數를 훨씬 초과할 경우에는 學校建物은 단연코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융통성은 場所와 계약된 學生數를 초과해서 이용되는 場所의 실수효의 초과비용에 關係된다.

反面에 융통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물은 그 적응성은 적어진다. 따라서 教育의 變化는 융통성이 教育에 제공해 왔던 한계점을 초과하고 있는 그러한 광범위한 질서의 변화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질서의 變化가 생겼을때 이것은 教育의 變化에 합당한 범위에 附加되는 보다 特殊作業場을 要求하는 特別活動을 教育의 變化는 보여줄 것이다. 또는 基本的인 作業場에 特別한 變化를 要求하거나 特別한 作業場과 다른 種類의 사이에 變化를 要求하는 새로운 活動을 變化는 보여 줄 것이다.

제대로 이것은 “Committed”될 어떤 場所에 變化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變化는 物理的 變化를 할수 있는 건물의 기능역할에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물은 적응적이다”하는 전환이 오는 것이다. 適應性을 增加시키는 方向으로 提示된 開發研究에서 생기는 충격적인 事實은 적응성이 거의 일정하게 우선 再配置部分의 面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것은 物理的 變化의 必要性이 部分的 場所가 대중적이고, 分類된 内部場所의 종류를 변경시킬 필요에서 생긴다고 믿고있고 종종 학교에서는 교실의 크기와 모양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믿고 있다. 이와같은 “場所配定과 設計”는 기존건물에서 새 공간을 만들거나 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건물은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할때 생기는 경우들이다.

보다 장소배정과 설계가 필요한 곳은 상하수도 시설, 쉼터 시설, 과학실험시설, 전기시설, 시청각 시설들의 경우이다.

건물부분을 한꺼번에 再配置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한정된 건물의 능력을 파괴하기 쉽기 때문이다.

적어도 학교건물은 적응성이 필요한 곳과 교육이 적응성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재배치 설계 되어야 한다.

3) 設計形態와 建物外廓

學校建物の 形態를 보면 화물차의 칸의 연속처럼 복도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教育活動이 점점 多様해 짐에 따라서 英國처럼 톱니모양 같은 형태도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戰後學校 형태였고, 이러한 형태의 특징은 풍부하고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며, 야외 교수장소(teaching spaces)를 다양하게 하고있다. 이는 영국의 기후가 그렇게 결정지워준 것으로 본다.

이제 모든 전형적인 設計形態가 教育으로 接近하는데서 다른 要求의 直面하게 된다. 이것은 適應性和 融通性

에 關係되는 問題이다. 教育에 接近하는 어떠한 施設도, 그것이 變化하던 教育을 變化시키던 것에 좋은 結果를 주는 渠 — 設計形態는 없는 것이다. 다만 一定 設計基準形態는 규칙적이다.

이러한 종류의 變化가 생기는 설계실험은 몇가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어떤 建物の 設計形態이든 設計者의 변덕으로 또는 독단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위의 모든 事例에서 중요한 사항은 内部空間設計이다. 그리고 이러한 設計를 생기게 하는 教育活動의 關心事物이다. 어떤 特殊敎科學習은 그것이 敎科 원래에 것이든 응용된 것이든 관계없이 서로 연달아 교체되는 여러 活動을 必要로 하게 된다. 즉 실제와 교체되는 理論, 또는 다른 實際의인 學習의 種類인 것이다. 만일 그 學習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교체되는 活動에 必要한 여러가지 유형에 施設은 다른 學習과 단절되어야 한다. 동시에 어떤 다른 活動은 그래서 그 活動에 必要한 施設은 단 하나의 敎科와 연결이 되어 있다. 反面에 다른 活動들은 여러 많은 敎科와 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融通性을 생각해야 한다. 확실한 施設에 대한 個人別 뿐만 아니다. 다른것들과 연합되는 方法 그리고 이러한 연합에서 생기는 설계형태를 생각해야 한다. 앞에서 보인 英國 모델 學校建物은 융통성의 개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첫째 敎授-學習 프로그램 (teaching-learning programme), 둘째 다양한 教育活動의 유형, 셋째 作業集團의 크기 등에서 보여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設備의 再配置가 독단적으로 建物機能에 變化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變化를, 可能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광범위한 敎授場所를 규정한 것이고 特殊하고, “Committed”된 장소와는 떨어졌고 소리가 서로 울리지 않게 되었고 것이다. 設備가 떨어져 있는 特殊한 건물은 거의 설비단지가 상당히 충분한 장소에서 생길수 있는 융통성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오히려 여기서는 적응성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학습선택의 범위를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적응성은 융통성이 그 한계에 다달았을때 생기는 것이다.

설비단지는 충분히 커야하고 다양한 시설은 갖추어 져야 한다. 설비단지안에는 연속적인 공간을 둔 설계모양을 가져야 한다. 設計의 길이와 변화에 적응하는 建物の 力量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層의 數이다. 多數層 建物과 關聯된 問題와 제약점은, 1層에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큰 것이다. 특히 채광 통풍은 1층에서 더 용이하게 된다.

단층은 철공소 같은 매우 무거운 또는 特殊 서비스를 要求하는 特殊設備을 포함한 特別施設의 配置를 보다 자유롭게 할수 있다. 더욱이 通路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層의 數를 決定해야 하는 것은 지상(地上)면적의 부족에서 불가피하게 層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4) 位置와 配置

새로운 學校建物은 基存建物の 뼈대에도 추가하여 지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듯이 여기서는 새로운 建물을 지을때는 반드시 학교목적에 부합하는 기존뼈대와 건물을 면밀히 분석한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건물자체의 확인인 것이다. 이러한 分析은 더 나아가 施設의 配置, 크기, 力量, 建物の 수명, 조건, 教育에서 보는 建物の 必要性, 또는 순수하게 物理的으로 새롭게 하거나 어떤 목적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잠재력(교육적 및 사회적)이 어떤때에 적합하고 바람직하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건물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는 建物の 力量, 建物の 部分的 變化를 시사하고 있고 이러한 建物は 점차 그 건물의 효과적인 사용이 또는 유용한 力量이 미래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있다.

使用에 처한 그와같은 變化나 혹은 알맞게 分類하여 사용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새로운 概念을 說明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나 야간교육기관은 여러해 동안 같은 기능을 해왔다. 새로운 것은 우리가 直視한대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것과 적당히 사용하는 것과 적당히 사용하는 범위와 정도이다. 즉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넓은 도시에서 시골로 분류된 시설關係를 말한다.

사실, “施設의 位置”는 面積의 有用性의 問題 마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단층과 多數層에서 생기는 문제 그것이다. 이미 세워진 施設의 位置는 건축적, 教育적, 재정적, 사회적, 지역개발적인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균형잡힌 관심”에서 해결될수 있다고 본다.

5) 環境 및 서비스 施設

學校에 内部 環境에 처한 效果는 뜻있는 얘기다. 예를 들어 조명이나 스위치 설치등은 學習能率에 効果적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環境 및 서비스 시설 요소들은 적기에 연합되어 이용이 용이해야 한다. 만일 건물을 재배치 할 경우에 이와같은 요소들이 파괴된다면 그 배치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환경 및 서비스 시설의 效果는 모든 學校에 단일화하도록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은 교육에다 융통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에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방들의 연관성에 따라서, 교수목적 (teaching purposes)에 따라서, 그 要素들은 절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요소들은 과외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최초의 건물을 지을때 드는 비용에 드는 것이다.

6) 構造

變化에 對應하는 뚜렷한 출발점은 바로 構造의 틀을 設計하고 이를 實驗한데서 이해되어 왔다. 構造의 틀은 “敎授-學習”의 서로 多樣한 環境에 適合한 施設을 만들어

주는 設備의 再整備를 쉽게 해준다. 構造의 틀은 部分的인 設備를 追加, 또는 철거, 再配置하기 쉽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環境條件을 만드는데 要求되는 새로운 서비스 施設의 設置를 확실하게 해준다.

構造는 규칙적인 바둑판 모양이 아니고, 다양성과, 선택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 예를들면 드라마 센타와 극장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어떤 建物の 構造의 주위의 位置에다 그들과 함께 고정시키는 것은 구조적인 안전성과 구조적인 가장자리의 두께와 강력성에 의존하는 형태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設計에서 "alternative stanctr-ao"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서비스 시설이 위치한 마루나 천장에 나무판을 철거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또는 마루나 천정을 뚫을 수 있거나 할 경우인 것이다.

이상으로 構造의 機能的인 핵심은 첫째 구조적인 안전성과 통풍을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있는 구조이며, 둘째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재(스틸, 콘크리트), 세째 構造 주변이 통(通)하는 것이 많아야 한다. 이들은 空間을 겹쳐서는 않된다(그 空間은 이미 다락방을 갖도록 되어 있다 등)

7) 備品 및 設備

備品 및 設備는 變化에 민첩해야 하고, 建物內에 쉽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教師들이 모인 곳이나 學生들이 모인 곳에 보다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設備가 휴대용으로 되면 될수록 그 設備는 쉽게 設置될 수 있고 동시에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에서 계속 활동의 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이것은 教師나 學生들이 必要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設備의 再整備를 하도록 하게 하고 상당히 큰 융통성을 갖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동적인 설비인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교사들이 장소를 융통성있게 이용하는데도 다루기 쉬운 것이다. 이것은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많은 教育活動中 特殊環境을 필요로 하는 또는 特殊空間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때 特別 設備나 備品은 참으로 많은 教育을 有用하게 해준다.

융접하는 일, 대장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設備에 대하여 잘 說明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設備들은 "general"과 "special" 또는 "Committed"와 "Non-committed" 場所에서 각기 사용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分類하여 사용하게 된다. 만일 어떤 場所가 特殊設備나 備品の 한 형태를 계속 사용하도록 되었다면 그 設備는 불가피하게 특수 교수기능에 관계되는 집합크기를 가져야 할것이다. 즉 그 설비는 사실상 "Committed space"가 될것이고, 이 設備를 사용하는 學校-部에서 그 設備를 융통성있게 사용할수 없도록 고정시설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휴대용의 형태를 지닌 備品 및 設備를 사용하면 "Committed space"

는 줄어 들 것이다. 設備에서 特別히 要求된 것에 設計된 學校建物の 必要性的 程度는 最少한으로 적어질 것이고 그리하여 사용도도 융통성은 增加될 것이다. 이것은 備品 및 設備의 융통성을 찾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建築家들은 세분된 장소를 구성하는 방법과 같은 方法으로 그 길을 찾았다.

이러한 휴대용 설비는 언제 어디서든지 設置할수 있다. 教授는 건물이나 건물의 서비스시설에 의해서 제약을 받거나 그에 따라 교수의 질과 양을 낮추는 그에 따라 교수의 질과양을 낮추는 設備는 용납하지 않는다.

8) 費用에 對한 見解

未來 變化에 對備할때 이것은 융통성이나 적응성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學校建物は 費用을 절대로 必要로 한다. 이러한 兩者의 경우에 그와같은 設備를 最大限으로 하는 순수한 연구는 예외적으로 내용을 상당히 줄이는 研究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 兩者의 경우에 만족할 만한 均衡은 目的과 費用사이가 단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융통성의 경우에, 그 결과는 최대한의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비용어어야 한다. 예를들면 보다많은 多樣한 活動類通을 許容하는 設備의 내용에서나, 이에 연합된 있는 施設의 範圍를 增加시키거나 또는 活動에 종사하는 學生수를 초과한 활동을 위한 작업장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할때 이 兩者는 불가피하게 비용을 증가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general space"나 또는 "non-committed space"의 設置는 建物の 중요한 부분을 초과한 특수하고 독단적인 通路의 기능을 거의 전체적으로 없애도록 할때에만 실현화 되어지는 "special" 또는 "Committed" 장소에 의해서 지적되고 만들어 진다. 이것이 바로 비용의 절약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융통성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모든 요소들은 공간설치 결정과 備品 및 設備를 선택하도록 된 設計形態를 決定하므로써 평가된다. 그래서 이러한 융통성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學校에서는 "全体費用均分法"이 이루어져야 하고 비용의 증가와 절약사이의 균형, 또는 建物 費用과, 備品 및 設備 사이에 費用等を 決定해야 한다.

그리고 적응성에 대한 관심은 첫째 비용 그 자체의 적응성과 둘째, 비용이 꼭 필요할때 적응되는 세목비용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적응적인 비용"이란 최초의 비용을 말하며 예외적인 投資로 보거나 또는 未來에 이익이 되는 希望을 갖는다. 비용은 자본없이 하는것 보다 資本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充分히 費用을 적게하는 適応인 것이고, 이것이 未來 變化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未來에 합당한 財政的 費用을 評價하거나, 그런 評價를 價值롭게 하는 데에는 適応性的 範圍와 速度에 關한 假定 研究가 必要하고 未來에 가서 그 適応이 얼마나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必要한 이야기가 된다. 建物部分을 全般的으로 再配置하는 데에는 根本的

인 투자를 해야한다. 실제로 본 設計實驗은 建物の 20%가 再配置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때에 드는 費用은 10%의 費用이 든다. 그러나 최초로 건물을 지을때 再配置할 수 있도록 건물의 융통성을 감안하여 재배치하는 것 보다는 費用이 더 드는 법이다.

만일 建物 어느 部分이 再配置되지 않을때 보다 더 이상 費用이 드는 것은 건물 部分에 있는 마루와 천정의 대들보나 거리의 범위는 再配置할 때이다. 건물을 再配置 할 경우가 있다면 부속서비스 시설(스위치 등)은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것이고 이때에 드는 費用은 간접적인 費用이 되며, 적응적인 費用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建物の 基本 構成要素를 제거하거나 再配置할 때 생기는 適応性은 중요하고 기능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創庫의 構成要素의 경우에 적절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최초로 적응적인 비용과 후일에 오는 적응적인 비용사이에 균형을 지키도록 하는 특수조건에 의할 것이라고 본다.

융통성과 적응성의 기준은 임시적이며 예상되는 이익과 비용의 균형을 갖는 내용과 관계 된다.

이상에서 設計者는 設計하는 전 과정을 달성하도록 자출의 수준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행하고 있다.

V. 結論 要略

以上으로 세 나라의 모델 学校建物は 教育變化에 適応的이며, 教育을 變化시킬 수 있는 融通性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1. 教育面에서의 시사점

未來 變化에 유리하게 되는 施設의 多様性은 教育을 變化시키는 融通的인 特徵이 되는 것이다.

광범위한 교육과정에 선택과, 입학생수의 다양성은 항상 学校建物内の 場所를 이들보다 많은 數를 확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方向아 앞에서 이야기 한 융통성인 것이다. 그러나 現E의 教育의 要求를 現在의 제한된 学校建物이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学校建物は 再配置 등을 통하여 教育의 要求에 適応的이 될 것이다.

2. 管理面에서의 시사점

許容된 施設을 使用할때 建物內에서 일어나는 變化의 기회를 알아보는 일이라든가, 적응할 수 있는 건물의 力量, 機能, 또는 의욕을 알아보는 일들은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여러 유용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方法에 依해서 最少限의 費用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첫째 教授가 즉흥적으로 만드는 시설 변화, 둘째 보다 적합한 설비의 대용품이나 실물을 보여주는 變化를 통하여 가능하게 해준다.

3. 財政과 計劃面에서의 시사점

이 研究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未來 變化에 対応하기

위하여 보다 상당한 根本的인 費用을 正當化하고 있지는 않다. 보다 価値로운 것은 建物內에서 어디에나 그리고 어떻게 그 有用한 費用을 쓰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load-bearing walls"대시에 構造形態를 利用하는 것은 최초의 費用을 올리지 않고, 새 建物에서 適応性을 增加시키도록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인 묘안들이 바로 이것이다. 만일 실제로 오는 유리한 점이 그와같은 묘안을 허용할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이라면 財政은 적용할때 유용하게 적용할 것이다. 施設의 확충을 허용하는 敷地는 이러한 戰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學校는 地域社會와 상대적인 위치를 요구하며, 학교건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때는 학교敷地 以外에서 문제를 해결하므로써, 요구되는 새로운 施設의 균형(지역사회화의 문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 技術面에서의 시사점

"load-bearing walls"보다 "strnctural frame"의 사용은 미래변화에서 생기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방향을 가진 "a long way"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균일하게 긴 마루와 천정은 적응성이 적고 실제로 필요한 자료실을 다양화 하는데 너무 비경제적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설비의 다양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a range of spans or stonctnral layonts"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Strnctural frame"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建物の 一部를 全体로 再配置하는 것은 약간 비생산적인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이것은 다양한 설비의 필요성을 방해하는 투자가 된다. 適応性은 직접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 대하여 좋은 연구이다. 그러나 여기서 건물의 일부에서 처럼 재배치 시설을 첨가하거나, 재배치 또는 제거하는 일은 별도의 서비스시설을 쉽게 설치하기 위해서 "building elements"를 없애거나 지적할 수 있는 構造를 意味한다.

5. 設計面에서 오는 시사점

教育의 要求에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建物の 적응성보다 융통성을 중시하는 것이 되겠다. 특히 이 융통성은 유동성 설비를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동시에 최대의 설비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다양화 시키기 때문에 건물내부의 교수장소 및 작업장소를 넓혀주고 있다. 그래서 기본 작업장을 특수작업장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특수작업장을 기본 작업장으로 바꾸는데 수월하다. 이러한 평가는 "committed spaces"와 분리된 연속체적인 활동지대를 허용하는 設計形態를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設計形態는 복잡한 채광, 통풍, 통로문제들을 피할 수 있게된 設計形態이다.

만일 적응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단층건물의 경우에 강조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國家 當局이 보다 關心을 기울여 그 효과를 나타내주어야 한다.

屋外騒音과 防止

李聖國

序 言

發展하는 物質文明, 그에 못지않게 날로 深刻해져가고 있는 公害, 그중 騒音의 公害는 별로 重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實情이나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社會的인 問題로 擡頭될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믿는다. 騒音의 公害는 어떤 面에서 間接的이기 때문에 쉽게 홀려버리기 쉬우며 單純한 改善이나 政策으로는 解決되기 어렵고 長期的인 計劃과 研究가 必要하다.

建物에서 計劃時, 寢室과 居室을 分離시키는 등의 甚히 常識的인 理論만으로 “아늑하다” “포근하다”라고 말하는 境遇도 있으나, 그것은 一般的인 이야기이며 앞으로는 構造的인 方法 研究와 建築資材의 発達 및 緻密한 施工 技術로 騒音에 對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騒音은 騒音源 (Noise Source), 騒音聽取者 (Recipient of the Noise), 經路 (Path), 등의 要素를 包含하여 생각할 수 있다.

호텔 (Hotel) 建物の 最上層 나이트 클럽 (Night Club) 과 그 下層의 寢室과의 關係, 機械와 그 近處에 있는 사람과의 關係 등이 空間을 가진 經路가 있으며, 날아 가는 비행기와 室内의 사람과의 關係와 같이 屋外의 空氣層, 지붕, 壁, 窓 및 室内의 空氣層을 가진 複雜한 經路가 있다. 騒音源은 이디에서나 있을 수 있고 聽取者도 마찬가지로 지다.

本稿에서는 建物 内部에서 聽取者가 存在하는 것을 前提로 하며, 가능한한 例나 詳細는 省略하고 概略的인 原理와 理論에 對하여 論하기로 하겠다.

(1) 屋外騒音에서 音의 傳播에 미치는 氣候의 要因

바람, 溫度變化, 눈, 안개 등은 音의 傳播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이다. 音이 單純히 바람따라 傳播되기 때문에 減衰되는 것은 아니고, 바람이 있을때는 그림 1과 같이 항상 바람의 變化度 (wind gradient) 가 있다는 것이다.

上部에서 부는 바람은 下部에서 부는 바람보다 빠르며 이는 下部에서 바람을 안고 傳播되는 音이 上部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圖示된 바와 같이 音波는 휘어지며 B점에서는 그 에너지가 적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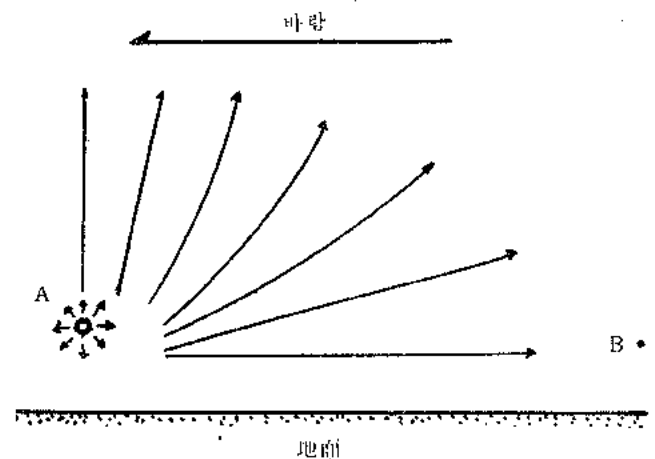


그림 1. 바람의 變化度

溫度의 變化度도 위와 비슷한 樣相을 띠우는데 그것은 音의 速度가 溫度의 上昇에 따라 더 增大하기 때문이다. 또한, 上層部와 下層部の 溫度變化에 따라 달라지는 現象을 發見할 수가 있을 것이다. 溫度의 變化度는 音源 周圍의 모든 方向에 影響을 미치나 바람의 變化度는 順風과 逆風에 따라 다른 影響을 가져온다. 바람과 溫度의 變化作用으로 因하여 音源에 가까운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잘 들리는 異常聽取現狀이 일어나는데, 그 原因은 騒音이 變化度에 依하여 上層部로 휘어져서 그곳에서 傳播한 다음 다시 下層部로 휘어지기 때문이다.

안개는 空氣中에서 加外의 吸音을 일으키는 原因이 되며, 안개가 甚할때 周波數에 따라 10db/1,000m ~ 33db 1,000m 정도 減衰가 된다. 눈은 地面에 吸音層을 形成하

고, 地面의 反射波에 影響을 마치게 되며 音壓레벨을 低下시키는 作用을 한다.

音源과 受信點이 地面에서 가까운곳에 있을때 地面에서 反射되는 音波도 無視할 수는 없다. 그것은 地面의 材質과 關係가 되는데, 딱딱한 바위같은 것은 反射性을 갖게 되며, 牧草와 같은 材質은 吸音性을 가져 音의 減衰를 일으킨다. 그림 2는 이러한 経路를 나타 낸다. 또한, 大氣內의 攪流(turbulence), 즉 최오리바람같은 것도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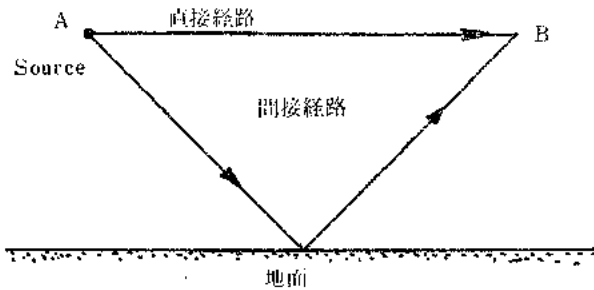


그림 2 騒音의 経路

위의 要因들은 과연 얼마만한 影響을 미치는가 하는 問題는 要求性에 依해 判斷하여야 할것이며, 長期的 平均値를 위해서는 無視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騒音源이 가진 方向度(directionality)란?

騒音源의 方向度에 對한 例로서 噴射推進機関(jet engine)을 들고자 한다. 噴射推進機関(jet engine)은 低周波 水素音을 噴射軸線에 略 30°의 角으로 放射한다. 그림 3은 大氣中을 徘徊하는 제트엔진 周邊에서 音壓레벨을 300~600Hz의 옥타브帶로 나타낸 것이다. 分明히 噴射軸線에 30°의 角에 位置한 建物은 그 建物이 다른 位置, 가령 軸線에 對해 90°의 角에 位置하는 境遇보다 더 많은 騒音을 받고 있다. 이것이 騒音의 方向度이며, 거리에 따른 騒音의 세기 減少는 逆제곱法則 作用을 하고 空氣에 依한 分子吸音(molecular absorption of sound)을 일으킨다.

3) 騒音의 防止와 調整

騒音에 對한 防止策은 設計에서부터 始作되어야 하는데 騒音의 表示는 圖面에 나타나지 않는다. 設計의 第1차적인 段階는 計劃인데 여기서 計劃이라함은 団地의 選定, 建物 및 그 周邊 道路 등으로 부터 建物의 平面과 斷面上的의 換氣管 設置 位置 等의 決定에 까지 이르는 전 豫備作業을 意味한다.

騒音에 對한 防止의 根本的인 解決은 다음과 같은 作業을 行함으로써 可能하리라 본다.

- 音源과 保護해야 할 建物사이의 距離를 最大한 멀게 하는것.
- 音源과 建物사이에 壁과 같은 幕을 設置하는것.
- 建物自体를 二重窓으로 한다든가 하여 騒音에 抵抗하게 하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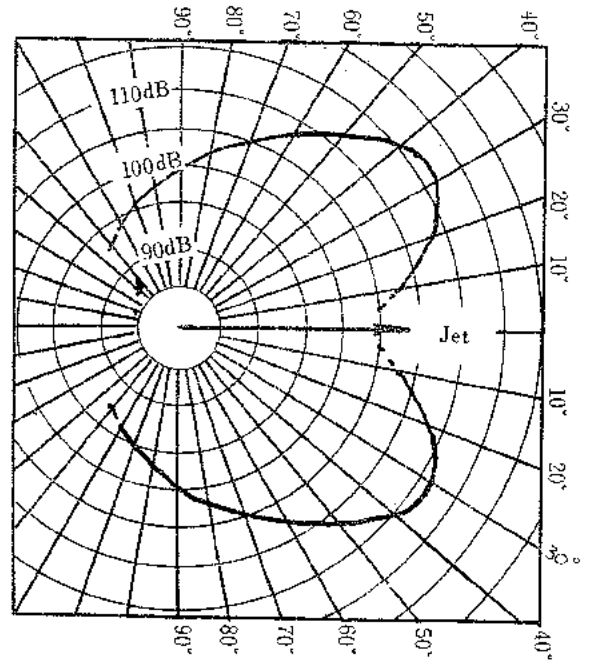


그림 3 30m 距離에서 제트엔진의 300-600 Hz 에 있는 騒音의 Levels.

d. 建物과의 接觸으로 그 音의 一部를 放射하는 機械類나 기타 騒音源 等을 地下層에 設置하는것 등이다.

4) 騒音과 室사이의 適正距離

다음 表는 各種 演說을 目的으로 하는 室들과 道路 境界사이에 許容되어야 할 水平 距離다. 다만 道路에서 高 尺 建物 窓까지의 傾斜距離는 無視한다.

다음 表는 設計나 団地計劃 等を 하는데 參照가 되리라 믿는데 반드시 合當하다고는 強調하고 싶지 않다.

이 實驗을 行할때에 다음과 같이 假定을 하고 實施하였다.

- 道路와 房사이에는 障害物이 없다.
- 房에는 道路에 面한 窓이 있고
- 道路는 激甚한 交通量이 持續된다.
- 單一窓은 4mm의 유리로 되어있고 密하게 閉鎖되어 있다.
- 二重窓은 各各 4mm유리로 된, 完全히 密閉된 2葉으로 되어 있고 窓틀의 吸音體와 100mm의 空氣層을 두고 分離되어 있다.

f. 窓에 가까이 位置하는 在室者는 없다(이 假定은 集會廳 및 劇場에 있어서 重要하다).

여기서 理想距離는 室內에 이른 障害騒音이 전혀 無視될 程度의 距離를 말하며 實行距離는 말소리 疎通이 可能하나 若干의 不便이 따르게 되는 程度를 基準으로 한다.

5) 吸音體에 依한 騒音의 減少

吸音體의 騒音레벨을 줄이는 實用材料의 選擇과 使用에 對해 簡單히 論하기로 하며, 이러한 用途에 有用한 吸音體는 室內의 音響補正(acoustic correction)에 쓰이는 材料들과 같다는 것도 알 수 있다.

表. 騒音과 室사이의 距離

단위 : m

室	窓의 狀態	基 準	距 離
教 室	열 림 (8m^2)	理想距離 実行距離	600以上 60
	單一窓 (12.5m^2)	理想距離 実行距離	45 7
	二重窓 (12.5m^2)	理想距離 実行距離	無 制 限
大型集會場 또는 500人 以上の劇場	열 림 (10m^2)	—	150
	單一窓 (100m^2)	—	30
	二重窓 (100m^2)	—	無 制 限
50人程度의 集 會 場	열 림 (2m^2)	理想距離 実行距離	300 90
	單一窓 (40m^2)	理想距離 実行距離	60 15
	二重窓 (40m^2)	理想距離 実行距離	15 無 制 限
法 廷	열 림 (2m^2)	理想距離 実行距離	180 60
	單一窓 (40m^2)	理想距離 実行距離	45 15
	二重窓 (40m^2)	理想距離 実行距離	15 無 制 限
20人程度의 集 會 場	열 림 (2m^2)	理想距離 実行距離	225 90
	單一窓 (15m^2)	理想距離 実行距離	38 15
	二重窓 (15m^2)	理想距離 実行距離	9 無 制 限
個人事務室	열 림 (3m^2)	理想距離 実行距離	225 45
	單一窓 (10m^2)	理想距離 実行距離	15 5
	二重窓 (10m^2)	理想距離 実行距離	無 制 限

吸音체는 어떤 材料의 騒音減少체로서의 效率性에 對한 計量이다. 그러나 이 吸音率은 周波數에 따라 다르므로 한 材料와 다른 材料의 比較는 어렵다. 흔히 있는 種類의 騒音들, 例로서 交通 騒音, 打字機의 騒音, 事務用 機械 騒音(accountancy machine), 一般 工場 騒音과 같은 騒音에 對해 가장 簡單하고, 좋은 指針은 500, 1,000, 2,000, 4,000, Hz의 4周波數를 平均하는 吸音率이다.

穿孔率(perforation) 5%인 하이드로보드와 같은 材料를, 이 보다 더 적은 穿孔率 10~20%의 氣孔性裏材를 가진 다른 보오드는 木纖維 音響타일(wood-fibre acoustic tile)과 같은 기타 材料를 보다 그 等級이 더 낮다는 것을 알게 된다. 音에서의 尖頭(peak)가 500~4,000Hz을 範圍를 벗어난 周波類 尺度上的의 어떠한 部分에서 發生하게 되는 特殊한 問題. 에부닥칠 때는 尖頭(peak)가 發生하는 곳 (周波數)에서 最高의 吸音率을 가진, 그러한 型의 吸音處理方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吸音체는 天井 또는 壁에 固着할 수도 있으며 可能한 騒音源에 가까이, 또는 그 周邊에 많이 設置되면 될수록 좋은 效果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材料를 어떤面에 固着시키는 것이 非實用的인 때에는 吸音체를 室內의 天井面에 位置시키거나, 매달아 두는 方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吸音체는 技能的 吸音체 또는 單純히 平坦한 板의 形式으로 할 수 있다.

6) 二重窓의 設置

二重窓의 두겹의 유리는 遮音度를 높이기 위하여 그 空間의 距離가 커야하며, 또한 大体로 二個의 分離된 窓틀을 使用해야 함을 意味한다.

유리사이의 間隔이 3~12mm인 二重유리는 같은 무게의 單一窓 유리보다 더 높은 遮音度를 가지지 못한다. 效果를 올리기 위해서는 25mm 以上の 間隔이 必要하다.

放送室에 適合한 二重窓으로써 높은 遮音度를 가진 窓의 詳細가 圖示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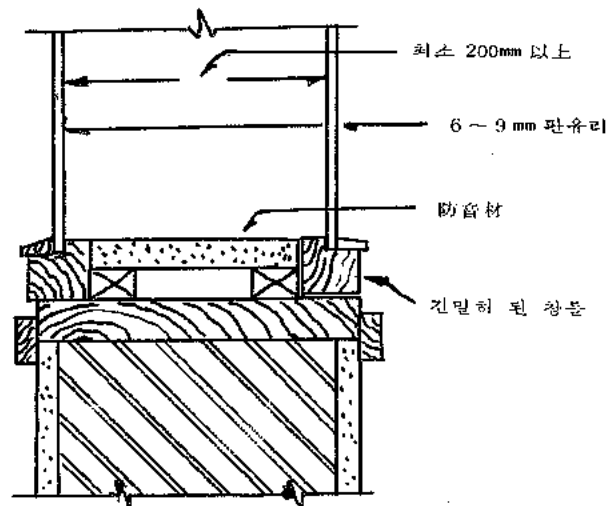


그림 4 studios 의 二重窓 詳細

(國立建設研究所 建築基準科)

會員作品

特輯

本協創立 13周年紀念大賞施賞作品 및 1977~1978 1年間會員作品紙上展

알 림

第2政府綜合庁舎 懸賞設計 當選作
紹介는 本紙 紙面 關係로 11月号에
掲載 紹介기로 되었음을 알립니다.

協会賞作品部門 当選作

영동 L씨댁

설 계 : 황 일 인 건원사전속연구소

건물위치 : 강남구영동

건축면적 : 본체 1층 175m²

8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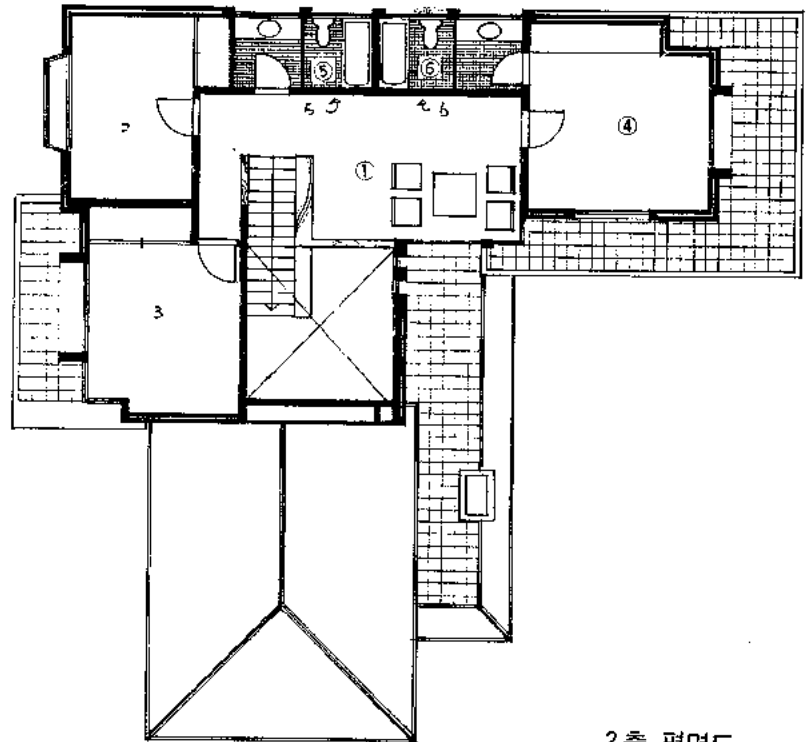
별채 1층 53m²



설계개요 :

서울 번두리에 비교적 넓은 대지이므로 정원을 위치 및 용도에 따라 몇부분으로 나누었다. 대문 부분에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외정(外庭)이 있고 중문(中門)같은 아취를 지나면 내정(內庭)이 열리며 본체와 부모가 거처하는 별채의 출입문이 있다. 후면에는 식사 테라스를 접하는 후정(後庭)을 따로 두었다. 주인 손님이 많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한 주거방법으로 제시한것으로써 거실 및 식당은 독립된 방으로 하여 응접 및 세재를 접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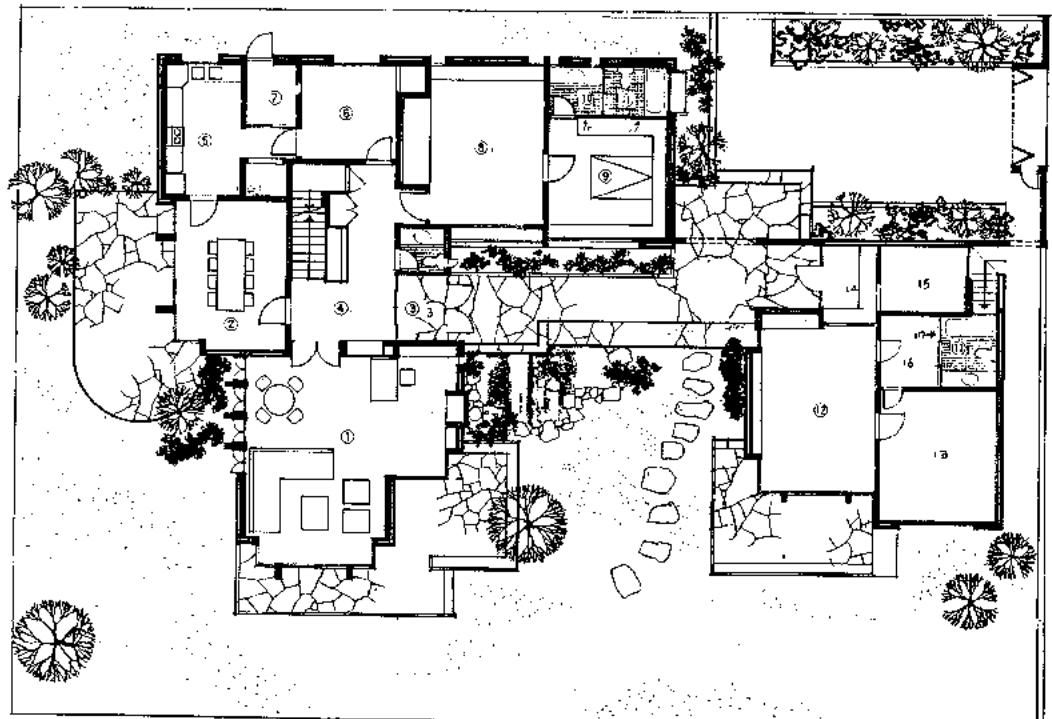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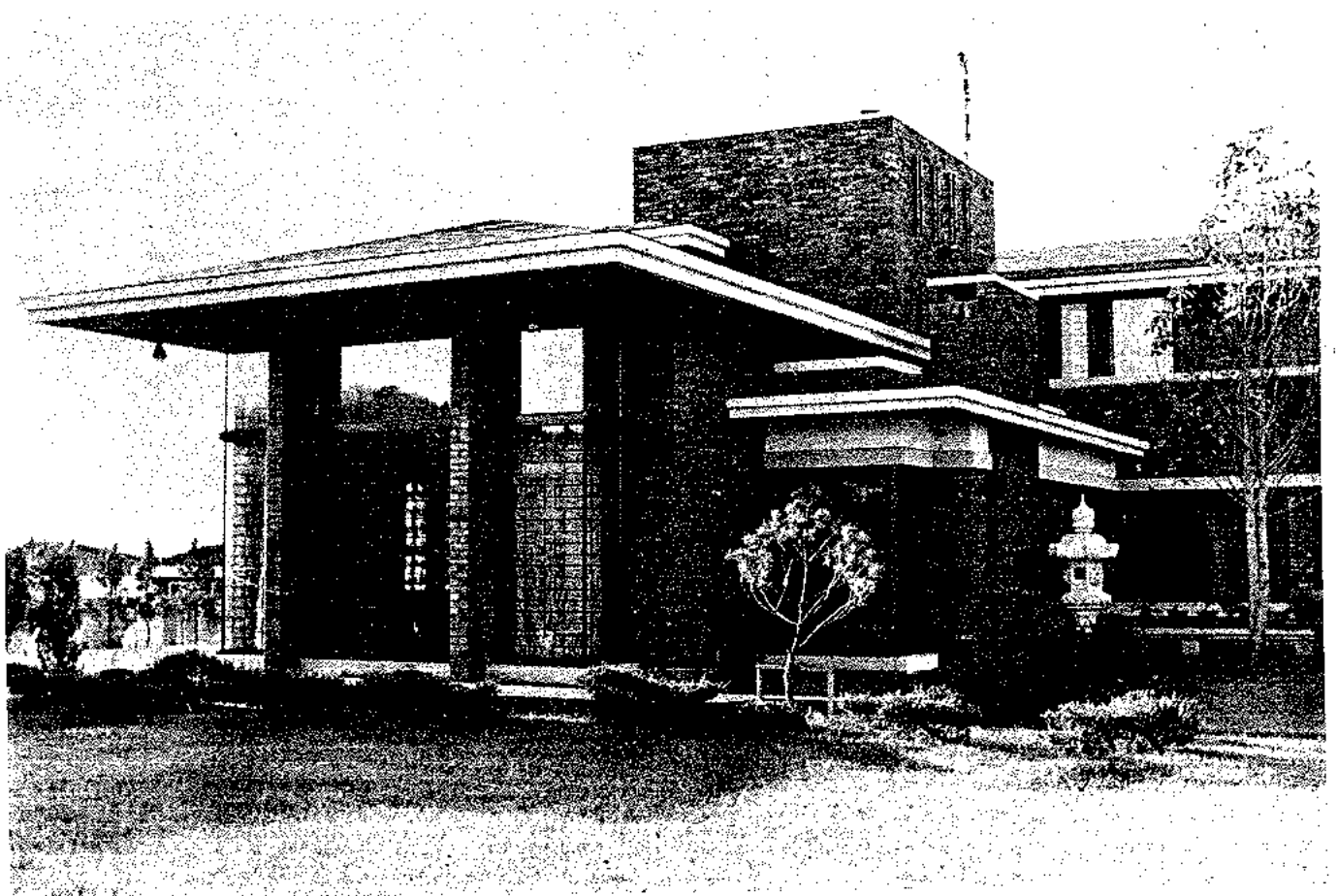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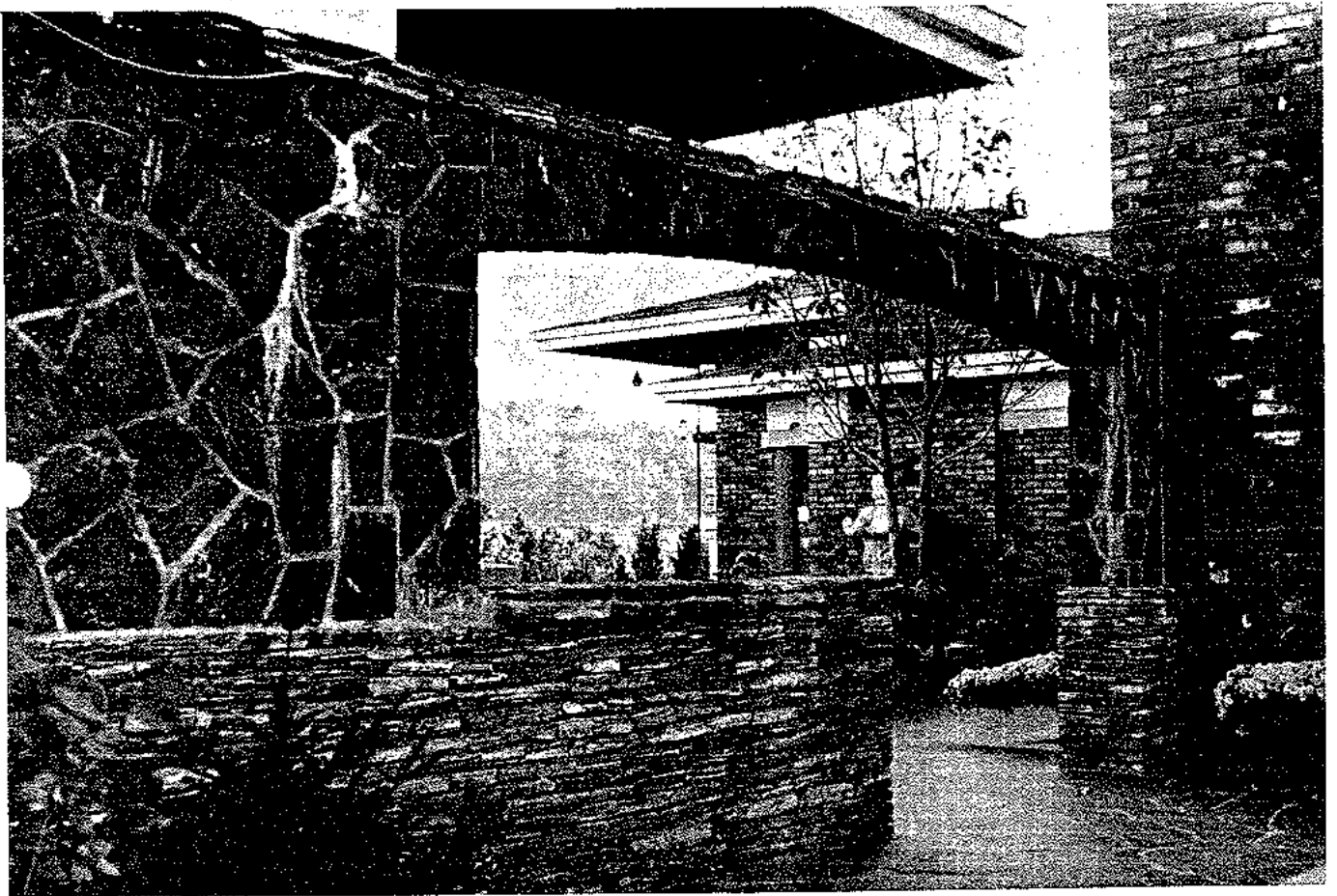
1. 마
2. 침실
3. 침실
4. 침실
5. 욕실
6. 욕실

2층 평면도

1. 거실
2. 식당
3. 현관
4. 홀
5. 주방
6. 가정부실
7. 세탁실
8. 안방
9. 침실
10. 세면실
11. 욕실
12. 거실
13. 침실
14. 현관
15. 침실
16. 탈의실
17. 욕실



1층 평면도





優秀賞作品部門 当選作

단국대학교 梵亭体育館

설 계 : 金 仁 錫 우신건축연구소
건물위치 : 용산구 한남동
건물위적 : 4,507m²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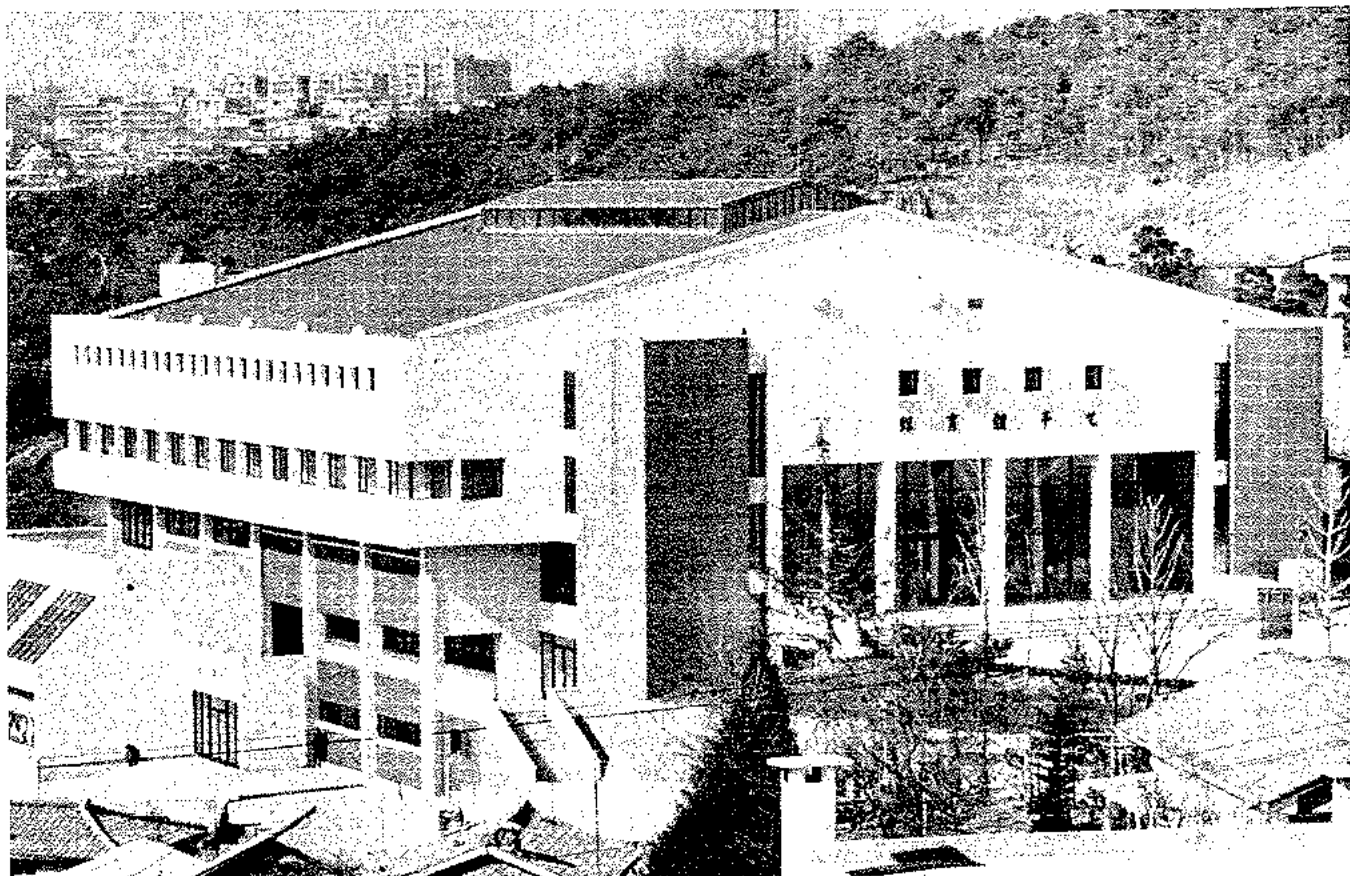
설계개요 :

단국대학교 창립 30주년을 맞아 설립자 梵亭先生의 기념체육관으로 1977년 11월 3일 건립되었다.

경사진 대지조건을 이용하여 지층과 1층에는 체력관리실과 기계제조실 및 강의실 지도교수실을 두고 2층에서 4층에 걸쳐 실내경기장과 객석스탠드 및 부속대기실, 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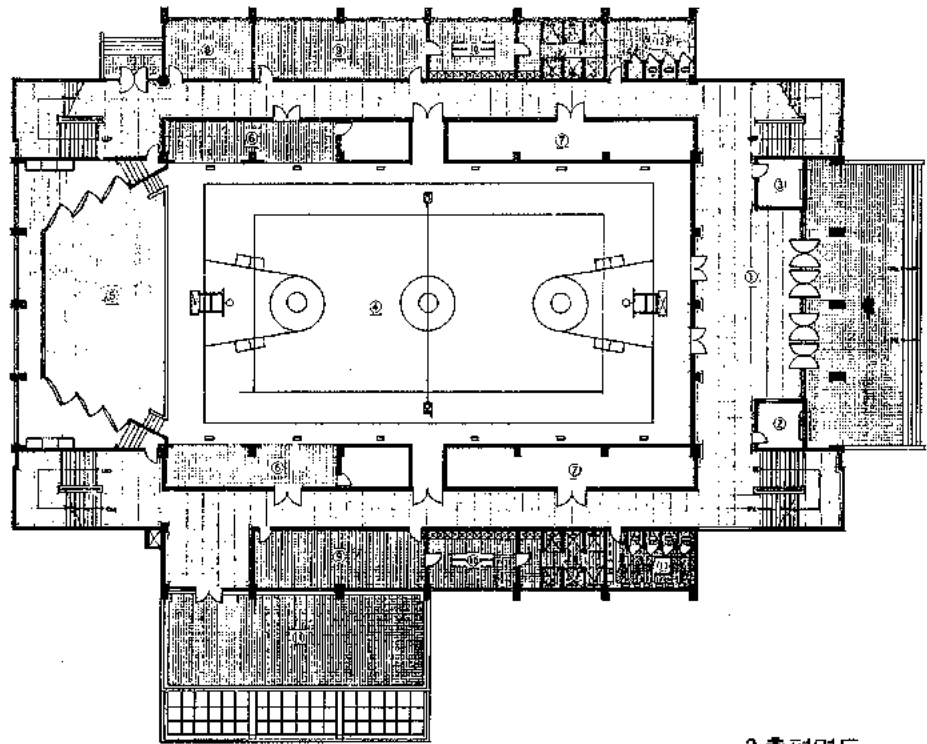
카실, 샤워실, 기구수납창고등을 두었다.

또 경기장에는 강단과 영사실을 설치하여 학교행사에 강당으로 사용을 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기장 부분의 철골 구조체인 형상철골 기둥과 보는 실내에 노출처리하였으며 건물외관은 주위 기존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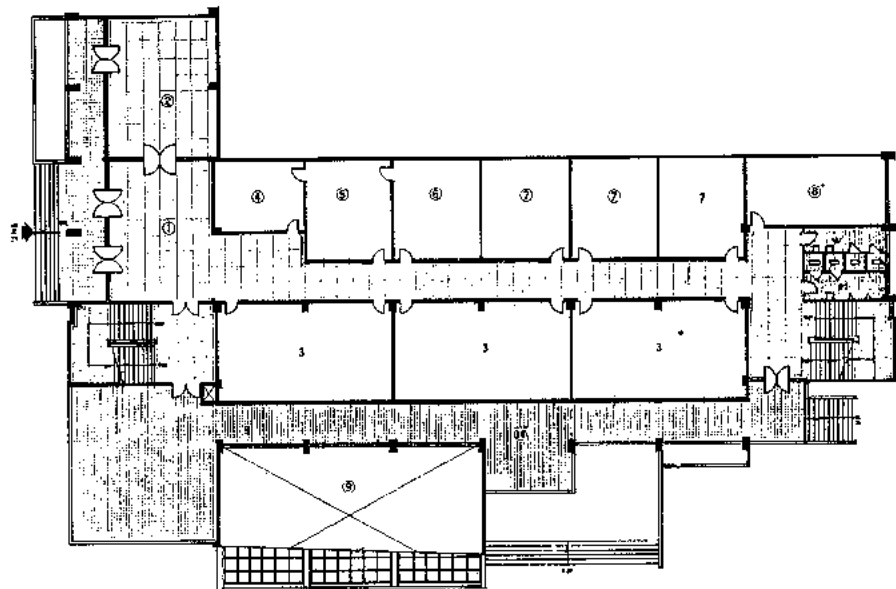


- ①주현관 호-군
- ②수위실
- ③매표소
- ④경기장
- ⑤강 단
- ⑥선수휴게장
- ⑦창고 1.2
- ⑧코-치실
- ⑨선수대기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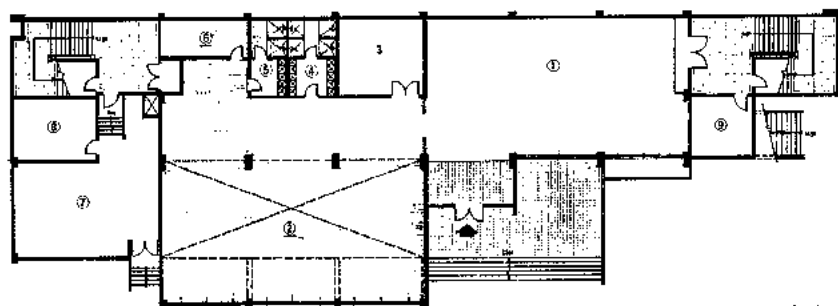
2층평면도

- ①호-군
- ②휴게실
- ③강의실 1.2.3
- ④관리실
- ⑤관리사무실
- ⑥관장실
- ⑦지도교수실 1.2.3
- ⑧양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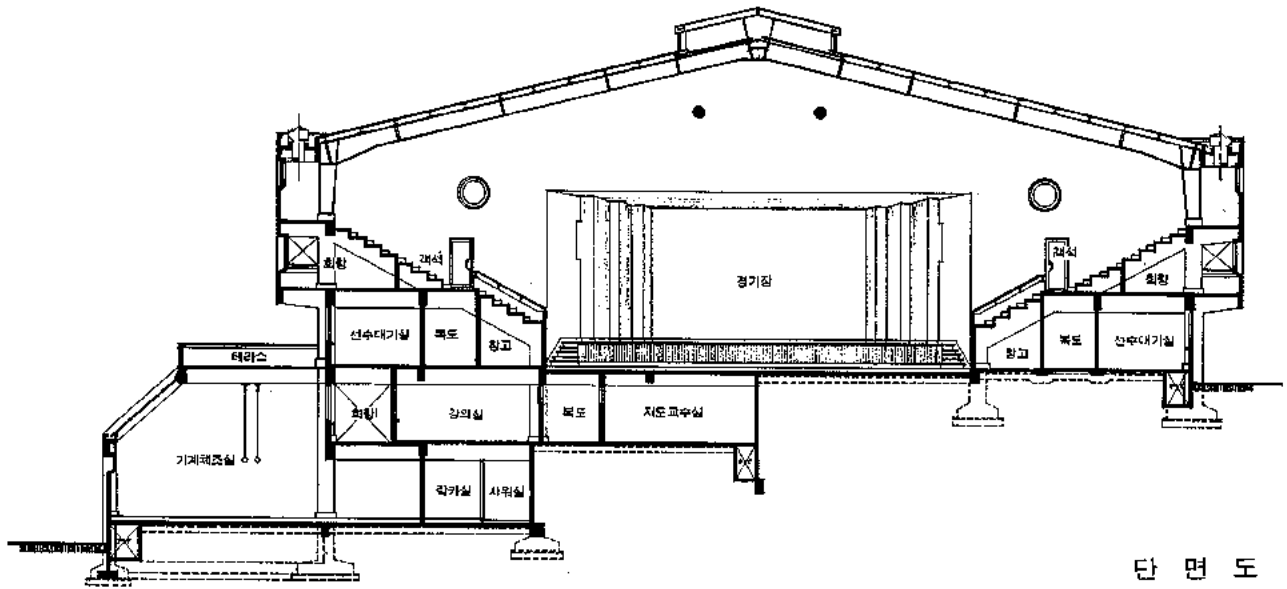


1층평면도

- ①체력관리실
- ②기계제조실
- ③기구창고
- ④남자락카 및 샤워실
- ⑤여자락카 및 샤워실
- ⑥지도교수실
- ⑦기관실
- ⑧변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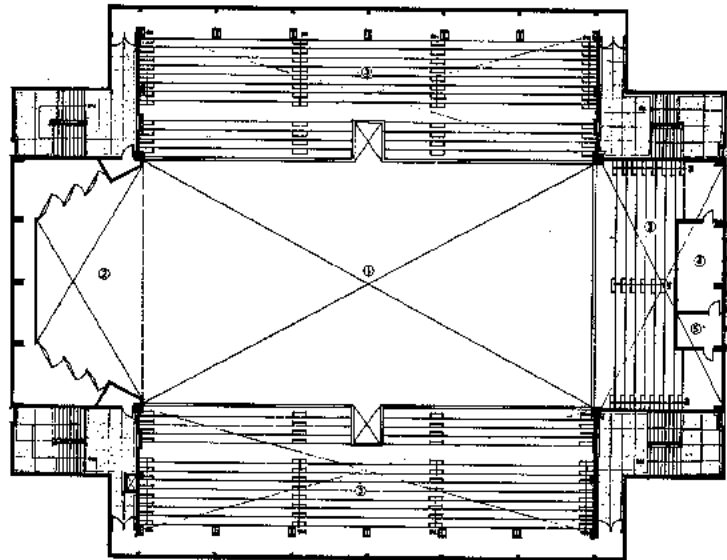


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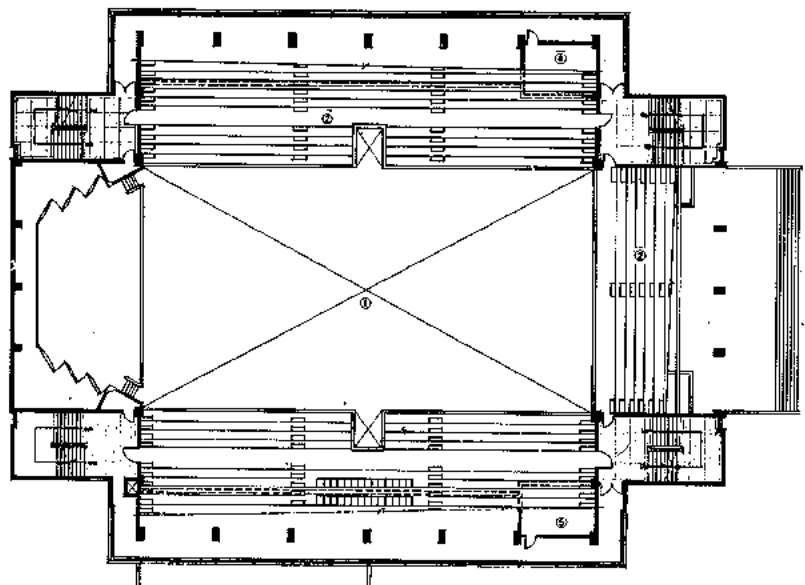
단면도

- ①경기장 상부
- ②강단 상부
- ③객석스탠드 1.2.3
- ④영사실
- ⑤부속실



4층 평면도

- ①경기장 상부
- ②객석 스탠드 1.2.3
- ③회랑 1.2
- ④부속창고
- ⑤물탱크실



3층 평면도

한일은행 포항지점

설 계 : 金 技 泰 삼화건축

건물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대지면적 : 954m²

건축면적 : 53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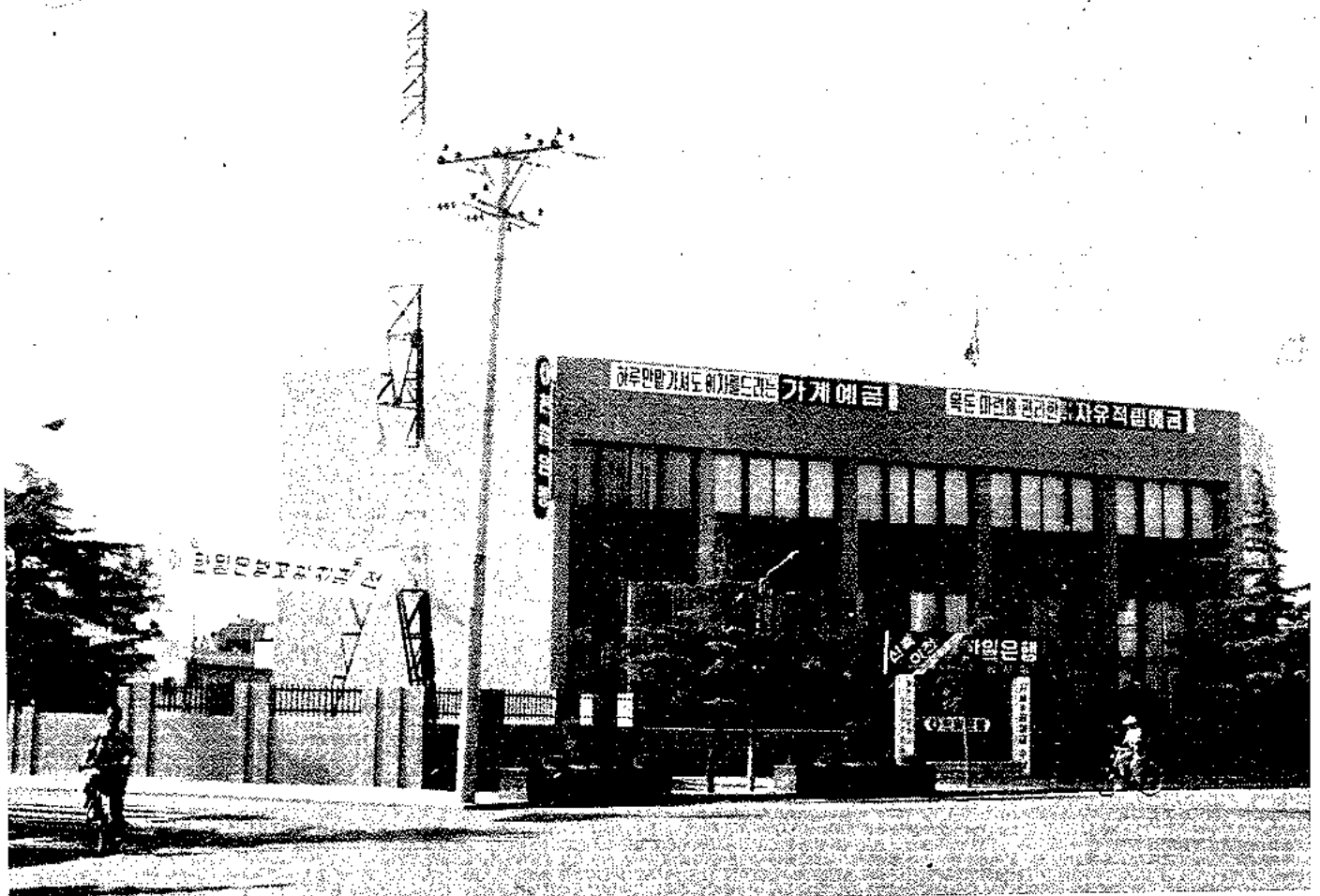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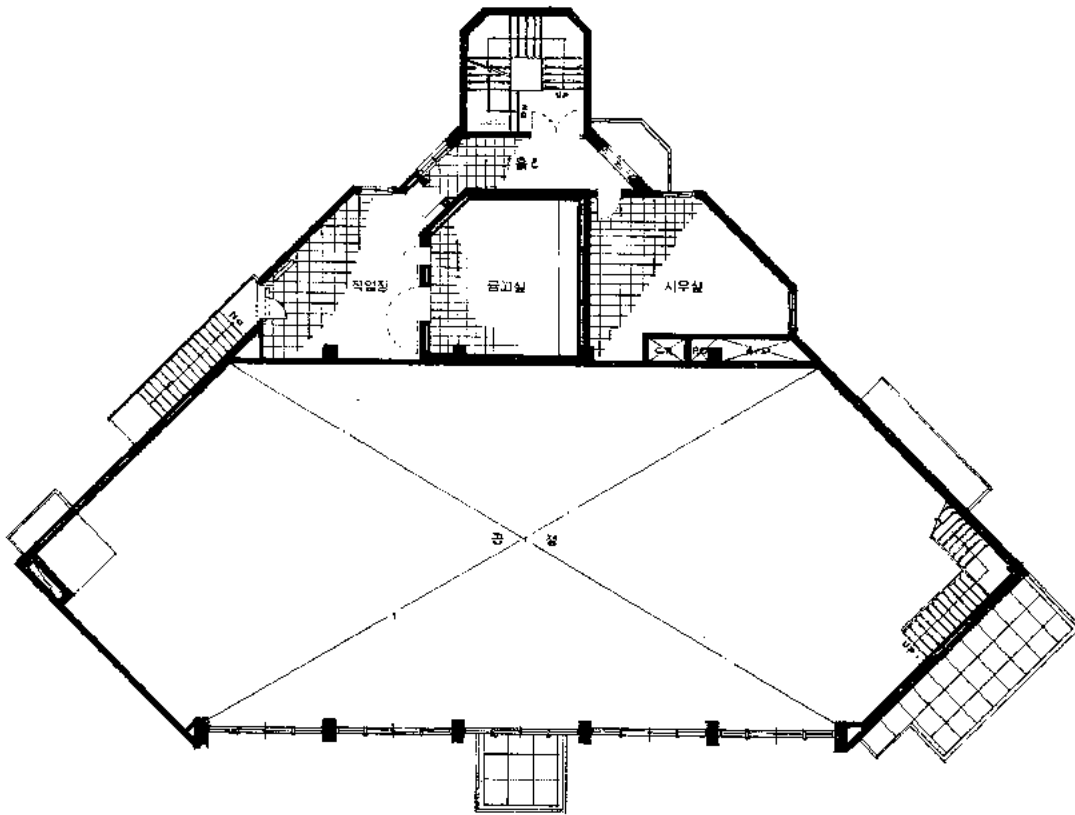


설계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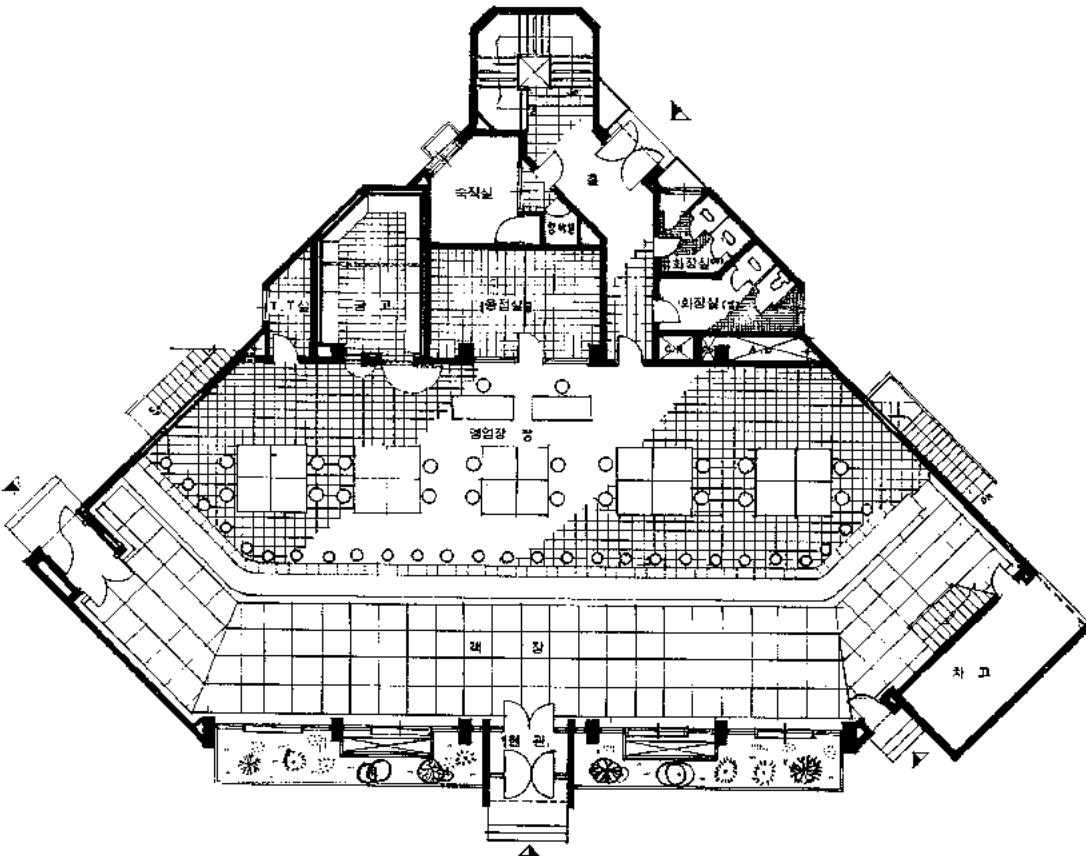
포항시 요지에 위치한 본 건물은 배치나 외관이 재래의 은행 지점 건물과는 다르게 처리되었다고 본다.

이는 대지 및 건물 주위환경의 여건을 감안하여 은행건물로서의 기능해결과 더불어 외관형태를 중후한 질감으로서 은행의 공신력을 표현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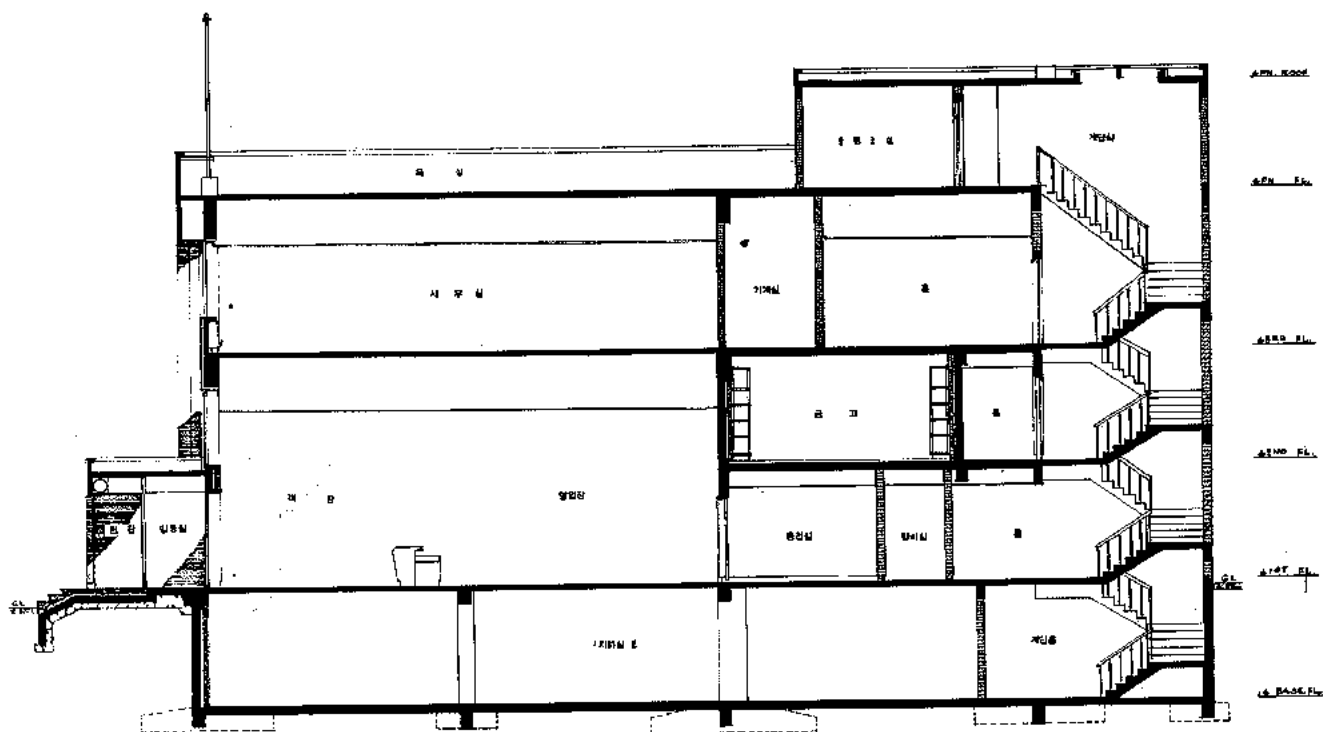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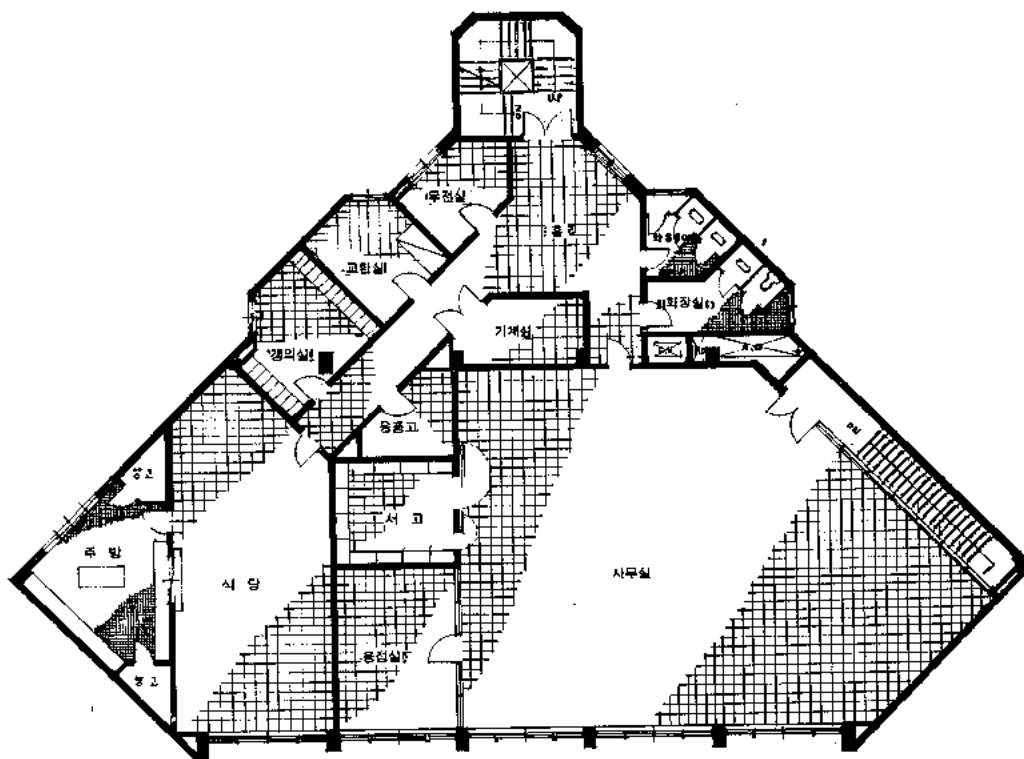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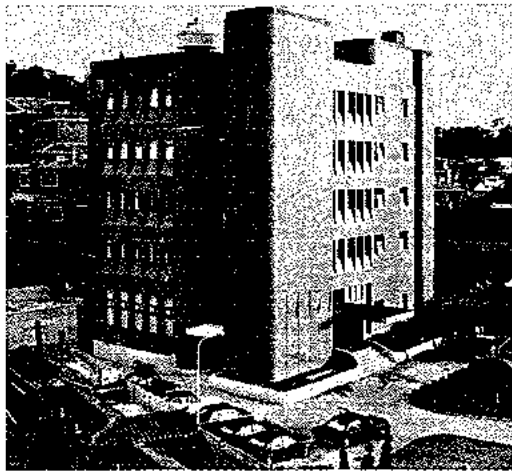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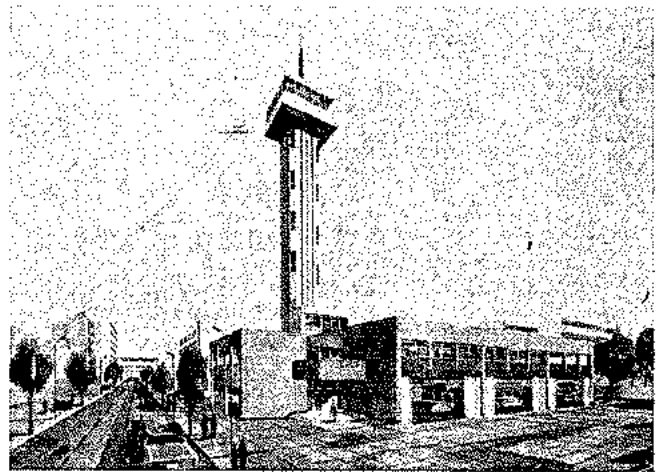
단면도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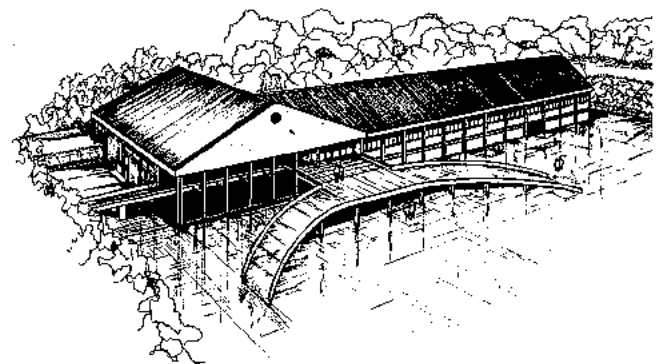
금풍개발사옥
韓昌鎭 (한정건축)



소방서
金大植 (김건축연구소)



주 택
洪淳寅 (대우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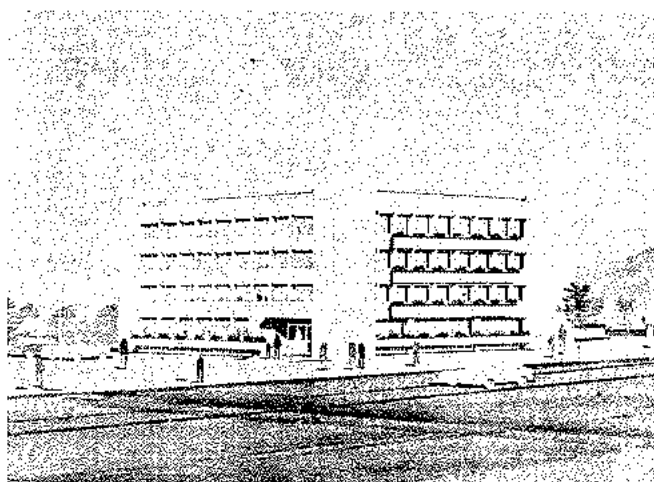
남해화학 Club House
金鳳善 (유일종합설계사무소)



주 택
朴東熙 (동신종합설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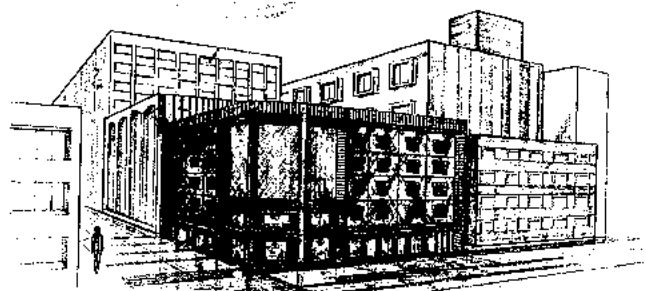


주 택
孟星宇 (성우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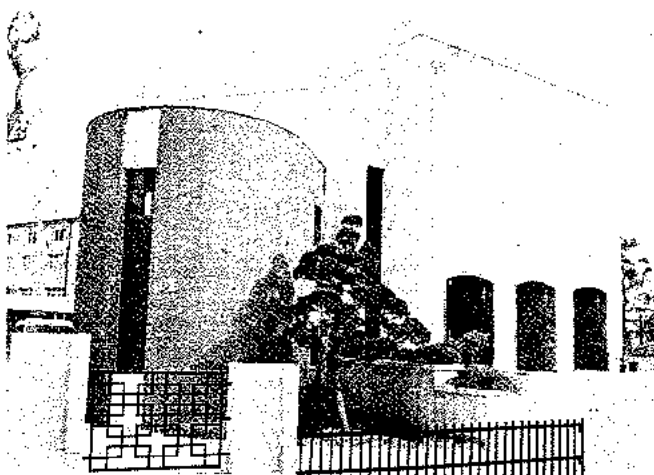
청구병원

都聖萬 (삼성합동 성만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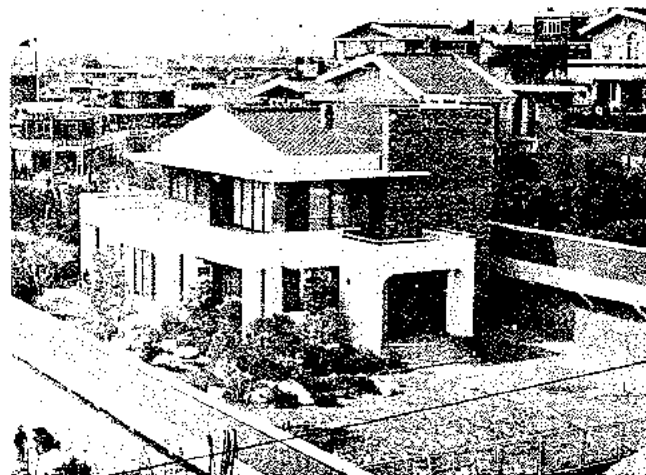
웅전빌딩

趙聖萬 (가야종합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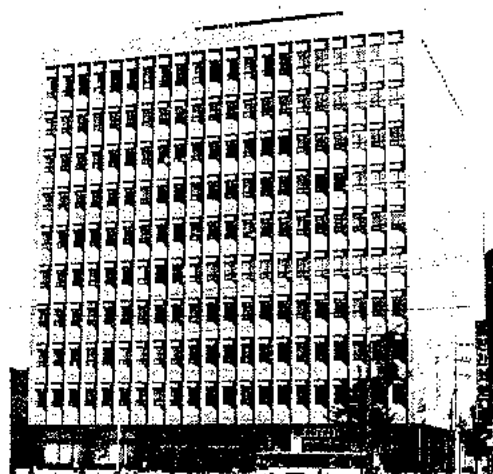
청파동교회

李喜泰 (영·이건축)



주택

金寅培 (강희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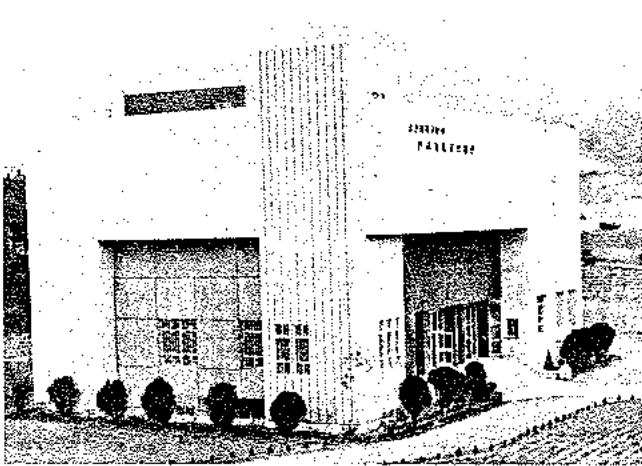
태평양화학 본사

金奉勲 (신신건축연구소)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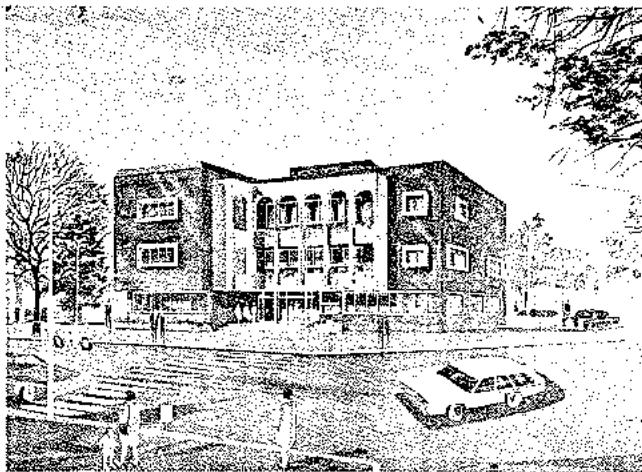
權泰植 (합동건축공사)



승전대학교 기독교박물관
金寬豊 (김관풍건축연구실)



주택
俞景哲 (삼육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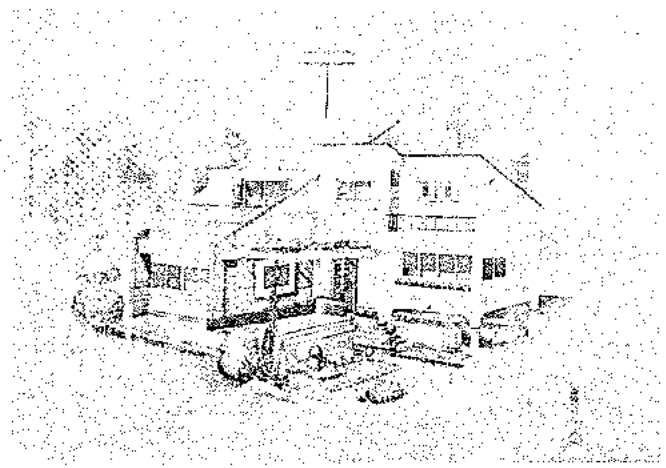
W시 문화방송국
安將元 (신아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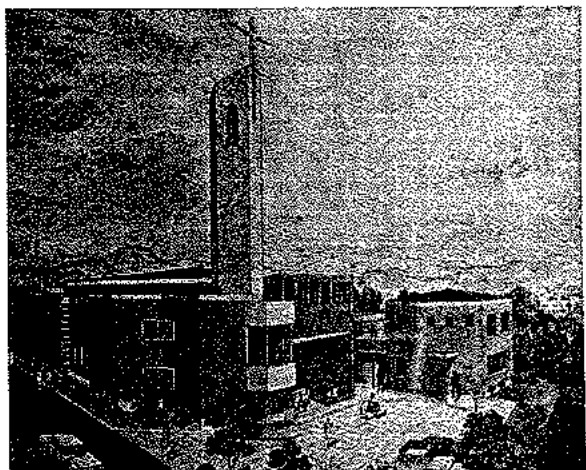
주택
曹龜鉉 (조구현건축설계사무소)



치과 및 주택
公日坤 (공일곤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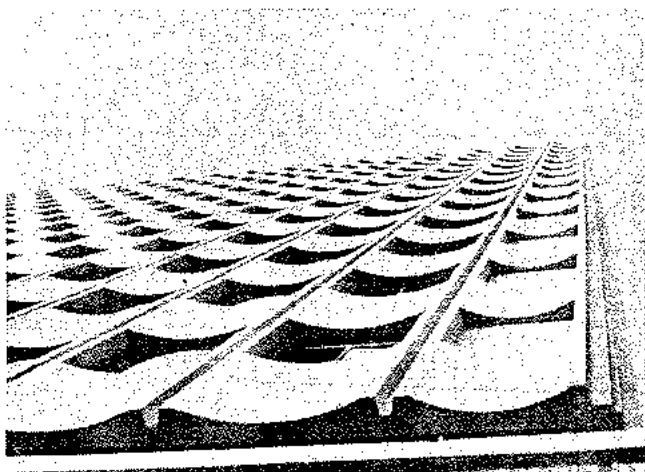
주택
裴東權 (신성건축설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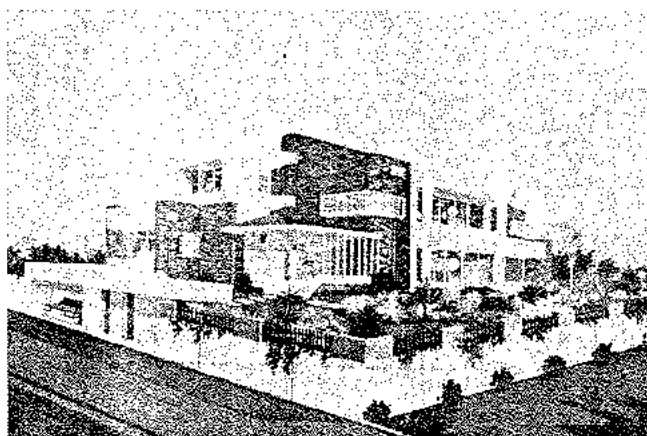
베다니교회
安日成 (극동설계사)



보함교회
朴商浩 (석림건축설계조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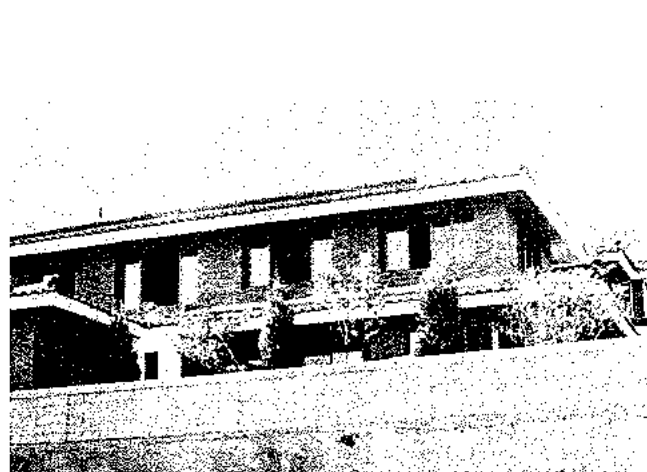
한국화재보험
朴運旭 (신원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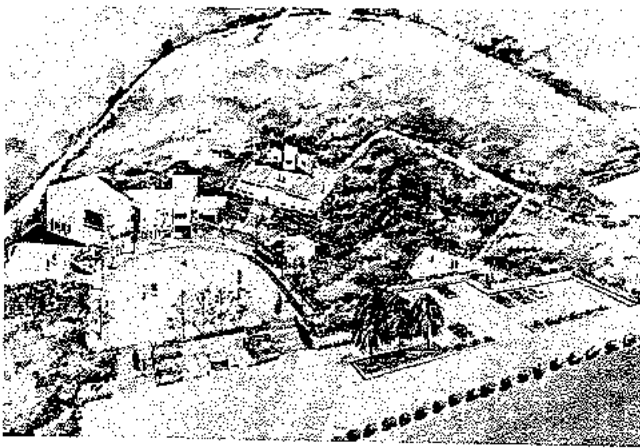
주 택
韓琬洙 (진양종합기술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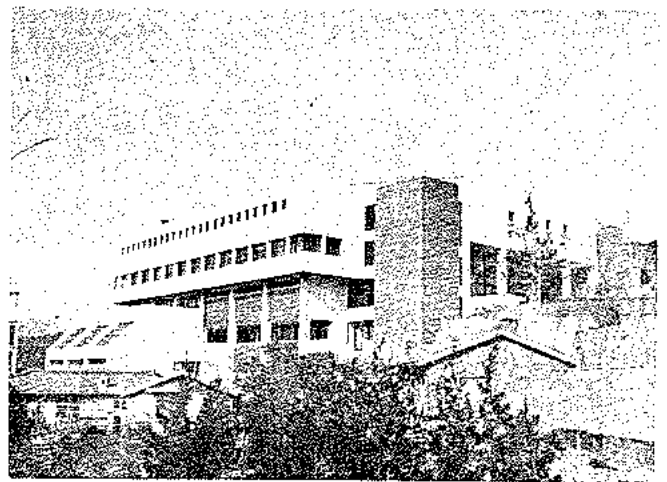
주 택
洪哲洙 (한국건축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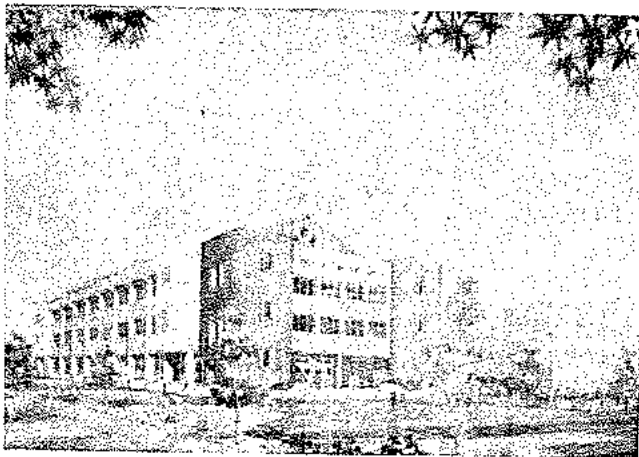
주 택
李廷仁 (삼협건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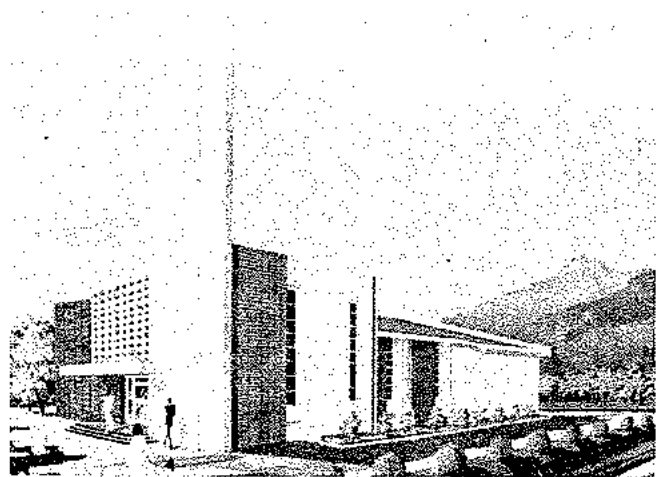
왜관지구전적지 개발계획
李丞雨 (종합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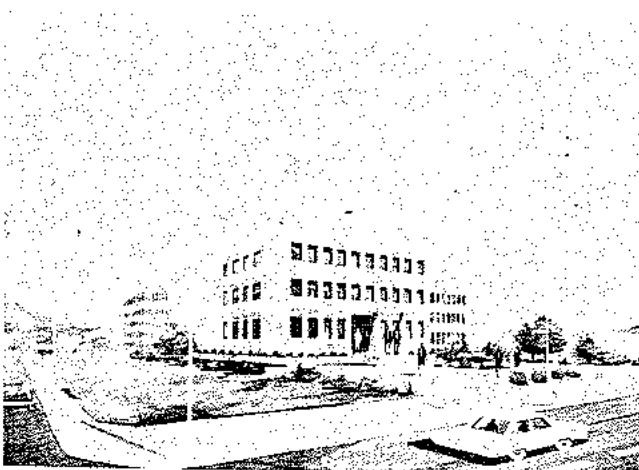
단국대학교 체육관
金仁錫 (우신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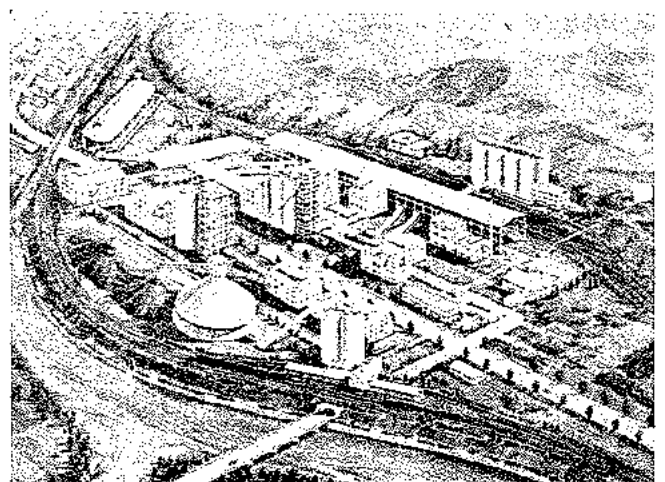
수봉 체육관
鄭祥鳳 (신진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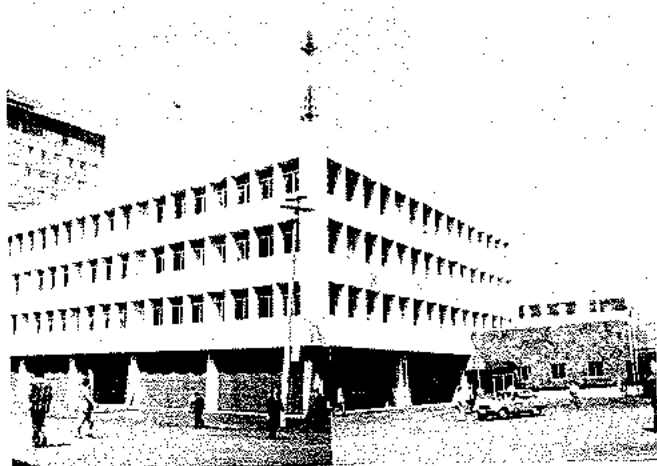
선일감리교회
尹鳳源 (원경사건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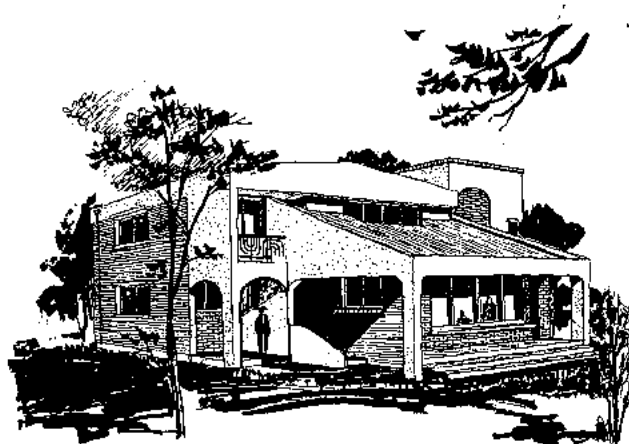
필리핀대사관
朱漢烈 (공익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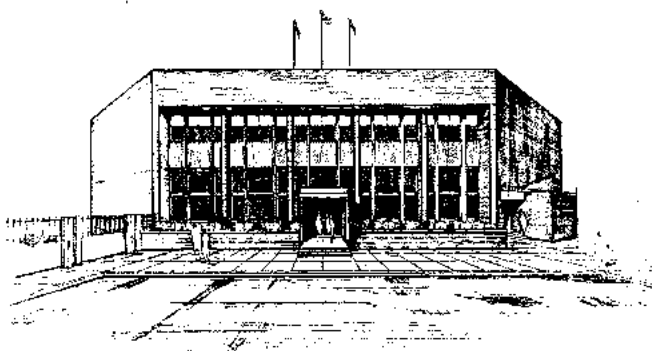
한일시멘트공업 단양공장
李祖源 (세기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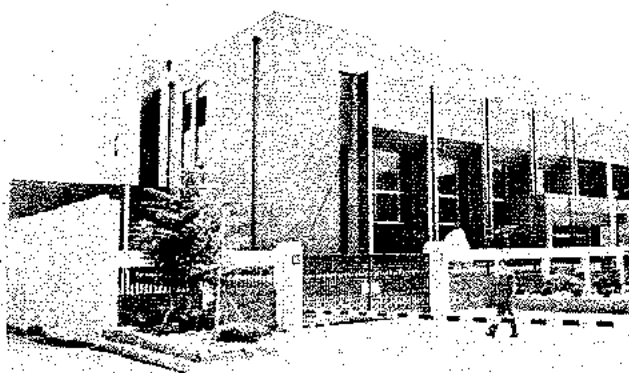
중부소방서
朴南俊 (삼원건축)



주 택
宋基成 (범한건축송기성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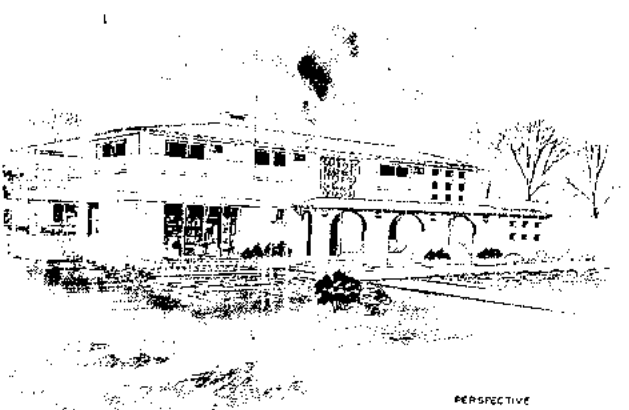
한일은행 포항지점
金枝泰 (삼아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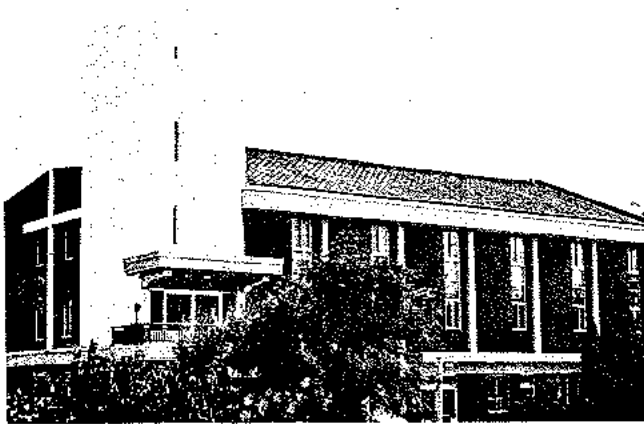
한국은행 마산지점
金正澈 (정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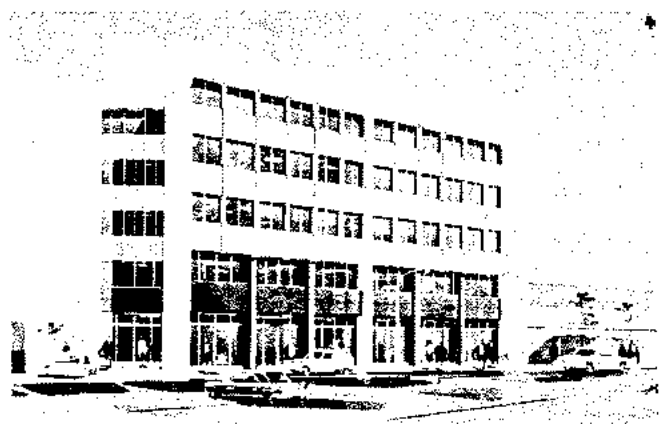
주 택
金寬旭 (대호건축연구소)



주 택
柳承根 (신건축종합연구소)



청량리제일안식교회
成河哲 (명성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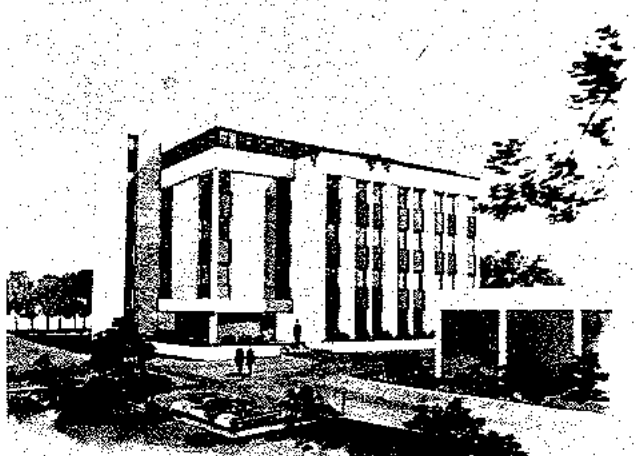
한국특수공업사옥
徐忠錫 (이화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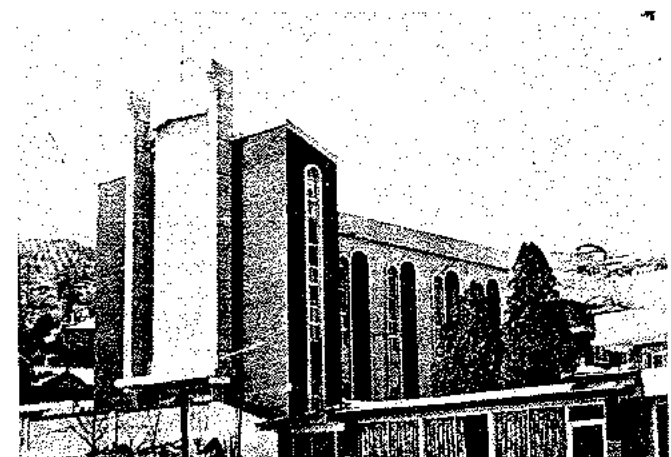
한국전기안전공사본사사옥
金學錫 (서울종합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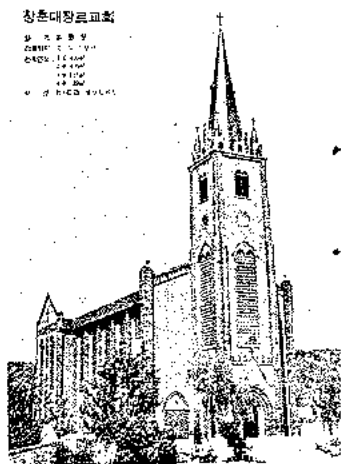
시흥군청사
朴成圭 (함성건축기술공사)



두산산업김포연구소
朱寧伯 (강동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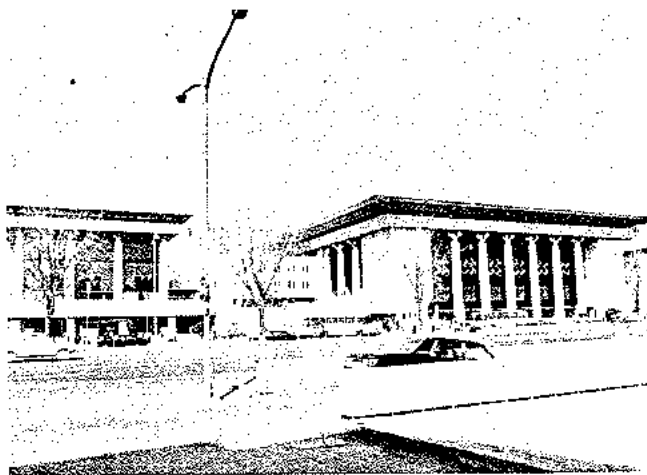
흑석동장로교회
宋長福 (삼일종합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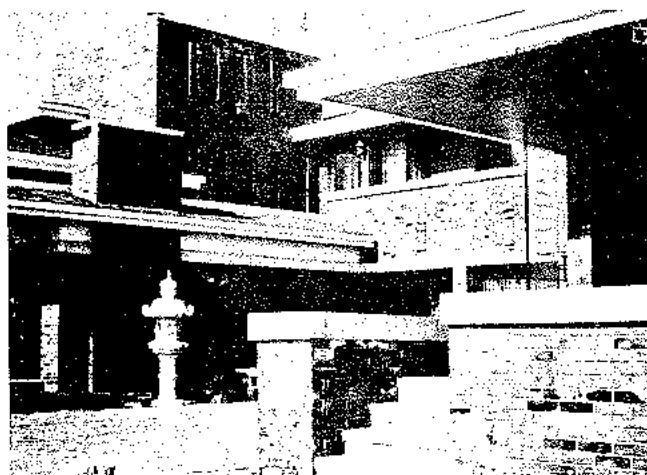
창훈대장로교회
孫 中 模 (부천지구건축사합동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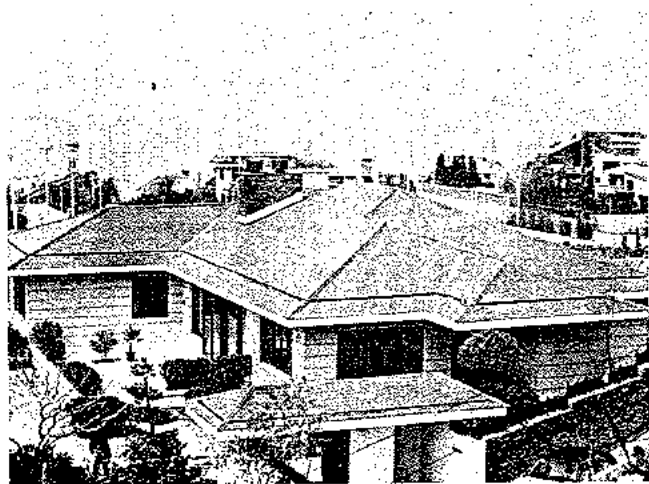
주 택
金 學 信 (성신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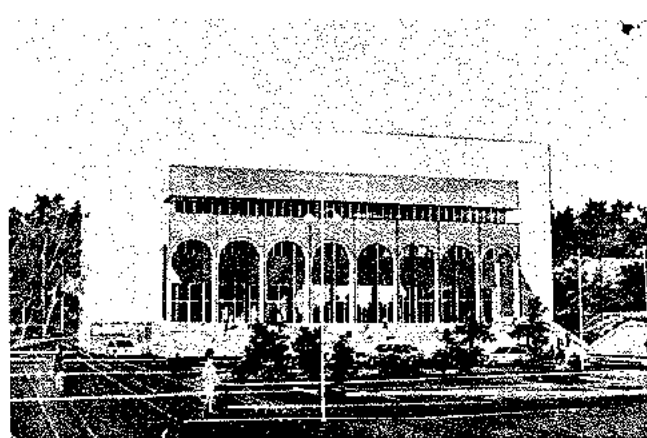
세종문화회관
嚴 德 紋 (엄이전건축연구소)



주 택
黃 一 仁 (전원사건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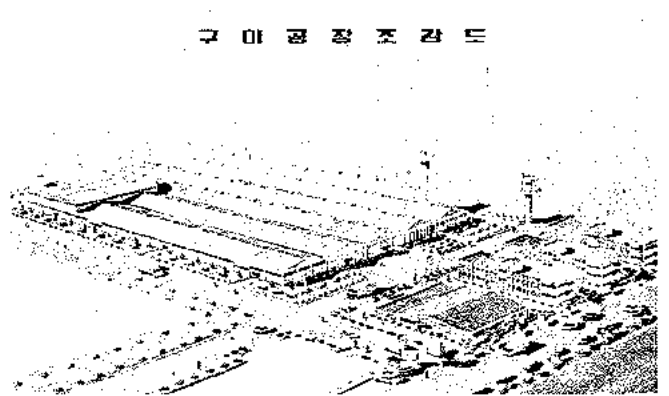
주 택
姜 純 一 (필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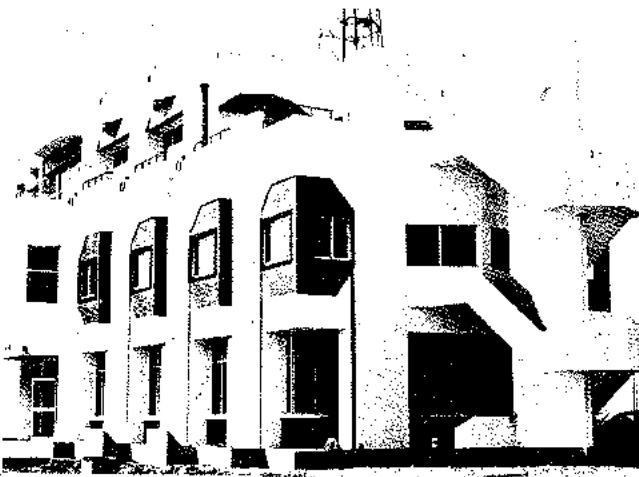
수도여자사범대학대강당
金 忠 得 (구리사건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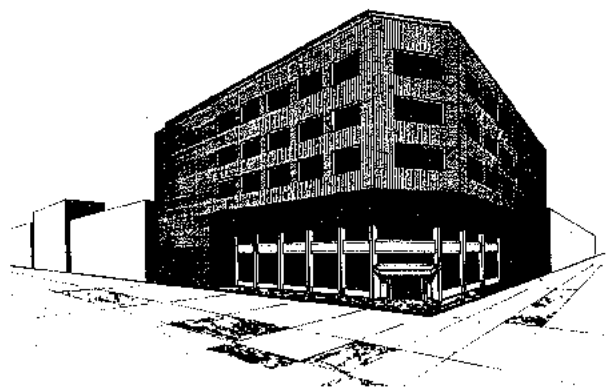
주 택
金寅培 (강희설계)



서통전기선파워건전지공장
金大魯 (한일건축기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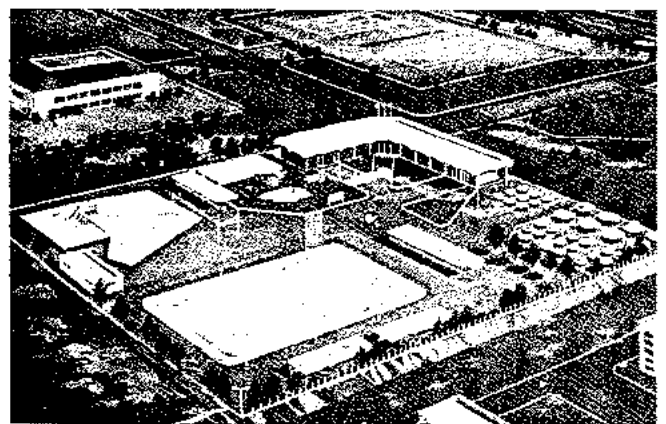
경기반공회관
洪哲洙 (한국건축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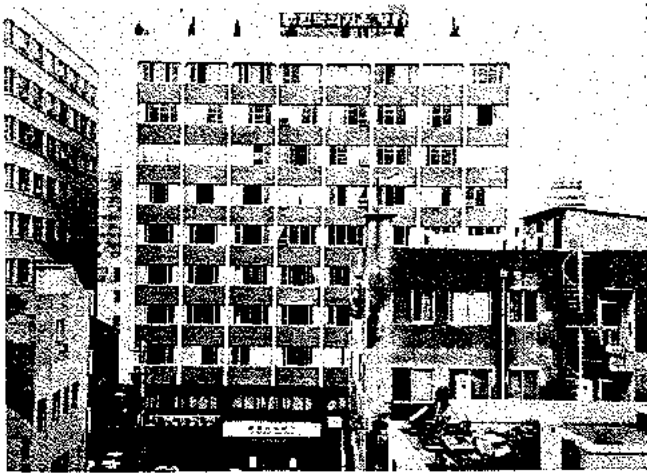
리도백화점
朴吉南 (태아건축설계사무소)



코리아스파이서본사
金東淑 (주일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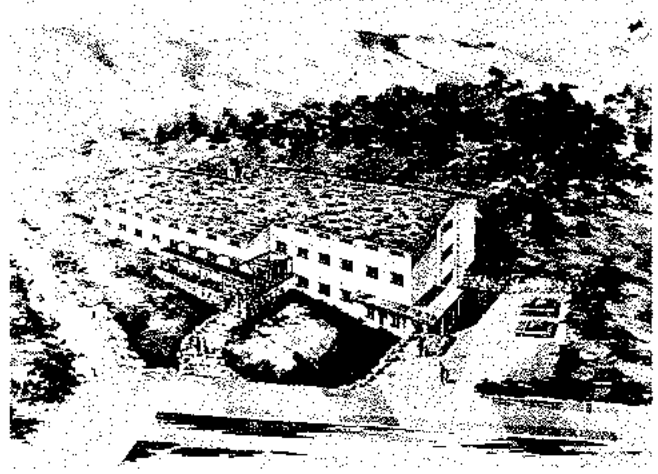


구미공업기지옥외수영장
梁英浩 (정학건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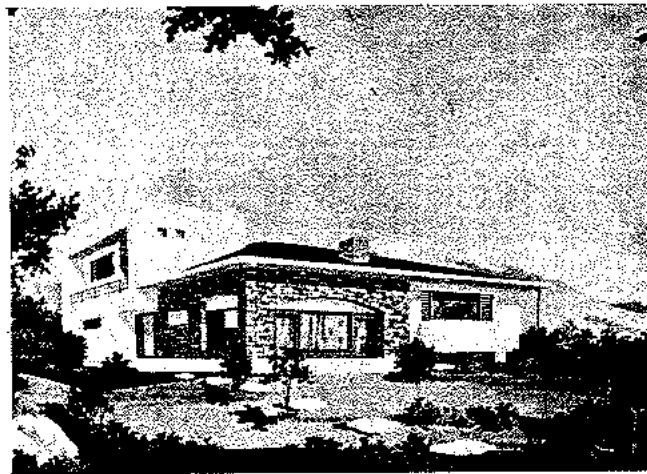
천수빌딩

車東明 (차건축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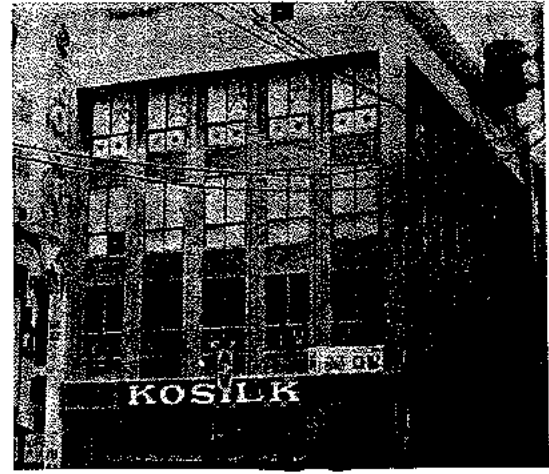
설악동호스텔

朴康平 (상아건축연구소)



주택

韓珖洙 (진양종합기술설계사무소)



코실크빌딩

趙成萬 (가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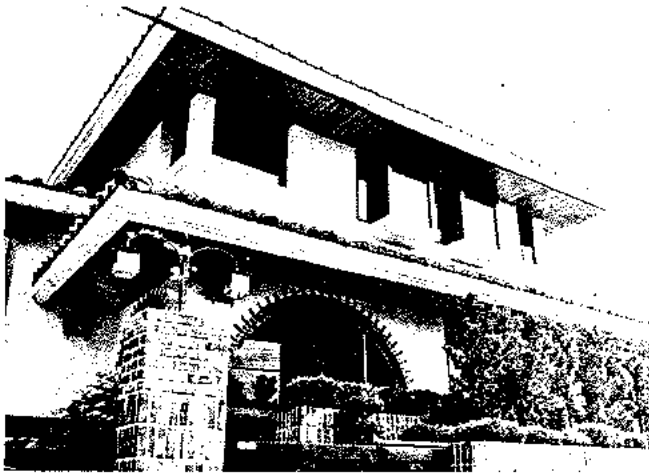
주택

李康植 (완중합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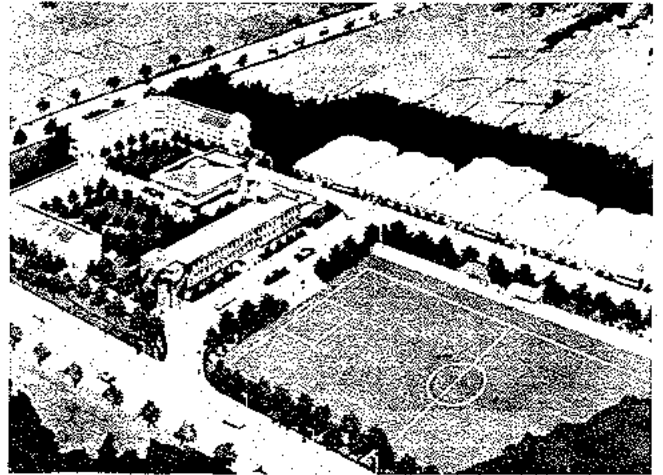
학산기술도서관

朴商浩 (석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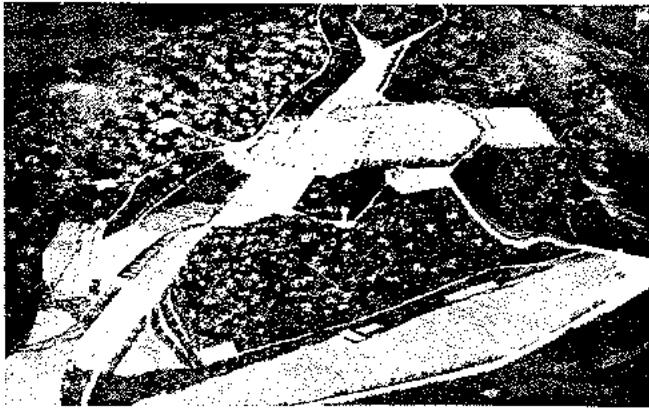
주 택

金 琪 碩 (아람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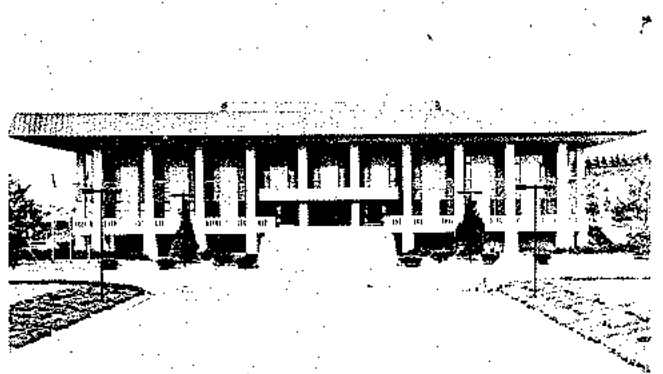
건설직업훈련원

宋 基 德 (정일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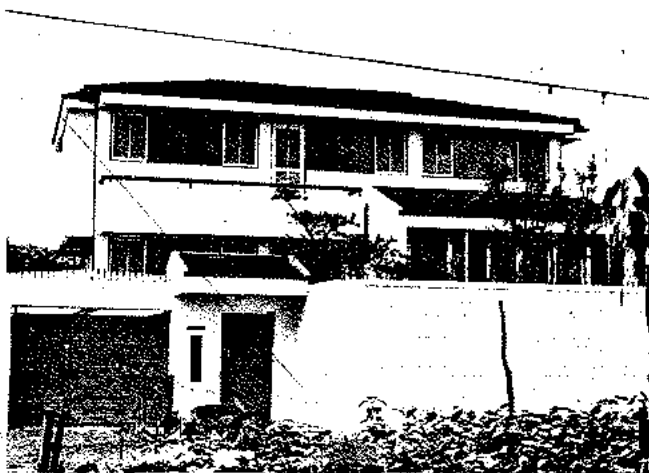
올림포스관광유원지

李 廷 仁 (삼협건축공사)



부산시립박물관

李 喜 泰 (엄·이건축연구소)



주 택

張 宗 律 (건우사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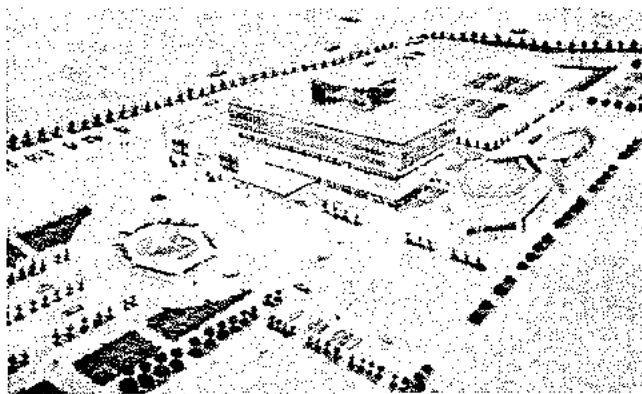


주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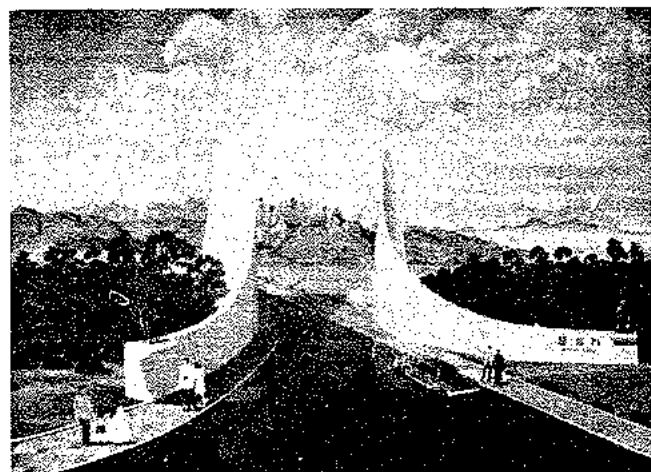
鄭 昭 (홍진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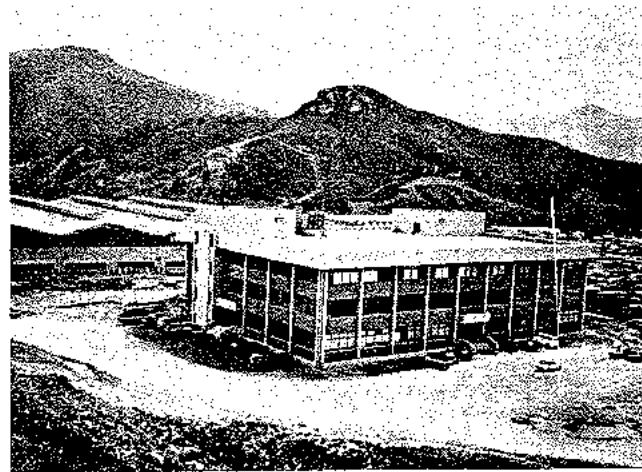
주택
張民秀 (지구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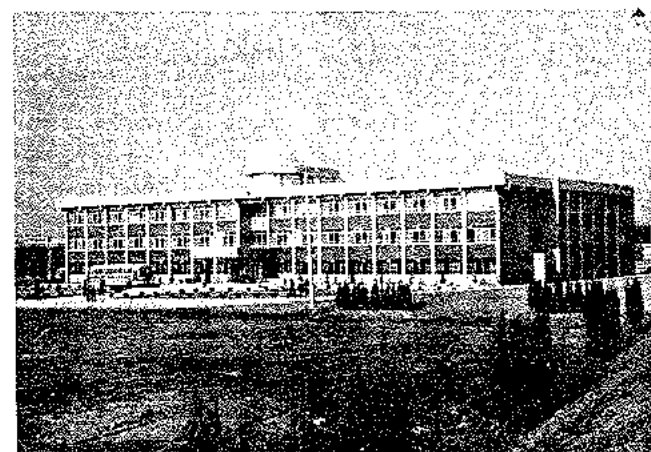
구미시청사계획안
金仁鎬 (대아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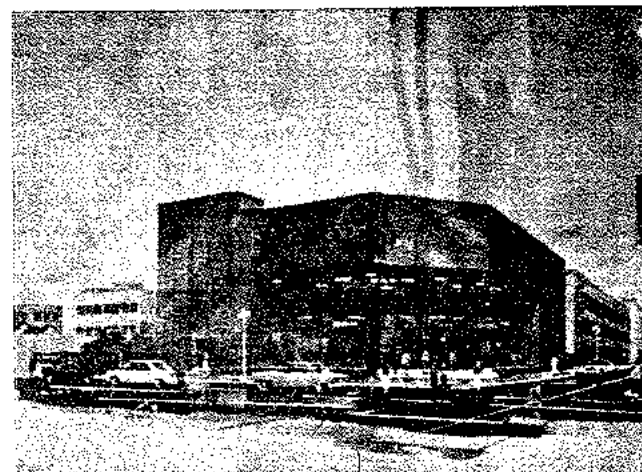
설악문
金寅培 (강희설계)



식당
金英基 (한라건축)



전북대학교과학관
車東明 (차건축)



은행
柳承根 (신건축연구소)

建築行政相談

서울지부편

1978년 8월 16일

상담요지:

1. 시민

영동지역내 상업지역인데 도로폭이 4m입니다. 병원을 3층정도 지으려고 하는데 주차설비에 대하여(주차장정비지구임)

2. 회원

아파트지구인데 대지 200평정도 입니다. 여기에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3. 회원

아파트의 전폐율은?

4. 회원

아파트의 인동간격은?

5. 시민

상업지역의 전폐율은?

6. 시민

3평 미만 증축할 경우 허가는?

7. 회원

연립주택의 전폐율은?

8. 회원

연립주택의 전폐율과 용적율

9. 회원

아파트, 상가를 한동의 건물에 건축 가능한지요?

10. 회원

건축물 건축 억제방침이 언제부터 풀리게 되는지요?

답변내용:

1. 연면적 1,000㎡ 이상이 아니면 지장이 없는데 권장사항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상으로는 옥내 150㎡ 옥외는 200㎡ 당 1대입니다.

연면적이 750㎡이므로 최저 4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행주차로 하면 1대당 2.5×7.5(㎡)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4m도로는 1M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간주하여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아파트 지구내에서 병원건축은 불가합니다.

아파트와 이에 부속되는 일용품 점포등은 단지내에 가능합니다.

3. 18~20% 임.

4. 높이의 1.2배 이상.

5. 서울시에서 50%로 규제함.

6. 1차에 한하여 1층에 증축하려고 한다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7. 전폐율 40% 임.

8. 전폐율 400%,
용적율 100%입니다.

9. 복합건물은 허가 안됨.

10. 현재상황에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상담요지 :

1. 시민
2층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연립주택 건축 가능한지요?
2. 회원
주택건축할 시 최대의 허용면적은?
3. 회원
주택인데 지하실도 주택채권을 사야 하는지.....
4. 회원
예치금에 대해서
지하실의 면적분에 대해서도 예치를 해야 하는지요?
5. 회원
증축 33m²가 되었는데 예치는?
6. 시민
주택인데 지하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9m²). 허가 받아야 하는지요
7. 회원
연립주택의 전폐율과 용적율은?
8. 시민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인데 처마끝에서 대지 경계 선까지의 거리는?
9. 회원
공장건축에서 植樹관계는?
10. 시민
풍치지구내의 높이제한은?

답변내용 :

1. 연립주택이란 2층이하로 된 연립된 주택을 말하는데 2종미관지구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해야 하므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2. 지상 40평 이상은 규제하므로 그 이하로 하여야 함.
3. 주택의 경우 지하실은 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4. 예치금 계산시 지하실면적도 포함됩니다.
5. 30m² 이상의 증축은 예치하셔야 함.
6. 지하실은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7. 전폐율 40% 용적율 100% 임.
8. 1m 이상 띄우시면 됩니다.
9. 대지면적의 15% 이상 설치해야 함.
10. 8m 이내로 건축하여야 함.

상담요지 :

1. 시민
건축물 유지관리 보고에 있어서 준공필증이 분실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2. 회원
공장내 고가수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3. 시민
2종미관지구내 3층건물인데 기존 목조바닥을 Slab로 수선하려고 합니다. 허가여부?

답변내용 :

1. 가옥대장을 첨부하면 가능함.
2. 일반건물과 동일하게 서류를 작성하되 다만 신청서 양식이 다릅니다.
즉, 공장물 설치허가 신청서의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바닥구조변경이며 또한 대수선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2종 미관지구는 본청에서 취급합니다.

4. 시민 지붕이 스테트인데 낡아서 비가 셉니다. 스테트를 갈아끼우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4. 지붕의 대들보 변경없이 다만 스테트를 갈아끼우는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됨.
회원 5. APT의 인동간의 거리는?	5. 높이의 1.2 배를 합니다.
6. 회원 연립주택 인동간 거리?	6. APT와 같이 높이의 1.2배임.
7. 회원 상업지역의 전폐율은?	7. 서울시에서 50%로 규제하고 있음.
8. 회원 APT의 전폐율은?	8. 18~20% 임.
9. 시민 2종미관지구인데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9. 시청에서 심의함.
10. 시민 용도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0. 신청서 변경전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가 필요함.
11.	11.

1978년 8월 21일

상담요지:	답변내용:
1. 시민 공작물 허가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1. 협회 경유하여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세요.
2. 시민 공작물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2. 건축허가서 제출서류와 같습니다.
3. 회원 1, 2층은 상가 3층 이상은 APT로 허가 가능한지요.	3. 복합건물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4. 회원 연립주택 50세대 이상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4. 시청에서 심의합니다.
5. 회원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5. 시행령 22조의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는 200m ² 당 1 대꼴 옥내는 150m ² 당 1 대꼴로 설치하면 됨.
6. 회원 연립주택의 인동간격은?	6. 연립주택의 경우는 APT에 준해야 합니다. 인동간격은 높이의 1.2배 입니다.
7. 시민 주택 40평이상 규제가 언제 풀립니까?	7. 아직 공고된 것이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8. 회원 아파트를 1층에는 상가로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8. 상가와 아파트 즉 복합된 용도의 건물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9. 시민

주택건축시 소정거리는?

9. 건물의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 높이의 $\frac{1}{2}$ 을 빼고 8m 이하인 때는 $\frac{1}{4}$ 을 남북으로 떼어야 합니다. 동서쪽으로는 처마끝으로부터 30cm 외벽으로부터 50m 후퇴해야 합니다.

1978년 8월 22일

상담요지:

1. 시민

현 기존건물이 38평인데 증축하려고 합니다. 증축할 수 있는 한도는?

2. 회원

건축사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는지요?

3. 회원

APT의 인동간 거리는?

4. 시민

연립주택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5. 시민

풍치지구에서 건물의 최고 높이는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6. 시민

주차장의 주차 1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7. 회원

APT의 전폐율은?

8. 시민

건축사 시험일자 결정되었는지요?

9. 회원

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 옥외의 주차장 비율은?

10. 회원

풍치지구의 전폐율은?

11. 회원

풍치지구내 용적율은?

답변내용:

1. 기존건물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3.8평 까지 가능합니다.

2. 아직 안되었습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10월 6일 공포되었음)

3. APT는 높이의 1.2배 입니다.

4. 1000m² 이상이어야 하나 1000m² 미만이라도 시청의 심의를 득하면 가능합니다.

5. 8m 미만이라야 함.

6. 2.5m×6.0m(직각주차)가 필요함.

7. 18~20% 임.

8.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9. 건물연면적 10,000m² 이상인 때 50% 이상, 10,000m² 이하인 경우 20% 이상의 옥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10. 풍치지구의 전폐율은 $\frac{2}{10}$ 이며 풍치지구 지정이전에 분할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전폐율을 적용 시킵니다.

- 토지면적중 300m²까지의 전폐율은 $\frac{4}{10}$
- 3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중 200m²까지의 전폐율은 $\frac{2}{10}$
- 위의 500m²를 초과하는 부분의 전폐율은 $\frac{1}{10}$ 을 적용 시킴.

11. 일반적으로 6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토지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8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요지:

1. 회원
풍치지구에 있어서 건물의 규모는?
2. 회원
풍치지구내에서 1층 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에서 되는 거리는?
3. 회원
아파트의 전폐율에 대하여.
4. 회원
연립주택의 용적율은?
5. 시민
착공신고서 제출시 건축사 협회를 경유해야만 합니까?
6. 회원
구가 서로 다른데 인접해 있는 경우 연서 가능한지요
7. 회원
라멘조로 건축중인 건물을 설계 변경하여 조적조의 증축부분이 생기는 경우 설계비 계산은?
8. 회원
일단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물 설계시 설계비의 계산은?
9. 회원
풍치지구내 500m²인대 전폐율은? (지구지정 이전에 분할된 것임)
10. 회원
주택 40평이상 규제한다는 것이 언제나 풀리는지요?
11. 시민
건축사가 조경설계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1. 3층 이상의 각종의 바닥 면적은 2,000m²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면적이 60m² 이하인 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선으로부터 2.5m, 양측면 경계선으로부터 1.5m; 후면 경계선으로부터 1.5m 띄어야 함.
3. 18~20%입니다.
4. 100%입니다.
5. 협회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인접관할 구역은 연서 가능함.
7. 라멘조부분과 조적조부분을 각각 적용계산하세요.
8. 감동에 대하여 설계비를 계산하여 합한것이 전체설계비가 됩니다.
9. 300m²까지 $\frac{4}{10}$ 300m² 넘는 것 부터 500m²까지 $\frac{2}{10}$ 의 전폐율을 적용합니다.
10. 현재 공고된 것 없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11. 할수있습니다.
건축사의 업무 제 5종에 속합니다.

1. 회원
일종미관내지구(롯데호텔앞) 기존건물 5층이 있는데(대지80평)증축 가능여부(재개발지구인데 폐지되었다함)
2. 시민
지하실이 50평이고 지상이 40평이면 허가 가능한지요
3. 시민

1. 재개발이 해제되었다 해도 1종 미관지구의 최소대지 면적 및 건물폭이 부족하고 특히 증축에 필요한 설비(주차 장 등)의 문제로 불가한 것 같습니다.
2. 지하실을 제외한 40평 미만이므로 가함.
3. 대지로 보아야 합니다.

위의 폭 1.5m 통로를 대지로 보는지 사도로 보는지요?

4. 시민

주택 40평 이상 규제가 언제 풀리는지요?

5. 시민

주택의 지하실 면적에 대해서 설계나 예치를 해야 하는지요?

6. 시민

풍치지구에서 용적율은?

7. 회원

연립주택의 인동간격은?

8. 시민

대지증명에 공용의 청사라고 도장이 찍혔는데 무슨 말인지요.

9. 시민

시민회관 맞은 편 쪽의 대지인데 대지증명에 주차장 정비지구라는 말은 없던데 주차장 설치 안해도 되는지요?

4. 아직 알 수 없습니다.

5. 지하실 면적에 대해서도 예치합니다.

6. 60% 임.

토지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80%까지 가능함.

7. APT에 준하여야 함.

8. 청사를 지을 후보지역을 뜻함.

9. 서울시 전역이 주차장 정비지역이므로 주차장은 필수로 설치해야 함.

1978년 8월 25일

심담요지:

답변내용:

1. 시민

건축사법 시행령이 언제 공포됐는지요.

1.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2. 시민

대지 150평 대지폭 23m인데 $\frac{1}{2}$ 로 분할가능여부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주거지역)

2. 가능함.

3. 회원

풍치지구의 전폐율에 대해서?

3. 풍치지구의 전폐율은 $\frac{2}{10}$ 이며 풍치지구 지정 이전에 분할된 경우 아래와 같은 전폐율을 적용함.

- 300m² 까지 $\frac{4}{10}$
- 301~500m² $\frac{2}{10}$
- 500m² 초과 될 경우 $\frac{1}{10}$

1979년 9월 1일 (금)요일	서울시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건축사 :
상담요지 : 1. 회원 APT의 용적율은? 2. 회원 제5종 미관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화는? 3. 회원 증축 설계변경시 예치는? 4. 시민 연립주택의 전폐율은? 5. 시민 연립주택의 인동간격은? 6. 회원 주거전용지역의 전폐율은? 7. 시민 강북의 상업지구인데 전폐율과 용적율은? 8. 시민 주거지역에서 3층 점포인 경우 진북방향 떠는 거리는? 9. 시민 주택 신축한 것을 샀는데 구청에서 지하실의 허가보다 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 1. 200%입니다. 2. 250m²입니다. 3. 30m² 이상이면 예치해야 함. 4. 40%입니다. 5. 높이의 1.2배입니다. 6. 40%입니다. 7. 전폐율 50% 용적율 900%입니다. 8. 8m이상의 높이이므로 높이의 $\frac{1}{2}$ 이상 떠어야 합니다. 9. 시공자와 건축사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1978년 9월 4일 (월)요일	서울시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건축사 :
상담요지 : 1. 인접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일부 철거되고 잔여 건물을 무허가로 개축하는데 대지 일부를 무단 굴토하므로 인접지 기존건물이 위험하므로 시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2. 건설부장관의 방송에 의하면 연립주택이 4층까지 인정한다는데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지요. 3. 연립주택을 건축허가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시 2M이상 떠우라고 하는데 1M정도 소정거리를 두고 허가할수 없는지요.	답변내용 : 1. 무허가로 건물을 개축하는 것은 위법 사항으로 해당 동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시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서울시에서는 2층까지만 연립주택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판제법이 개정되어 4층까지 인정 될때 시행 될것입니다. 1.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진북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frac{1}{4}$ 즉 6M 높이에 1.5M 떠우도록 되었으나 인접지 일조권 등을 고려 2M이상 두도록 건축심의회가 되었으면 심의내용대로 허가하여 시공하여야 함.

4. 주거지역내 종합병원을 건축하고자 하는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4. 서울시내는 전부 주차장 정비 지구로써 연면적 1,000M² 이상일때는 연면적 200M² 마다 12대의 비율이고 옥내는 150M² 마다 1대의 비율로 주차장을 통로를 제외하고 설치하여야 함.

5. 시민
건축사 시험이 언제 있습니까?

5. 아직 알수 없습니다.

6. 시민
착공신고서 협회 경유해야 하는지요.

6. 협회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시민
주택 40평 이상 역제가 언제 풀리는지요?

7. 현재 알수 없습니다.

8. 시민
풍치지구에서 주택 건축시 건축선에서 띄는 거리는?

8. 건축선으로부터 1층의 경우 2.5m 이상 띄어야 함

1978년 9월 5일 (화)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서울시:
건축사:

상담요지:

답변내용:

1. 시민
상업지역내 건폐율은?

1. 서울시의 조례상의 경우 60%인데 실제허가 하는것은 50%까지하여 줍니다.

2. 시민
도시계획법 개정된것은 어디서 구입할수 있습니까?

2. 서점에 가서서 건설관계 서적중(건축법 해설집등)에 부록으로 되어 있어오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있는 매지인데 어느 지역에 저촉시켜야 하는지요.

2.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중 어느쪽이 많은지 모르나 상업지역에 많이 걸쳐 있다면 상업지역에 저촉을 받아야 합니다.

4. 지상권 설정시 건축허가는?

4. 지상권 설정시 지상권자의 동의서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시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있는 매지인데 어느 지역에 저촉시켜야 하는지?

5.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중 어느쪽이 많은지 모르나 상업지역에 많이 걸쳐있으면 상업지역에 저촉을 받아야 합니다.

6. 시민
점포로 되어있는데 대중음식점으로 변경코져 하는데 건물을 시공 준공된 후의 경우

6. 당초 허가를 낼 당시 건축사의 동의 없어도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7. 회원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에 허가 규제 관계는?

7. 도시계획구역 및 국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과 취락지구 구역내의 건축물과 100m² 이상의 특수건축물은 허가 대상 됩니다.

1978년 9월 6일 (수)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서울시:
건축사:

상담요지:

답변내용:

1. 회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 건축 가능한지?

1. 가능함.

2. 회원 연립주택 400평인 경우 주차장 설치 관계는?	2. 주차장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옥내 옥외 설치 평수에 준하여야 함.
3. 회원 용도변경시에도 예치해야 하는지요?	3. 공사비로 계산하여 예치해야 함.
4. 회원 상업지역의 전폐율은?	4. 50%입니다.
5. 시민 풍치자구의 높이 제한은?	5. 8m 미만이어야 함.
1978년 9월 7일 (목)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서울시: 건축사:
상담요지:	답변내용:
1. 시민 한 대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각각 걸쳐있는 경우 어느 지역의 저축을 받아야 하는지요?	1. 많은 면적을 차지한 지역의 저축을 받음.
2. 회원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 건축 가능한지요?	2. 가능합니다.
3. 철로 주변의 대지인데 건축 가능 한지요?	3. 철도청과 협의 후 건축허가 가능함.
4. 신촌부근 50평 미만인데 건축 가능한지요 ?	4. 관할 구청의 행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5. 회원 풍치지구 800m ² 정도인데 전폐율은?	5. 20%입니다.
6. 회원 용도변경할때 예치금 계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6. 공사비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합니다.
7. 시민 주택 40평이상 규제한다고 하는데 지하실 포함 하여 40평인지요?	7. 지상건물만 40평입니다. 단 지하실 면적은 제외합니다.
8. 시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인데 대지 면적의 초소한도는?	8. 법상90m ² 이상임.
9. 시민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9. 벽, 기둥 기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바닥 면적으로 봅니다.

1978년 9월 8일 (금)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주소 성명	서울시: 건축사:
상담요지:	답변내용:
1. 회원 지하실에 기계설비를 하였을 경우 지하실 면적은?	1. 지하실의 냉, 난방, 기계설비 시설은 지하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회원	2. 가능함.
미계획지구이며 주거지역인 경우 국민학교, 중학교의 건축허가 가능한지?	
3. 회원	3. 6층이상인 경우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거실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는 1대 설치하면 됩니다.
학원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는 몇 평이상에 필요한 지요?	
4. 회원	4. 옥내 150㎡ 당 1대, 옥외 200㎡ 당 1대씩 선정하여야 함.
상업지역에서 주차장의 설치시 옥내외의 구분은?	
5. 회원	5.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함.
5층건물에서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지?	
6. 회원	6. 900%입니다.
상업지역의 용적율은? (강북)	
7. 회원	7. $\frac{H-12}{40} + 0.5m$ 만큼 피우십시오.
상업지역에서 소정거리중 기타 방향에서 피는 거리는?	※ 높이 12m 가 넘을 경우
8. 시민	8. 높이 8m 미만이어야 함.
주거전용지역에서 건물의 높이 제한은?	
9. 회원	9. 지부경유해야 합니다.
지방 허가 도시인데 설계변경하여 증축하려고 하는데 지부경유해야 하는지요?	

1978년 9월 11일 (월)요일	서울시 : 건축사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구분하여야 되는 대상은?	1. 서울시 주차장 정비지구 조례에 의하여 주차장면적 (주차면적+통로면적 포함)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야 함.
옥외 주차장의 경우 출구와 입구 분리문제는?	출구와 입구의 분리문제는 주차장의 기능성 문제 및 유사시 피난문제로 인하여 분리토록 한 것이므로 옥내주차장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옥외주차장의 경우 입구 출구 분리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나 옥내주차장의 출입구와의 연관 관계상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할것임.
도로에서 각차량의 주차를 위하여 진입할수 있는지?	법상제한은 없으나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도로 기능에의 저해문제 때문에 출·입구를 극소화로 제한하도록 시청건축위원회에서 제한하고 있음.
2. 대지 500평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건축제한 내용은?	2. 전폐율 40%, 용적율은 100% (보통 90%선에서 건축이 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시 행정지도하고 있음) 인동간격 높이의 1.0m (건축위원회 심의시 1.2배 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심의는 본청심의를 거쳐 구청에서 허가함.

3. 도시계획 확인원에 “풍치지구 미지적고시”라고 적혀 나오는데 풍치지구가 아니란 뜻인지?

4. 학교로 시설 결정 이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허가를 받고 대지조성공사중인바 건축허가의 신청이 가능한지?

5. 경부고속도로변에 건축하고자하는데 건축제한선이 있다고 들었다. 내용은?

6. 자연 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이 가능한지?

3. 도시계획법상 지구의 결정은 ① 결정고시와 ② 지적고시의 두절차가 있는데 이경우는 결정 고시는 되었었고 지적을 고시 안하였다는 뜻으로 지적 고시는 안되었지만 결정고시 했으므로 풍치지구의 건축제한 대상임.

4.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함.

5. 경부고속 도로변은 도로중심선에서 50m 까지 시설 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곳은 건축이 불가함.
서울시는 장래계획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 녹지선에서 10m 정도로 더 물려 건축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6. 용도제한상 가능하나 허용용적율이 20% 이내이므로 연립주택 건축이 부적당한 지역임.

1978년 9월 12일 (화)요일
상답자주소, 신청자성명

서울시
건축사: :

상담요지:

답변내용:

1. 시민

일단의 택지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될 지역으로 지우는 대지로 되어 있으나 동 매지내 수목등 암반 등으로 되어있어 평지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득할수 있는지?

1. 일단의 택지 사업을 준공하여 완료된 매지인 경우 본 매지내 수목을 벌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을 살려 허가를 득하면 시공하실 수 있으므로 허가는 가능합니다.

2. 시민

기존 건물이 있는데 지하실을 증축코저 하는데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2. 순수지하실 증축인 경우 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시민

주택을 75년도 시공하여 그 당시 60%로 허가를 득하여 합법적으로 시공하여 준공을 받았는데 그 위 2층을 증축코저 하는데 증축이 가능 합니까?

3. 구법에 합법적으로 되었을 경우 새로 증축되는 경우를 새로 증축되는 경우는 신법에 적합하도록 증축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건축자재 파동으로 인하여 기존 면적의 40% 이상 증축될 경우 $\frac{1}{10}$ 이상은 현재 증축이 불가 합니다.

4. 시민

건물의 외부가 미관상 불결하여 타일등 단장 하려고 하는데 임의로 할수 있는지요?

4. 미관지구인 경우는 미관지구의 심의를 받고 하셔야 합니다.

1978년 9월 13일 (水)요일
상답자주소, 신청자성명

서울시:
건축사:

상담요지:

답변내용:

1. 의원건축허가 수속을 하고자 하는바 일반 건축허가

1. 일반 건축허가수속과 같으며 참고로 건축주가 의사

수속과 같은지요.

2. 주택점포 신축을 건축규제 이전에 허가를 득하여 완공단계인바 2층 일부 주택부분을 점포로 용의변경(설계변경) 허가가 되는지.
3. 기존건물 2층이 진북방향으로 높이의 1/2을 띄어 건축한것으로써 3층을 건축하고자 하는바 3층부분이 높 소정거리를 두어 건축하면 허가될 수 있는지.
4. 연립주택을 주거지역에 건축(50여세대)코저 하는바 배치계획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경우와 의사에게 대여할때 의사의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을것임.

2. 공사가 완공상태로써 건축규제 목적이 건축지침 2년의 해결 방안이므로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3. 기존건물은 합법적인 건물이나 기존건물이 증축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부적격하게 되므로 건축허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4. 대단위 연립주택 배치 계획시 유의사항은 변화있는 배치와 어린이놀이터, 녹지공간, 주차공간의 유효적절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은방법입니다.

1978년 9월 14일 (목)요일
상답자주소, 신청자성명

서울시 :
건축사 :

상답요지 :

1.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도로가 건축이 가능한지?
2. 수도권내 공장 건축은?
3. 주위에 공지가 없는 대지의 최소 면적은?
4. 시민(전화)
주거지역의전용 용적율은 얼마입니까?

답변내용 :

1.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으로 진입 도로를 확보하여야만 됩니다.
2. 관계도서를 시청에 접수하여 건설부장관의 심의거쳐 통과된 것에 한하여 가능하여 공장부속시설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3. 법정 대지면적의 1/4까지는 건축이 가능함.
4. 서울시의 경우 70% 입니다.

構造計算을 하기위한 電子計算機에 관하여

鄭 日 榮

〔1〕序 論

Electronic digital computer에 關하여서는 最近 各方面에서 關心이 높아가고 있는 現實로서 事務・技術 등 各分野에 대단히 넓게 使用하게 되었다. 그런데 computer는 電子頭腦라고 불리어서 難解한 問題는 모두 解明된다고 생각되는 印象을 주는 技術者도 있는 反面에, 다만 빨리 計算할 수 있다는 過少評價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價值評價와 利用에 있어서 若干의 問題點이 있다고 본다. 事務關係의 computer의 利用도 計算時間이 飛躍的 增進을 利用한 能率化, 이에 隨伴되는 人件費의 節減을 期待하는 段階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應用數學의 進歩와 더불어 O.R. 등의 手法이 導入되어 이것들이 computer 能力과 합쳐서, 予測이라든가, 在庫問題에 새로 解決을 주게되고, 企業의 中樞頭腦로서의 役割을 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경우, computer는 이미 計算機라기 보다는 情報處理機械로서 번역되는 것이 適當하다고 본다. 事實 우리들이 使用하고 있는 computer도 computer라는 이름이 쓰여져있는 곳은 없고, 다만 Data processing system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構造設計에 從事하는 技術者들은 構造計算, 다른말로서의 廣義의 情報處理를 하는 方法을 알고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高度의 能力을 지니고 있는 computer도 처음부터 微分, 積分 및 微分方程式과 같은 까다로운 計算을 處理하는 機械는 아니다. 四則演算과 어느 程度의 判別能力을 지니고 있는 素朴한 機械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素朴의 高速性 判斷力을 人間들이 교묘하게 驅使하면 人間이 기대하고 있는대로의 結果를 줄 수 있다. 構造設計의 實務問題에 이와같은 computer를 導入하면 이 機械의 機能에 關한 問題들이 惹起하게 되는데 이에 關하여 생각하여 보겠다.

〔2〕計數型 電子計算機(Digital computer)

電子計算機(Electronic computer)와 電氣計算機(Ele-

ctronic comculater or Accounting Macline)는 잘 混同 되기 쉬운데 이들은 本質적으로 다른 것이다.

	Digital computer (計數型 電子計算機)
計算機	digital型
	Accounting Machine (電動型 計算機, 電氣計算機)
	機械計算機 (机上計算機)
	주판
analogue型	analogue computer
	計算尺

通稱 IBM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機械가운데도 Accounting Machine에 屬하는 것이 많다. 이와같이 計算機 全般에 關한 分類를 생각하면 digital型和 Analogue型은 本質적으로 다른것으로 利用目的도 다르게 마련이다. Analogue computer의 構造工學에 있어서의 應用으로는 振動問題 등에 쓰이게 되는데 이와같은 種類의 computer는 電氣回路網의 數學的 性格과 物理現象의 數學的 特性사이의 相似性을 가지게 하고, 求하고 싶은 物理量을 電流 또는 電壓의 形態로 表現하여 觀測하는 것이다. 따라서 加減乘除 以外에도 微分, 積分에 關한 回路도 생각되며, 이와같은 種類의 computer의 programming이란 이와 相似한 回路를 만드는데 있다. 이에 反하여 digital computer란 微分, 積分 등의 回路는 전혀 없으며, 乘除算도 加算・減算의 擴張으로서 施行하는데 지나지 않다. 다만 이와같은 基本 演算이 超高速의으로 處理되며, 微分, 積分을 數值計算에 의하여 얻게된다. Analogue型의 計算機에 있어서의 量 表現은 電流를 나타내는 電流計, 電壓計에 의하여 表現된다. 卽 눈목으로 表現되는데 對하여 Digital型은 珠盤과 같이 珠盤알로 셈이 되기 때문에 알이 3個라든가, 또는 4個라고 하며, 3個와 4個 사이의 中間數의 存在는 許容되지 않는다. 이것은

有效数字의 問題와는 別個이다. 이와같이 꼭 맞게 떨어지는 量은 数字로서 印刷되기 때문에 人間은 그 結果를 完全히 数字化된 것으로 認識된다. 實務하는데 있어서 Analogue computer 보다 Digital computer 가 더 重要視되는 理由의 하나이다. 오늘과 같은 Digital computer 의 最近의 탄생은 1944年 Harvard 大學의 MARK-I 号이다. 이 機械는 電磁リ레이를 使用한 것으로서 情報의 人力에는 punch 된 tape를 使用하여 制御는, punch card에 의한 外部制御의 方式이 취해지고 있다. 오늘과 같이 指令이나 data도 computer 内部의 記憶裝置에 一旦 차여져 들어간 뒤에는 繼續해서 그 指令에 따라 計算을 하게 된다. 所謂 Store programming의 方式이 된것은 1945年 John von Neuman에 의하여 完成된 後이다. 이것을 機會로 하여 Computer는 單純히 速度가 빠른 機械에서 脫皮하여 情報를 處理하는 機械로서 한歩 뒤기 始作하였다. 美國에서는 1951년에 有名한 Univac 가 Remington Rand社에서 本格的으로 生産되기 始作되었고 商用機械가 發表되면서 Computer는 別써 大學·研究所만의 機械가 아니며, 名事務所에서도 그 效用에 對하여 研究가 始作되었다.

{3} Digital computer의 構成과 能力

그림 1은 Digital computer 構成의 概略을 表示한 것으로서 中央에 있는 console란 中枢神經과 같은 것으로서 演算, 制御入出力·記憶等 一切을 掌握하는 部分이다. 入力裝置(Input Device)라 하면, 計算을 하기 위한 指令(Instruction) 및 그 計算에 必要한 固有數值(Data)를 機械에 주는 窓口로 생각된다. 入力裝置는 一般의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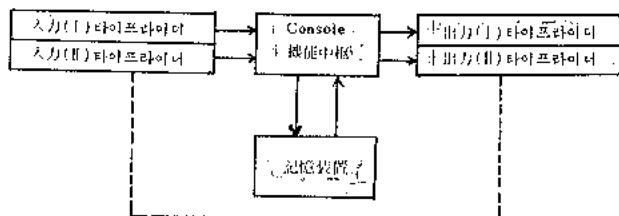


그림 1

로 두개의 窓口가 있으며, 타이프 라이터와 펀치된 테이프 또는 카드를 光電管 또는 電氣부라쉬로서 읽은 指令, 데이터 以外에 中間結果 등을 数学化된 狀態로서 存保하는 場所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 內容의 變更 또는 出入 등은 全히 自由롭게 할 수 있다. 記憶裝置란 計算用紙와 같은 것으로 解釋된다. 萬一 그 計算用紙에 쓰여진 글씨의 크기가 定하여지면 종이 크기에 따라 計算을 할수있는 規模 어렵고 쉽기가 決定된다. 勿論 計算用紙가 클수록 좋겠으나,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計算用紙를 끝에서 부터 整屯하여 使用하지 않으면 곧 까뒀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点에서 Programmer의 慎重한 配慮가 必要하다. 記憶裝置는 機械에 따라 磁氣 테이프, 磁氣드럼·磁氣코

아 등의 種類가 있으나, 어느것이고 간에 記憶場所에는 그 位置를 나타내는 뜻의 番地(Address)가 붙여있다. 그리고 대단히 重要한 것은 Computer에서는 그 Address에 貯藏된 內容, 그것을 그 所在의 番地를 呼稱하여야 한다. 出力裝置(I)는 電動타이프 라이터로서 入力裝置(I)의 타이프 라이터가 逆으로 作用한다. 다만, 入力の 境遇에는 그 鍵盤을 사람들이 두들겨서 入力시키는데 對하여, 出力의 境遇에는 記憶裝置內의 指令에 따라서, 計算의 結果를 紙上에 自動的으로 타이프 한다. 出力裝置(II)는 테이프 또는 카드에 結果를 Punch한다. Punch된 테이프는 그림 1의 点線의 經由를 걸쳐서 다시 入力裝置에 投入시킨다. 이것은 計算의 結果가 文字에 의하여 人間에 알리지 않아도 그 結果를 機械에만 알리고 다음과 같은 段階의 計算의 入力으로 하는 境遇에 使用된다. 数字로서 表現된 것을 人間이 媒介하여 人間에 의하여 再次 機械에 알리는것은 過誤의 發生을 크게 할뿐 아니라, 時間的으로 대단히 不經濟的이다. 이와같은 構成을 지닌 Computer의 能力이 어느정도 貴重한지요 Digital Computer의 能力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要約된다.

- ① 選擇能力(判斷能力)
- ② 回掃能力(反復能力)
- ③ Programming의 汎用性的 效用
- ④ 演算速度의 飛躍的 高速性
- ⑤ 正確性
- ⑥ 印刷能力

選擇能力(判斷能力)이란 原理的으로는 大小判別에 지나지 않는다. data 또는 計算途中 結果의 값에 對하거나, 그 以後의 計算式, 計算할 順序를 變更시키고싶은 일 이 가끔 있다. 人間에 의하여 計算이 進行되고 있는 境遇,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와같은 解決이 주어지고 있으나, 機械計算에 있어서는 人間이 介入되지 않고, 이것을 一聯의 Programming으로서, 取扱할때는 이와같은 能力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다. 그림 2는 鋼構造에서는, 細長比에서 座屈係數를 決定할 境遇에는 鋼構造 計算規準에 따라,

$\lambda \leq 30$	$W=1.0$
$30 \leq \lambda \leq 100$	Euler의 座屈式
$100 < \lambda$	Johnson 座屈式
$180 < \lambda$	主要部材로서 다루지 않는다.

이 論理를 Flow Chart로 한 것이 그림 2이다. Computer에서는 먼저 $(\lambda - 30)$ 의 값을 計算하고, 그것이 正·負·零 어느것이 되며, 다음에 行할 指令을 다르게 한다. 假令入力の 값이 30以上이 되어도, 그것이 100以內이든가, 또는 100以上인가의 第2의 判別을 必要하다. 이와 같이 判別된 結果, 그 判別式(Argument)의 正·負·零의 各 境遇에는, 다음에 行할 指令을 指定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能力이야말로 予測할 수 있는 모든 境遇를 總網羅한 Programming을 作成할 수 있다. 다음에 ②의 回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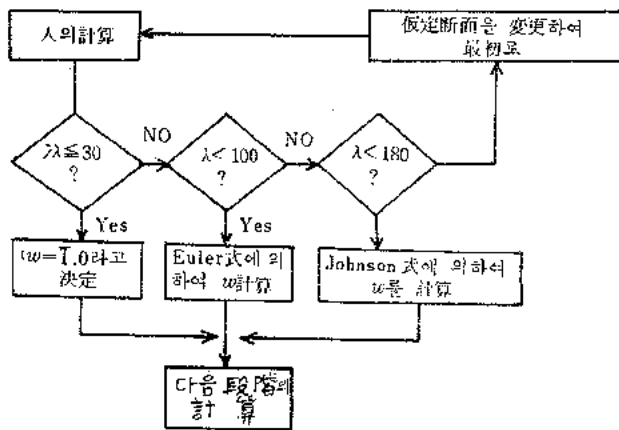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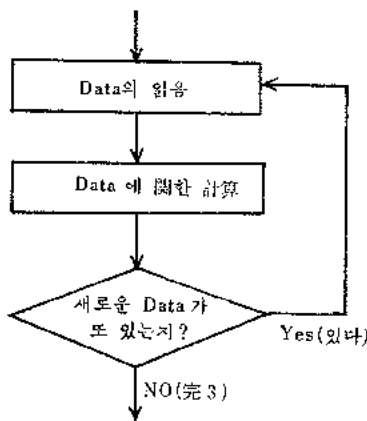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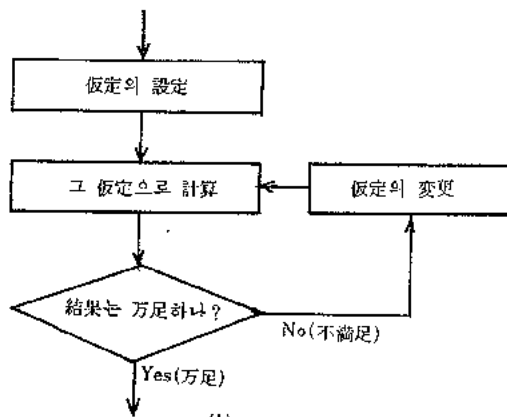


그림 2



(a)
그림 3



(b)
그림 3

能力(反復能力)이란 같은 종류의 계산을 몇번이고 하였을境遇(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같은 原式, 또는 계산 順序가 같을 때), 그것이 몇회이고 反復하여도 指令은 1回만의 順序를 주는 指令으로 足하다.

그림 3 (a)에서, 계산을 어떤 Data에 대하여 행하여 完了하였다면, Data를 變更하여 같은 계산을 施行한다. 이와같은 反復에 回掃能力이 利用된다. 그림 3 (b)는 構

造計算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잘 마주치는 Case다. 卽 어떤 假令아래 계산을 進行하고 万足하는지, 不滿스러운 자를 Check하여 万足한다면 다음 段階로 넘어가고 不滿스러운 假定斷面을 變更한다. 다만, 斷面의 變更에는 어느 規則性을 가지도록 變更하지 않으면 안된다. 假令 50cm씩 增加하거나, 1.1倍씩 增加하거나, 또는 斷面性能 表로 1磅크씩 Size를 올리는 등, 이와같은 使用方法도 Digital Computer의 빠뜨릴 수 없는 利用法의 하나이다. ③의 Programming의 汎用性에 關하여 記述하면 Computer의 指令 卽 Programming은 여러가지 類形이 있는 課題에 對하여 그때마다 Programming을 作成한다는 것은 뜻이 없다. 假令 靜定Truss를 分다는 問題에 있어서, 外力이 變化할 때마다, 또한 Truss形狀이 變化할 때마다, 各名의 Programming을 새로히 쓰는 것이 아니라 靜定Truss라는 課題에 對하여, 그때마다 Programming은 作成한다는 것은 意義가 없다. 假令 靜定Truss를 分다는 問題에 對하여, 外力이 變化할 때마다, 또는 Truss形狀이 어떻게간에 언제나, 같은 Programming를 使用하므로서 效用이 있다. ④ 演算速度의 飛躍의 高速性이란 계산을 빨리 한다는 것은 確實히 重要한 일이다. 그러나 늦은 것 보다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意味가 없다. 계산하는데는 그 種類에 따라서 어느 定하여진 時間內에 이루어지면 된다. 萬一 이루어질 수 없으면 아무 役割을 할 수 없는 種類의 계산이 된다. 假令 宇宙 로켓트는 처음부터 그 目標을 向하여 目標을 하여 發射한다는 일은 없다. 날아가면서 目標을 向하여 進路의 自己修正을 하면서 最後의 目標에 到達한다. 萬一 限定된 時間內에 계산을 할 수 없다면 그 結果는 全히 意義가 없다. 우리들이 實務하는데 있어서도, 이것과 같은 일이 가끔 있다. 限定된 期日內 또는 時間內에 계산을 보다 精度 좋은 方法으로 할 때 비로소 價値가 있다. 多萬 行列式은 어떻게 하면 풀이를 얻을 수 있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과 現實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別個의 問題이다. Computer에 의한 계산의 高速性은 各種의 數值計算을 可能하게 하였다. 積分은 數值積分의 手法으로 바꾸고, 微分方程式의 풀이도 數值解로서 주어지게 된다. 이들은 計算機의 高速性에 依存할 때 可能한 것으로서 單純히 늦은 것 보다는 빠른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計算手法을 利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 ⑤의 正確性에 對하여서는 analogue computer와 比較하여 볼 때 Digital은 故障이 난다던가, 機械가 停止하거나, 正解를 얻을 수 있다는 點等, 機械性能面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⑥의 印刷能力은 Computer를 構造計算에 利用하여 活用할 수 있는데 있어서 害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때에도 定하여진 形式으로 結果를 Print out하여 주게 Programming으로 誘導한다. Computer의 計算結果가 單純한 數字의 羅列로 끝나는 것일 때 實用性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創作人과 共同体意識

姜 斗 錫

사람은 누구나 藝術의 屬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休日이 되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山으로 바다로 自然을 憧憬하고 그 아름다움과 豐饒한 삶의 모습에서 自然의 純粹하고 眞實함에 感歎하며 이를 배우고 익히자는 것이 아닌가. 自然의 神秘속에서 感懷을 느끼는 것도 人間이 藝術의 本質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平和와 平溫을 지켜 주듯이 마을 기슭에 잘 세워진 敎會堂이나 옛 城趾, 古宮에서 깊은 感懷에 잠기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마음의 作用인가 한다.

우리의 生活이 建築이란 造形的 藝術의 一部로 創作이란 活動을 하기에 그러한지 모른다. 어찌 되었든 우리의 삶을 나뉘대로 自然과 藝術에 이어 보자는 심산이다.

人間은 自然을 瞬間도 저버리거나 疎忽이 할 수 없는 것은 成育의 바탕이며 美拘의 根源으로 모든 思考나 行動이 이에 順從하여 삶이 持續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自然을 가장 잘 理解하고 잘 再現했다든가 잘 描寫했을 때에 그것이 美요, 藝術에 이르는 길이며, 造形的 美가 자리잡은 基本이고 美를 결정지을 始發點이다.

藝術은 自然에서 生活周邊에서 어떠한 感銘이 內的衝動으로 知와 情과 意가 잘 調和된 秩序속에 원만하고 윤택한 品格을 지닌 마음의 表現인 까닭이다.

藝術家(情의 마음)의 눈에는 나날이 새롭고 뜨겁게 열면 빛과 그 神秘함을 느낄 것이다. 無限히 感歎하면서 새로운 探求慾에 물힐 것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幸福을 念願하면서 自己生命을 참되고 아름답고 偉大하게 가꾸려는 創造의 自己表現으로 最高의 完熟한 人格陶冶를 通하여 全人 藝術感情에 길로 여겨 흔히 思(思想) 言(表現) 行(實踐)으로 기쁨이 陶冶되었을 때 그를 全人(人格)이라 말하고 이러한 思, 言, 行이 自我完熟의 身心涵養에서 그 眞理가 다듬어 졌을 때 어떠한 질서와 氣風이 있음을 理解한다. 그러기에 崇高한 畫品은 언제나 崇高한 人格에서만 나온다고 한다.

우리는 建築을 平生의 業으로 生活의 持續으로 創作이니 藝術이니 或은 建築은 藝術이라고 자처한다.

이러한 藝術은 情意的 조정없이 心身의 涵養없이 表現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음의 情이 느낌의 呼訴를 造形으로 다듬어 옮기는 作業이기에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生活속에 藝術의 所在를 찾고 느끼며 理解하여 그와 呼吸를 같이 하는데서 이것이 發露되어 作品에 影響力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自然을 가장 잘 再現했다든가 描寫했을 때에 美라고 할 것이오, 이것이 建築美가 자리잡은 기초이고 美를 결정지을 始發點이기도 한 것이다.

建築의 慾求是 美學的 기초에서 造形的 知覺의 原理를 가지고 知覺에 依한 힘의 強弱 均衡과 變化 모임과 變容 句配와 誘導등 相互의 關係가 잘 調和되어 美를 決定지을 要素라 할 것이다. 이러한 要素를 어기면 形態가 不安하고 調和를 잃어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不安을 준다. 마음이 不安하면 더욱 더 거슬려 마음을 괴롭게 하게 마련이다. 보기싫은 繪畵는 안볼 수도 없고 듣기싫은 音樂은 듣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한번 建造된 建築物은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철거하기에는 建造한 만큼 어려움고 그 損失은 莫大하여 그 괴로운 마음은 두고 두고 後悔하게 마련이다. 그러한데 오늘의 우리 現實은 政策問題까지 물고을 만큼이나 市長의 눈을 괴롭히는 수는 너무나 많은 수이다.

建築士誌, 七八年 五月호에 建築設計 事務計論에 金東珪 先生이 指適한바 같이 一個月에 設計를 100件 하었다는 事實과 더욱 心慮되는 問題는 덤핑 防止策으로 倫理委員會의 움직임을 기대한바 있다. 過然 建築設計는 生産工場의 工產品과 같이 미리 生産한다든가 在高가 있다든가 하는 事前 行為가 있을 수도 없고 과잉生産도 없다. 다만 相對方의 注文에 依해서만이 作業이 있을 뿐 그 事務가 始作될 따름이다. 그 社會의 要求가 없고 依賴가 中止되는 것이다. 즉 예측生産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한 性格을 떠운 것이 우리의 業務일진대 一個月 設計件數가 100-200件이고 設計圖 作成額高가 얼마이고, 企業化 獨點化 云云이 우리 建築士의 羨望의 對相이 되었다 하

면 우리는 잘못된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값진 作品이면 藝術이라 創作이라 자처하면서 어찌 作品의 數에 價格이 있겠는가 作品의 數보다는, 件數보다는 알찬 하나의 作品이 얼마나 珍貴하며 所重함은 數십배 數百배의 값을 지닌다는 事實을 繪畵에서 彫刻에서 音樂에서 文學에서 배웠다.

建築士 協會에서 統計된 年間設計費가 우리 會員의 作業 業務量이 不足하거나 充分하면 間에 우리 建築士 二千名の 業務量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一部 少数 會員에게만 모이고 또 더 많은 量을 얻기에 덤핑을 하여 더욱 編重이 더해져서 會員간에 갈증이 생기고 서로가 반목의 對相이 되어 하나의 件을 가지고 많은 數의 會員이 서로 다투어 차지하기 爲해서 상극이 되고 불고 찢는다 하면 어찌되겠는가, 時間이 갈수록 不和 不協의 競爭에서 生存경쟁의 싸움터는 커질 뿐이다. 우리가 社會에서 要求하는 業務量은 그릇에 물을 담을 量이 限度가 있듯이 그 社會가 要求하는 限度가 있다. 無限한 量을 우리에게 賦與하지는 않는다. 주어진 限界量에서 우리 모두의 일터이며 作業量이다. 이 業務量은 限度가 定해진 우리 모두만의 作業限度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件도 作品다운 作品으로 만들것을 우리에게 社會에서 要求하듯 誠實하고 값진 作品을 몇점이나 하였나에 建築士의 品位와 使命이 따를 뿐이다.

그림에는 本是 값이 定할 수 없다고한다. 오직 眞價가 얼마나 지니고 있는나의 認定이 따를 뿐이다. 建築設計圖도 이에 다를바 있겠는가.

오늘의 社會는 福祉社會이다. 世界의 모든 先進國이 그러하듯 福祉社會로 이끌기에 많은 努力을 하고 있음을 잘 알수있다. 어느 社會內的 어느 個人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를 生存시키는 것은 社會의 責任이며 勤勞를 통한 社會의 恩惠가 아무리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最小限의 일터와 衣食住는 나아가서 文化的 生活條件도 提供해야 하는 것이 그 社會가 부가한 義務이다. 그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一定量의 設計業務量은 建築士 二千名 全會員에 주어진 量 일진에 이것이 어느 一定人에 獨點化 企業化될 性質의 것인가?

이것은 그 社會에 適應하게 報答하는 使命感에서 適材 適所로 作品으로써 創作으로 損色없는 作業으로 誠實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第一에 各自 件數 爲主로 量産爲主로 處理될 때에 一部の 會員이 作業이 없고 일터를 잃어 運營難이甚하고 할일이 없어 生活의 不安이 울적에 덤핑은 고사하고 無料提供이라도 감수하며 다음 날의 일터를 얻기에 갖은 競爭과 血闘도 覺悟함은 當然한 人間의 心理的 衝擊일 것이다. 이때에 어찌 倫理委員會가 問題이겠는가 생각할 余地도 여기서는 없을것이다. 第一에 이것이 連鎖反應으로 이루어질 때 누가 이를 막는다는 말인가

서로가 서로를 찢뜨고 競爭의 對相으로 生存의 敵이 된다면 어찌 되겠는가. 不和와 不信으로 不睦이 競爭의 적수가 蔓延 할 때에 우리는 모두를 喪失할 것이요, 모두는 少數만을 怨望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數와 數가 對決을 불사한다 하면 어찌 되겠는가?

個個의 小利를 爲하여 大利를 잃고 本然의 自体도 버리는 結果만이 남을것이다. 近間에 新聞에서 四〇名の 우리 會員이 不美의 免許取消云云의 記事를 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 전제가 아닌가. 筆者는 슬프게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의 熟考이며 큰 課題이다.

現代人 은 小利에 매우 밝고 민감한 대신에 大利에 극히 둔감한 것이 現代人의 傾向인가 한다.

도처에서 人들들 各自의 利益을 추구하기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남의 작은 利益에 집착하여 한치의 양보도 고려하지 않는다. 옛날 우리들의 조상은 義理와 人情에 두터웠다는 것을 자랑하는 人들도 막상 이해관계가 내립하는 경우에는 義理도 없고 人情도 모르는 人으로 行動하기에 아무런 주저도 저항도 느끼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악착같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利益을 다투고 얻은 것이 結局 무엇인가를 조용히 反省해 보자. 우리는 그동안 매우 어리석은 歲月을 살아왔다는 事實에는 스스로 놀랄 것이다.

義理를 버리고 人情을 누르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와같이 自問할때 우리는 結局 小利에 현혹되어 大利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우리는 누구나 幸福한 삶을 염원한다. 이 염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屬해있는 共同体 意識을 가지고 共同体의 繁榮을 성취해야 하며 또 우리 社會에 義理와 人情이 가득한 風土를 가져야 할 것이다.

衰退해가는 共同体안에서는 一時的으로는 榮華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榮華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共同体가 무너질 때는 運命임을 알아야 할 것이요, 義理와 人情이 없는곳에 物質이 豊富하고 욕체가 쾌락한 生活를 즐길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보람과 幸福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이다. 모두가 배고프고 不安한곳에, 나만이 배부르고 平安하겠는가 말이다. 어리석은 人들만이 當堂의 말초신경에 죽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넓고 깊은 곳을 알지 못한다. 중추신경에 마비가 온 것을 알지 못한다. 긴 안목으로 볼 때 共同体의 繁榮을 도모하고 義理와 人情이 가득한 風土를 가꾸는 것이 結局 自己 自身을 爲해서 有利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義理와 人情의 美德이 社會에 充滿되어 이것이 바탕으로 相互 護衛와 協業이 잘 이루어 졌을 때에 共同体의 繁榮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보람을 높고 먼 創作과 藝術을 포함한 觀點에서 해결 해야 할 것이다.

建築法令 및 建築條例參考文案內

서울특별시 지부제공

서울특별시 관내에 해당되는 건축법령 및 조례등 회원업무에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건축허가 업무의 참고가 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며, 지난 9. 19일자부터 민원해소를 위해 주택 40명 미만은 건축심의제도를 폐지 실시함과 일선구청으로 그 업무위급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종전사전 심의제도에서 오는 복잡성이 일부완화 되었다고 보겠으며 앞으로 건축허가 업무에 있어 관에서 민으로 향한 건축행정력과 질서확립 태세를 갖추기위해 법령, 조례등을 수시연구 파악되어야 될줄 사료되며 앞으로 변경 시행하는 자료를 수록 매규집을 발간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본 지부 주관으로 개설한 건축행정상담은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매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건축허가계획서의 참고사항

각 종 조 례 및 법 령 확 인 범 위		적 법 여 부
1	대지증명(지역, 지구, 평수 계획선) 확인	
2	대지등기부등본(소유자, 평수, 건축허가시동의 여부) 확인	
3	건폐율(법령 및 조례등) 범위확인	
4	용적율(법령, 한수이북, 조례에 의한 건물) 범위확인	
5	일조권저촉여부	
6	대지안의 공지(소정거리)	
7	지역지구내(용도지역에 저촉여부건물)	
8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9	각종 건축 조례확인	
10	도로(관통도로, 막다른도로, 가각정리)	
11	해발 70m이상 대지여부	
12	위생과, 상공과, 방호과, 소방과등 각부서 협의 여부	
13	지하실 설치여부(해당건물)	
14	주차장 설치여부(조례등)	
15	승강기 설치여부	
16	피난계단 및 직통계단 설치여부	
17	엘포트장 설치여부	
18	방화구획 여부	
19	채광문제 및 반자높이	
20	구조설계	
21	특수건물의 내장	
22	정호설치여부	
23	식수문제(植樹)	
24	타법령 저촉여부	
25	시공사 선정여부	
26	건축계획서 심의서류 작성여부(해당건물)	
27	수도권내 공장전축(공업단지 가능)	

○대지면적최소한도 및 용적율 (조례에 의한것은 별도참고)

지 역	대지면적최소한도	용적율()은서울한수이북
주 거 지 역	90M ²	300%(250%)
준 주 거 지 역	90M ²	500%(450%)
지역지정이없는곳	90M ²	300%(200%)
주 거 전 용 지 역	200M ²	80% (70%)
준 공 업 지 역	200M ²	300% (200%)
생 산 록 지 지 역	200M ²	150%
상 업 지 역	200M ² (단12M폭도로에접한대지) 330M ²	1,000%(900%)
공업지역및전용공업지역	330M ²	300%(200%)
자 연 록 지 지 역	660M ²	20%

○건폐율

건축법상 서울시경우		방 화 지 구		
지 역		일반지역	일반지	
			일반지	가로모퉁이
상 업 지 역	50%	70%	80%	90%
준 주 거 지 역	40%	50%		
주 거 지 역	50%	60%		
공 업 지 역				
준 공 업 지 역				
전용공업지역				
지역지정이없는지역				
생 산 록 지 지 역	20%	20%		
자 연 록 지 지 역				

○공지지구 조례

1) 대지면적최소한도

구 분	대지면적최소한도	용 적 율
1 종 공지지구	600M ²	40%
2 종 공지지구	400M ²	60%
3 종 공지지구	330M ²	80%

※건폐율은 서울시 일반지역 건폐율에 준함.

2) 대지안의 공지

구 분	전측선으로부터 거리	양측경계선으로 로부터 거리	후면경계선으로 부터거리 (M)
1 종공지지구	6.0	2.0	4.0
2 종 "	4.0	1.5	3.0
3 종 "	3.0	1.0	2.0

○아파트지구 건축조례

용 도	대지면적최소한도	건 폐 율	용적율
아 파 트	3,000M ²	18% - 고층 20% - 저층	200%
아파트이외건물	300M ²	50%	100%
연 립 주 택	1,000M ²	40%	100%

※아파트단지내는 5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연립주택은 아파트기준에 적용됨.

※각 세대규모(연립주택)는 부엌, 변소, 방 2 칸 이상이어야 함.

○풍치지구 건축조례

1) 대지면적최소한도 및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최고건물높이	완 화 조 치
700M ² 이상	20%	60%	8M이하(단,해발	기조성된 대지는 대 지면적 최소한도를 영 180조 4항에 준 용함.
300M ² 까지	40%	(단,학	50M이하구역에서학	
300M ² ~500M ²	20%	교는80	교를 건축하는 경우	
500M ² ~700M ²	10%	%)	16M까지)	
(단,75. 5. 13이전 조성대지230M ²)				

2) 대지안의 공지(단 주택에 한함)

구 분	전측선으로부터 거리	양측경계선으로 로부터거리	후면경계선으로 로부터거리
1 층건물	2.5M	1.5M	1.5M
2 층건물	2.5M	1.5M	2.0M
3) 3 층이상 각종 바닥면적 2,000M ² 초과할수 없음.			
4) 건물면적 60M ² 이하인 주택금지			
5) 건물형태 전면길과 측면길이 비율 1 : 5			

○미관지구 건축조례

구 분	대지면적 최소한도	전물층수	건축물규모		대 지 안 공 지	
			전면	측면	전측선으로 부터	후면경계 선 부터
1 종미관지구	660M ²	5 층이상	18M	9M		1.0M
2 종미관지구	330M ²	3 층 "	12M	6M		1.0M
3 종 "	330M ²	1 층 "	15M	9M	3.0M	1.5M
4 종 "	200M ²	12M이하	-	-	3.0M	1.5M
5 종 "	250M ²	2 층이상	12M	6M	3.0M	1.5M
미관지구내 건축물 건축면적 : 3 층 — 150M ² 11 층 - 15 층 - 500M ² 4 층 - 5 층 - 200M ² 15 층이상 - 800M ² 6 층 - 10 층 - 330M ²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지 역 또 는 건 물 의 증 류	항	건축물높이(H)의한도	
		높이8M이하건물	높이8M미만건물
주거전용지역	정남정북방향	$H \leq 2D$	$H \leq 4D$
	건축물의전후 면방향		규정무
	기타방향	$H \leq 1.5D + 8$	
주거지역	정남정북방향	$H \leq 2D$	$H \leq 4D$
	건축물의전후 면방향		규정무
	기타방향	$H \leq 1.5D + 17$	
준주거지역	정남정북방향	$H \leq 1.5D + 8$	$H \leq 4D$
	건축물의전후 면방향		규정무
	기타방향	$H \leq 1.5D + 17$	
상업지역내 아파트, 연립 주택, 기숙사, 병원등	정남정북방향	$H \leq 2D$	$H \leq 4D$
	건축물의전후 면방향		규정무
	기타방향	$H \leq 1.5D + 17$	

공 장	6.0M	3.0M	4.0M
1. 연면적 300M ² 이상 창고 6M			
2. 백화점, 호텔, 병원: 3M에 연면적 1,000M ² 당 1M 가산거리			

2. 改善策

가. 改善方向

- 審議部署와 許可部署의 一致
- 建築審議時 立地与件 同時審議 通報

나. 改善内容

- 1) 事務移讓(審議와 許可部署 一致)

移 讓 对 象	移 讓 部 署
○3,4,5種 美觀地区 建築物	本庁-区庁 ○路幅12m 未満道路에 接한 4層 以上 建築物 ○50世帯未満 聯立住宅
○50世帯以上 聯立住宅 및 아파트	都市整備局→住宅局

※ 区庁審議分中 地上層面積이 40坪未満인 单独住宅은
審議省略으로 民怨解消

○대지안의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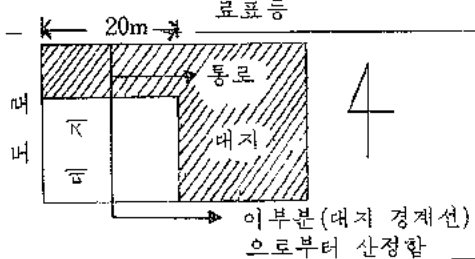
구 분	처마끝으로부터 건축선까지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인접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
주거전용지역		1.0M	1.5M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0.3M	0.5M

간단한 소방시설 대상건물규모

구 분 대상건물			옥 내 소 화 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소화전			소방서 등의 제외건물범위
				지층, 무 창층, 4 층이상		지층, 무 창층, 3 층이상				
1	가	공연장, 관람장	1,500m ² 이상 (500)	300m ² 이상 (100)	600m ² m ² (300)			2 층이 하의 건축물		1. 공동주택, 여관, 하숙 진로소, 조산원... 300m ² 미만
	나	집회장								
2	가	카바레								2. 사업장...200m ² 미만
	나	유기장, 펜스쿨								
3	가	유흥음식점			1,000 (500)					3. 주택...660m ² 미만
	나	음식점								
3	백화점, 시장		2,100 (700)	450 (150)	600 (300)					4. 창고업 및 위험물 저 장이외의 용도에 공하 는 창고
가	여관, 호텔, 여인숙									
5	나	기숙사, 하숙, 공동 주택			1,000 (500)					5. 창고...200m ² 미만
	가	병원, 의원, 조산소 양노시설								
6	나	아동복지시설			600 (300)	600m ² (300)				6. 제 1호~5호이 외의 것으로 연면적 150m ² 미만
	다	유치원, 맹·농학교								
7	학 교									
8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000 (500)					
9	공중목욕장									

10	정차장, 합박대합실			
11	사찰, 교회	3,000 (1,000)	600 (200)	2,000 (1,000)
12	가 공장 나 영화및텔레비죤촬영소	2,100 (700)	450 (150)	1,000 (500)
13	가 차고, 주차장 나 비행기격납고			
14	창 고	2,100 (700)	450 (150)	1,000 (500)
15	사 업 장	3,000 (1,000)	600 (200)	2,000 (1,000)

※ ()은 비내화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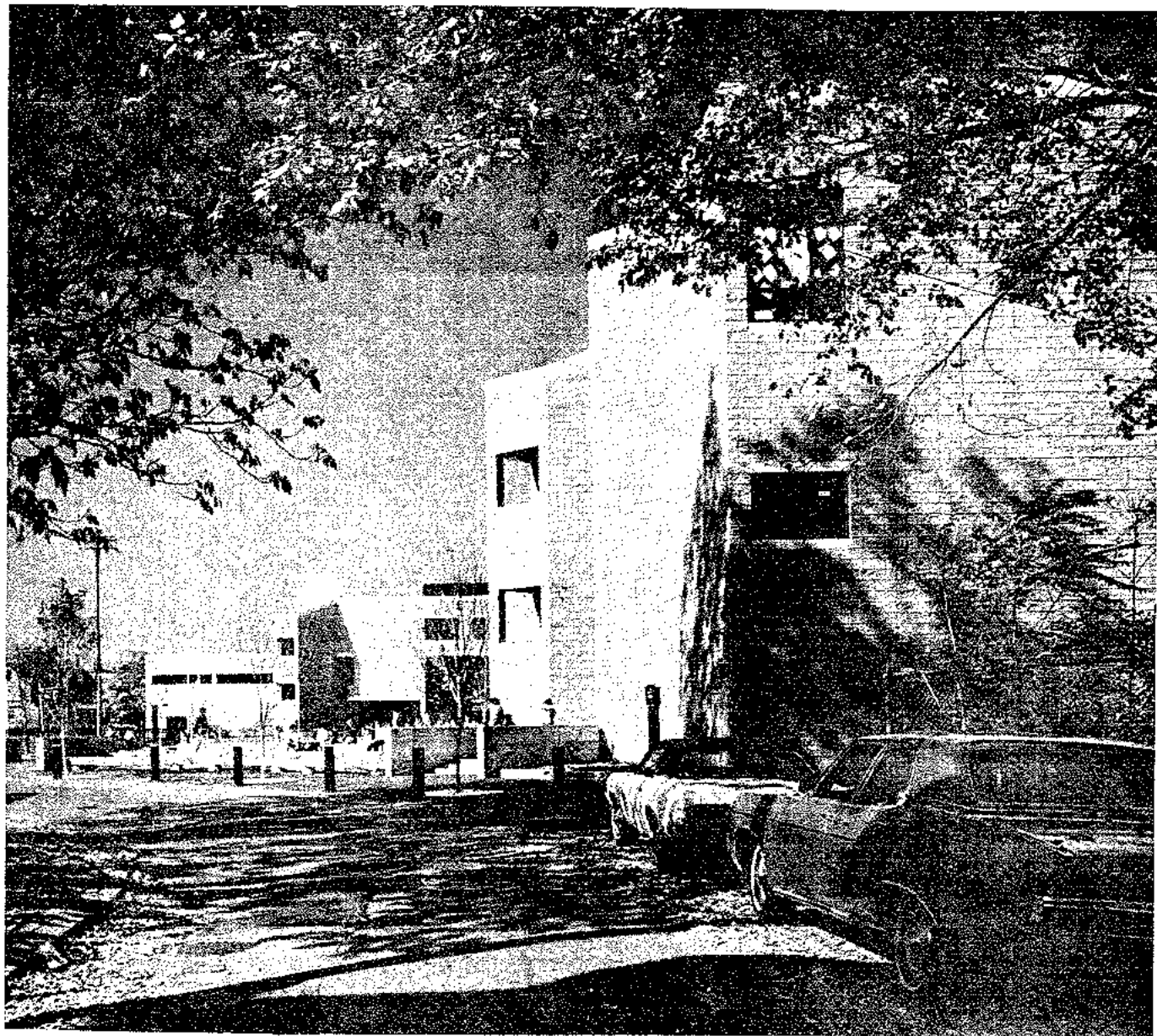
질 의 내 용	회 신 내 용								
○건축물 유지관리 구비도서 및 대상건물은	가) 대상건물 : 연면적 1,000㎡이상 특수건축물 또는 5층이상 건물 나) 보고기간 : 준공점사필증교부후 매 2년마다 다) 서류및도서 : ○준공점사필증 사본 ○배치도 ○각층평면도(변경이 있을시는 준공점사필증 교부시의 각층평면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거실 통로 부분의 변경전 변경후의 마감 재료표등								
○부지연장부분이 진북방향에 있을때 진북부분의 경계선을 어느곳에서 정하는지									
○기존 1층건물(주거지역)이 진북의 대지경계선에서 50cm 떨어져 일조권에 위법인데 2층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기존건물이 증진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2층(증축)부분은 현행 법령에 적법하도록 증축할 수 있음.								
○옥대위 대지에 건축을 할때 옥대 연단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되는 거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건물의 층수</th><th>1층</th><th>2층</th><th>3층이상</th></tr> </thead> <tbody> <tr> <td>떨어져야할거리</td><td>1.5m</td><td>2m</td><td>3m</td></tr> </tbody> </table> ※ 단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기초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의 층수	1층	2층	3층이상	떨어져야할거리	1.5m	2m	3m
건물의 층수	1층	2층	3층이상						
떨어져야할거리	1.5m	2m	3m						
○전기 안전진단 검사를 요하는 대상건물은	① 5층이상 건축물 ② 3층이상으로 1,000㎡이상건물 ③ 1,500㎡이상건물(층수에 관계없음)								
○고압선으로부터 건물의 이격거리는	건물의 수직으로부터 3m 수평으로부터 1.5m								

○건축법시행령 제180조 4 항의 특수성이란	①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의 유무 ② 대지고저차, 도로, 하천, 광장등 도시계획시설의 유무를 말함.
○건축법시행령 제168조 2 의 단서 규정중 공장의 경비용 건축물이라함은 용도상 규제한 것으로서 처마높이 2m이하이고 6m ² 이하의 규제와는 무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여하(예: 초소는 높이 6~8m될수 있음)	공장의 경비용 건축물의 규모는 동 단서후단 규정의 부속건축물의 규모와 구분하여 적용되는것이나 동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경비업무수행과 불가분 관계에 있고 필요되는 규모이어야함. 단 숙직실 경비자 또는 숙직자를 위한 변소는 수위실에 포함되나 면회실, 예비군용 병기고는 제외됨.
○현판의 채양구조를 철골구조 골격을 구성 켄티레바로하고 동부분을 유리로 덮어 햇빛이 투영하여 일조에 지장없을때 동부분 건축면적 삽입 여부? (켄티레바 길이L)	(돌출전장L-1m)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에 삽입 하여야 됩니다. ($\frac{L}{3}$ -1m)

新刊案内

디자인 感覺 10大要素와 10大原理
우리나라 아파트의 形成過程과 計畵의 要点
아파트 平面 660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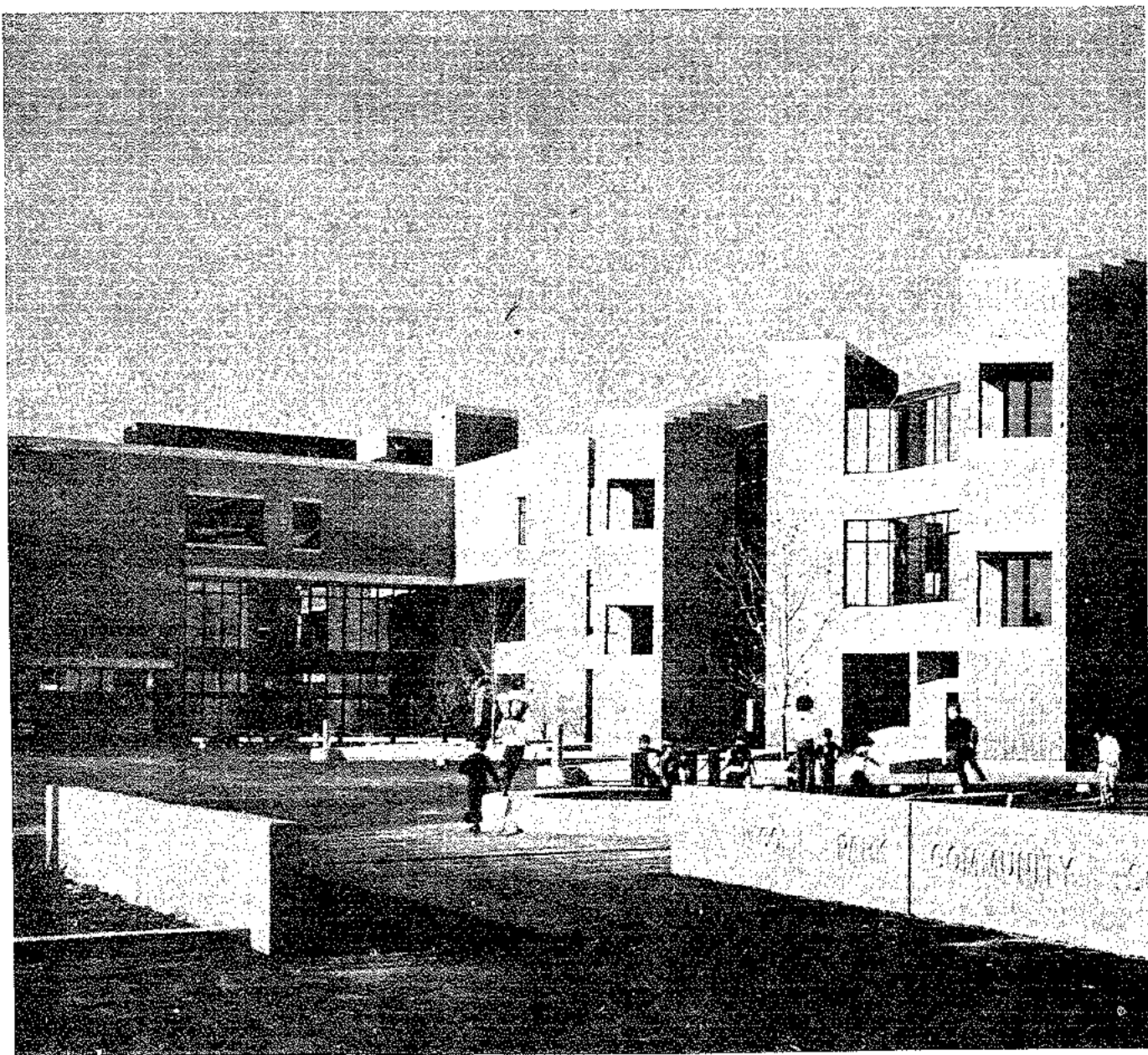
姜 明 求 編著



링컨파크 · 地域社会学校 미사후세즈州 · 썸마빌

LINCOLN PARK COMMUNITY SCHOOL

設計: Collabo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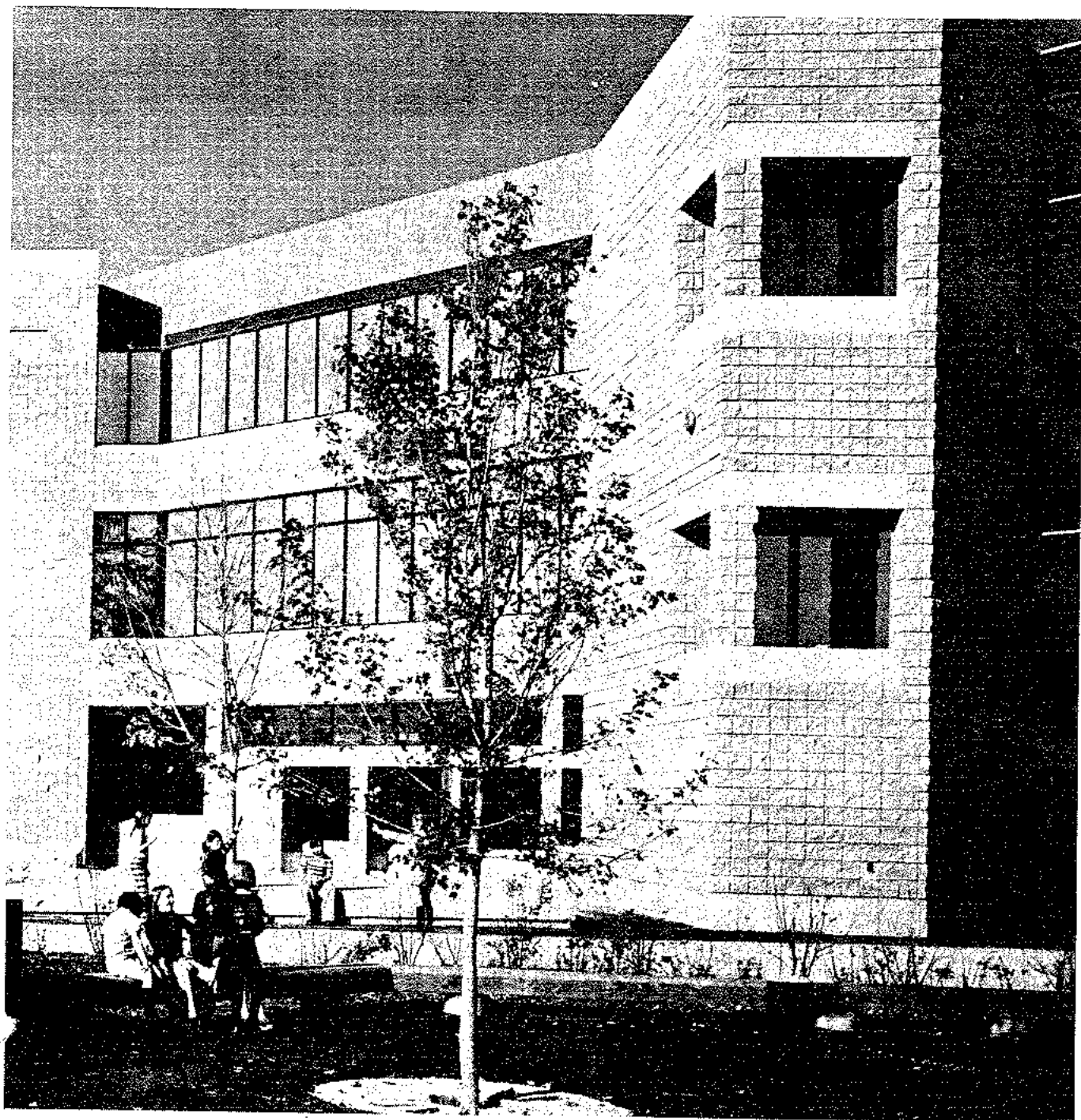


要求: 合衆國內에 있어서는, 各州마다 教育法이 定하여져 그에 따라 教育이 實踐되어진다. 教育制度上 極立的인 差異는 없겠으나, 實踐은 各學校의 管理者에게 委任되는 比重이 크기때문에, 여러가지 教育過程이 採擇되고 있다. 이 地域社會學校도 그와 같은 背景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學者의 一說에 依하면 地域社會學校의 理念은 「……生活의 質을 向上시켜, 地域社會를 學習의 實驗場으로서 使用하고, 學校를 地域社會센터로서 人間生活의 主要過程과 主要問題를 中心으로서 敎過程을 構成해,

學校政策이나 프로그램 作成에 一般人을 참여시켜, 地域社會의 調整者가 되어, 모든 人間關係의 民主主義를 實踐, 促進한다.……」와 같은 7가지 原則을 만들고 있다. 링컨·파크 地域社會學校의 設計에 결하여, 下記의 要求條項이 施主側으로부터 提出되었다. 學校는, 就學前에서 第6年次까지의 兒童, 850名을 收容할 것. 童 歲마릴市가 獨自的으로 展開한 敎育過程에 근거해서 開放計劃의 自由스런 平面構成을 할 것. 初等敎育을 위해 24個 敎

室과 之稚園, 特別敎室을 마련할 것. 地域住民과의 共同使用의 可能한 圖書室, 體育館에 行政事務所를 計劃中에 包含시킬 것. 敷地의 廣·파크 및 周邊의 環境全體에 對해서 充分한 配慮가 이루어질것 等이었다.

- ① 링컨公園에서 본다.
- ② 南側外觀
- ③ 南側立面圖





解決：

3層으로 세워진 建物은, 要求되어진 施設을 各層에 機能적으로 配置하는 것으로서 明確히 構成되어져 있다.

幼稚園, 初等教育課程이 있는 教育施設棟이 東西方向에 길게 配置되어져 있다.

體育館 等の 地域住民과의 共用施設은, 그 西端部에서, 敷地の 모양에 沿해서 측면이 南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教育施設棟은, 一邊이 70m의 三個의 正方形을 연결하는 形態로 構成되어 있다.

1層에는 地域과의 共用施設에 가까운 西側에, 食堂, 廚房이, 中央에 障害児(身體)의 教室, 東西에 幼稚園이 配置되어 있다.

2, 3層의 하나하나의 正方形은 한개의 教育單位를 構成하고 있다.

그것은 4회-트의 天井과 照明設備系統의 크릿트의 따라, 開放計劃의 4個教室로 分割되어 있다.

共用施設棟은, 1層에는 地域住民을 위한, 行政事務所를 具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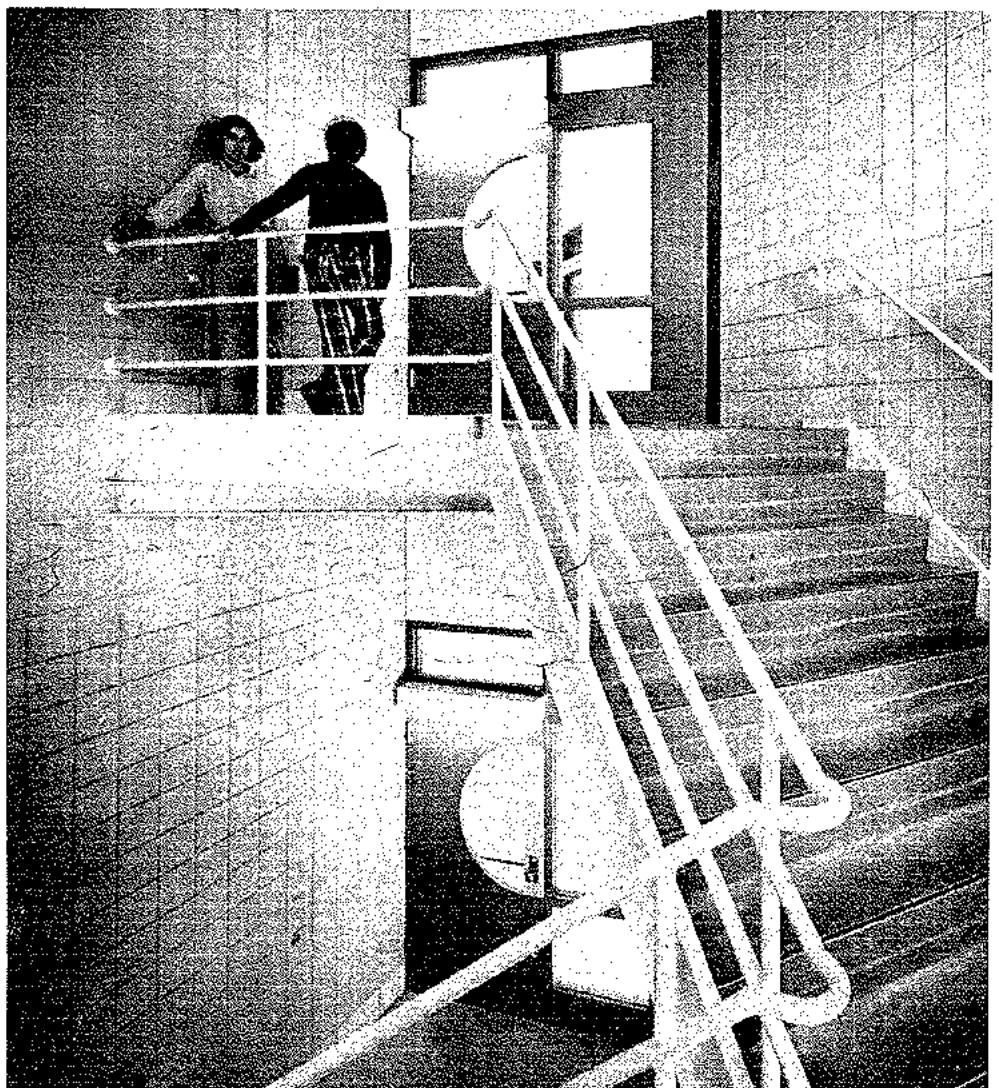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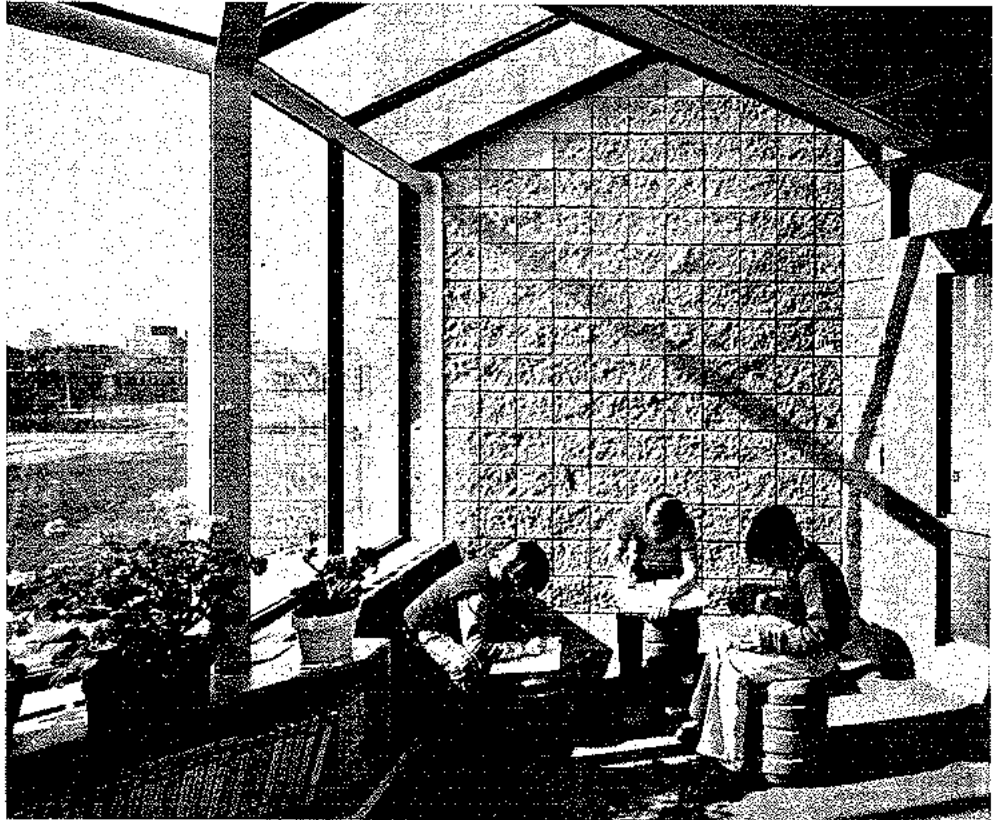
2層에는 吹抜図書室이 있어, 3層에는, 図書室의 吹抜을 둘러 地域社会室과 談話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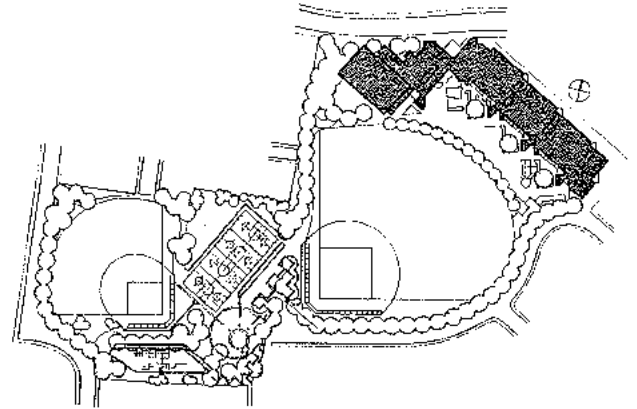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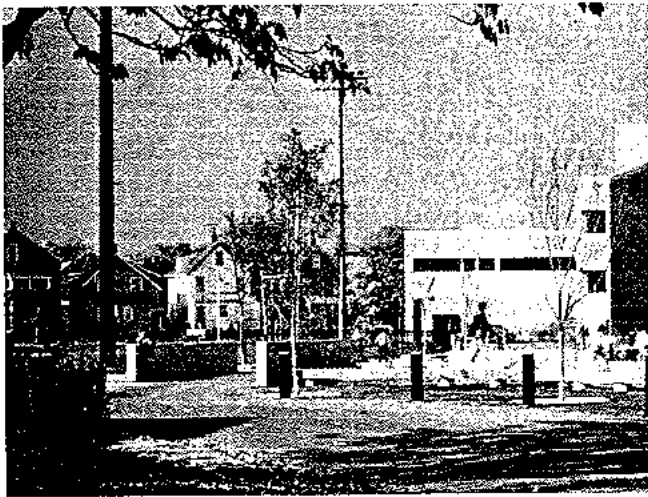
構造形式은, 다음 두가지 點點이 얻어지는 실에서, 鉄骨造가 採用되어 있다.

첫째로는 工事費가 廉價이어야 한다.

두째로는 内部空間을 自由스럽게 構成할 수 있는 커다란 構造를 可能하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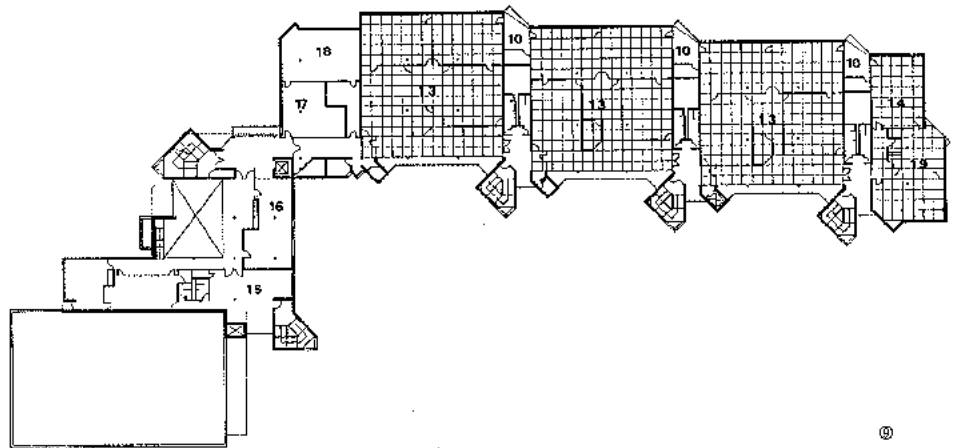
이 建物의 30회-트構造를 基本으로 計劃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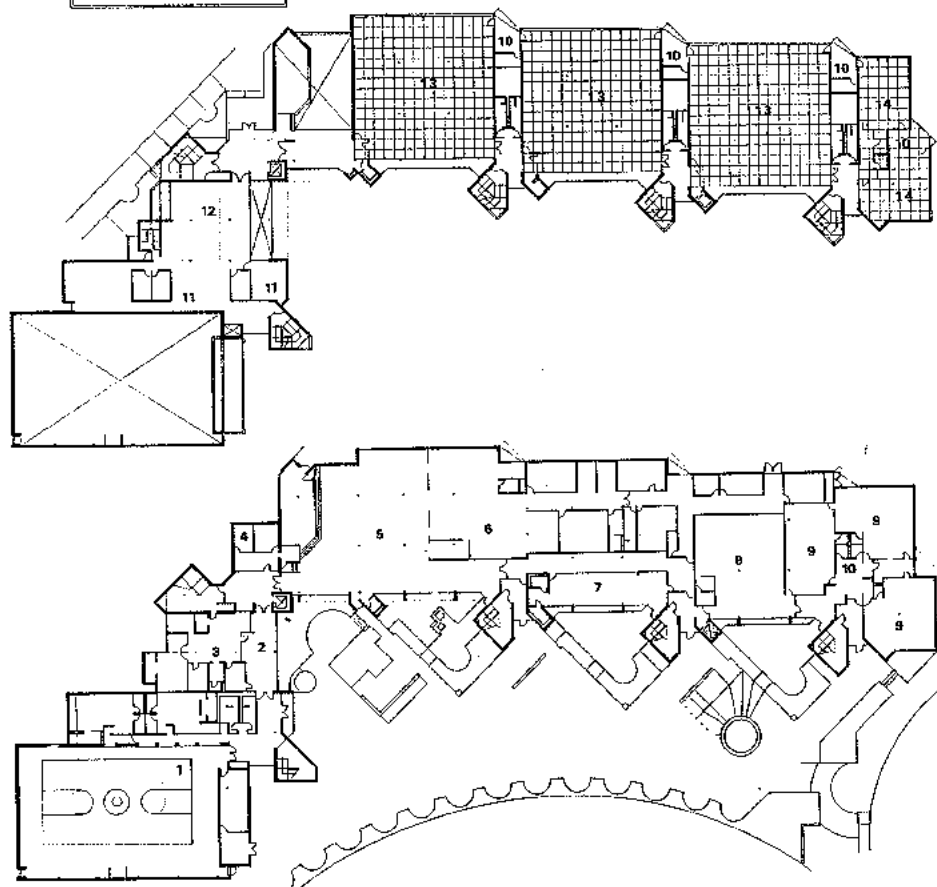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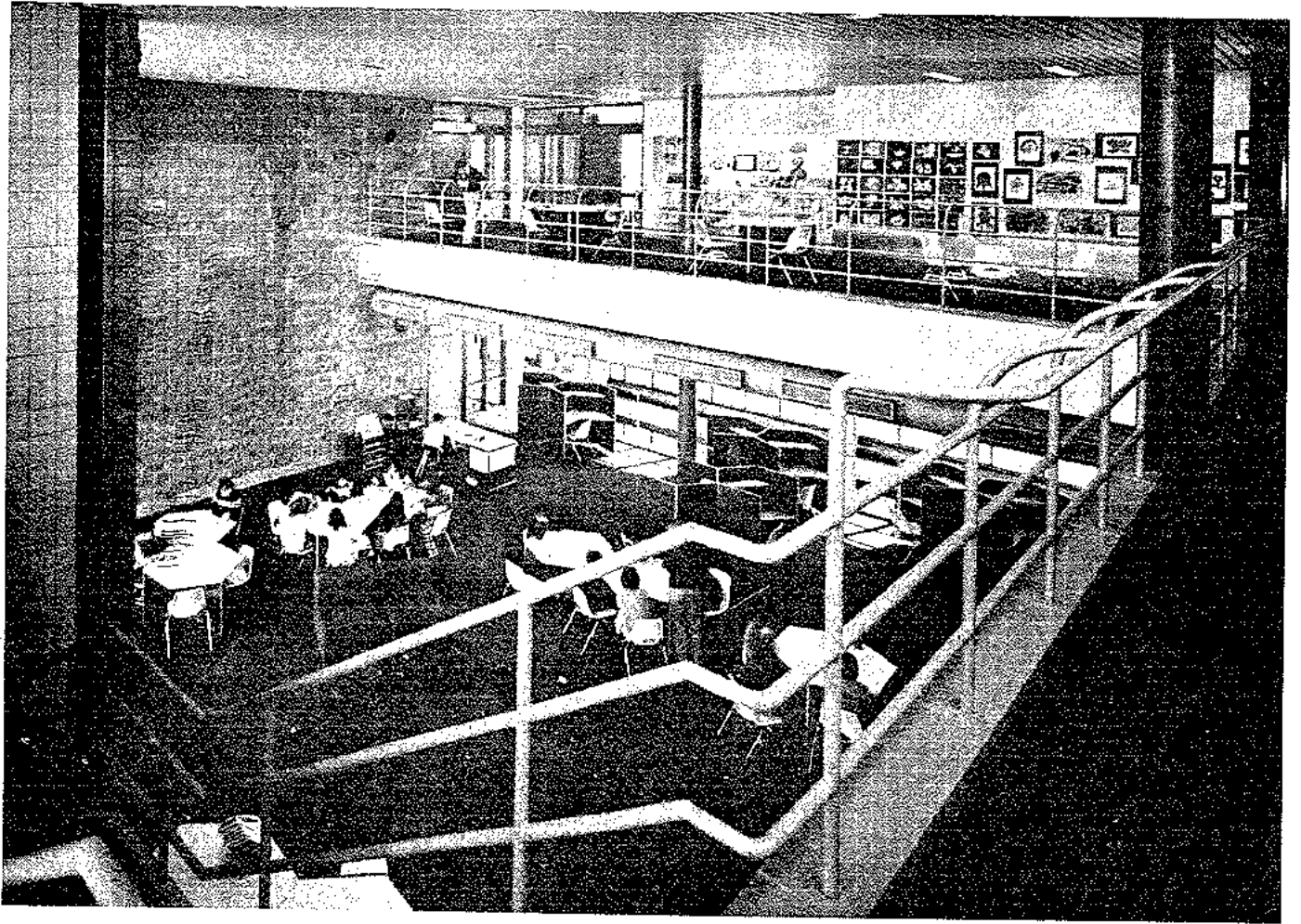
마 감 :

外壁은 疑石의 콘크리트뿌록,
内部는, 天井이 알루미늄 스
팬들.
壁이 疑石뿌록콘크리트뿌록의
塗裝마감이 併用되고 있다.
바닥은 教室部分이 융단으로
갈게 처리.
露出된 鉄骨部分은 原色으로
塗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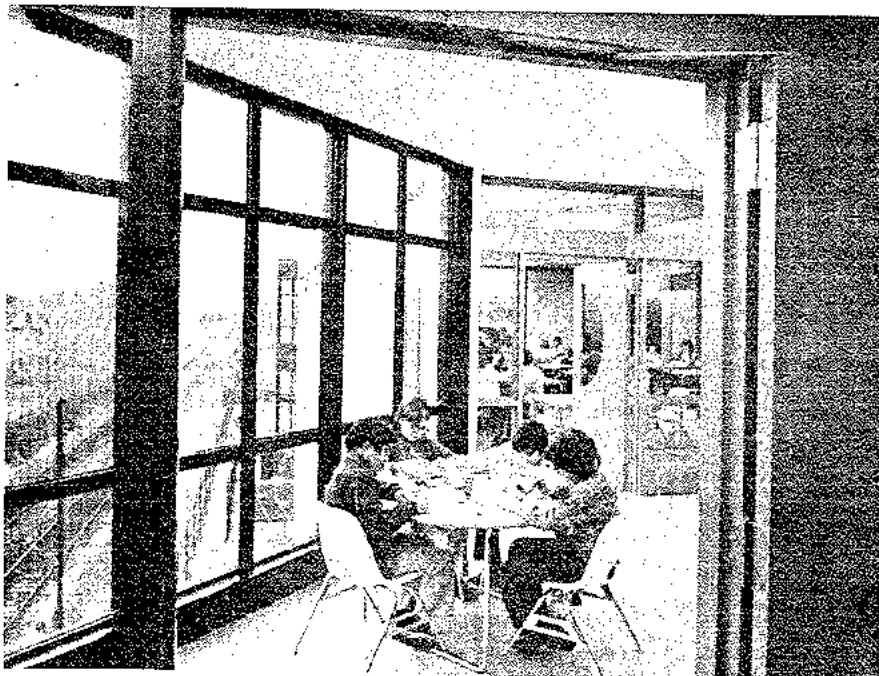


- ③ 가라리
- ⑤ 구름室
- ⑥ 教室로의 階段室
- ⑦ 랑킨公園과 校舍
- ⑧ 配置圖
- ⑨ 3層平面圖
- ⑩ 2層平面圖
- ⑪ 1層平面圖
- 1. 體育館
- 2. 가라리
- 3. 行政事務室
- 4. 保健室
- 5. 輕食堂
- 6. 廚房
- 7. 障害児室
- 8. 놀이室
- 9. 幼稚園児室
- 10. 그룹室
- 11. 讀書室
- 12. 매디아센터
- 13. 教育單位
- 14. 特別教育 室
- 15. 콘뮤니-티室
- 16. 美術室
- 17. 裁縫室
- 18. 音樂室





- ⑫ 正面玄関ホール
- ⑬ 매디아센타를 본다.
- ⑭ 3層学習室을 본다.





連邦裁判所別館

UNITED STATES

COURTHOUSE ANNEX

設計：HARRY WE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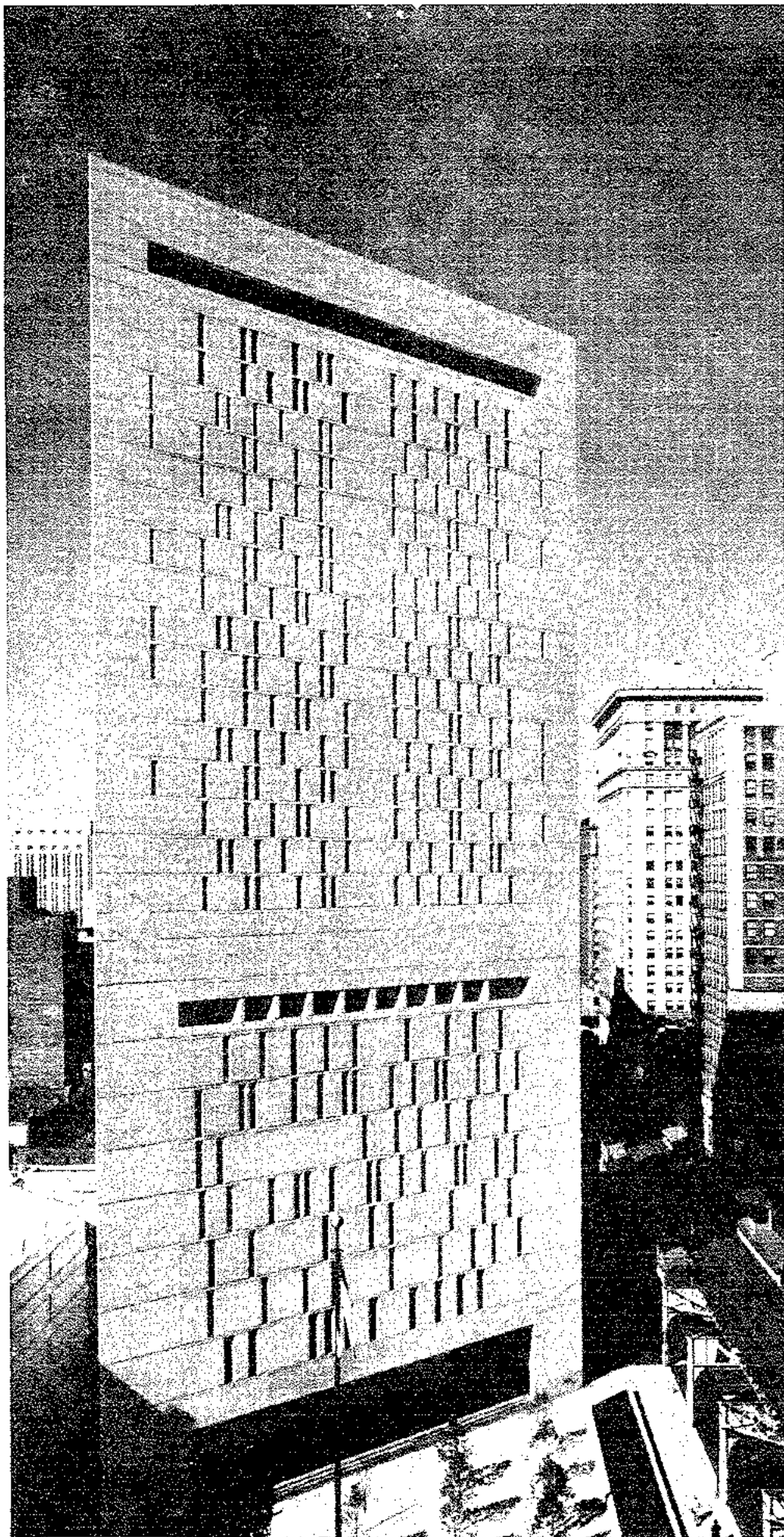
시카고, U.S.A 1975.

- ① 西側鳥瞰
- ② 東側外觀
- ③ 北側鳥瞰
- ④ 南側立面圖
- ⑤ 西側立面圖

要求：美合衆國에는, 코롬비아地区를 除外하고는 두 法制度가 있다.

그것은 連邦憲法과 各 州마다의 制定된 法律인 것이다. 따라서 合衆國에는 二組의 裁判制度가 共存하고 있다. 連邦裁判所는, 連邦憲法 및 合衆國의 法律과 條致의 根椐로서 發生된 事件, 即 連邦問題라 불리우는 事件이나 原告와 被告가 相異한 州의 市民인 경우, 即 州籍相違에 關한 事件을 取扱한다.

많은 銀行은 連邦政府에 依해 保障되기 때문에 그곳에 強盜도 橫領等 事件도 이 곳에서 取扱된다.



이 建物은, 連邦裁判所의 別館으로서 裁判中の 被告 및 既決囚을 拘留하는 곳이다.

建設背景에는, 合衆國에 있는 이와같은 類의 既存施設에 대한 社會的 批判이 있었다. 連邦拘留施設의 非人道主義的인 拘置形式은, 是正되어야 한다는 評論家들에 依해 關係當局에 提出되어져 있다.

이에 對해서 法執行에 關한 內閣類會는, 1967年에 施設의 改善를 決定했다.

그리고 連邦拘留施設改善事業의 一部로서, 이 設計가 "하리·위스"에게 委託되었다.

이 시카고의 計劃에 참가해서 뉴-욕市와 산디에고市에도 같은 計劃이 進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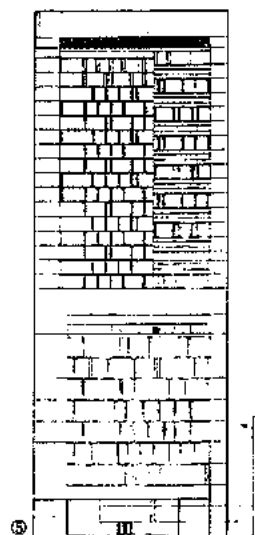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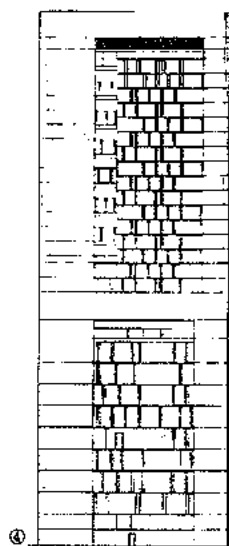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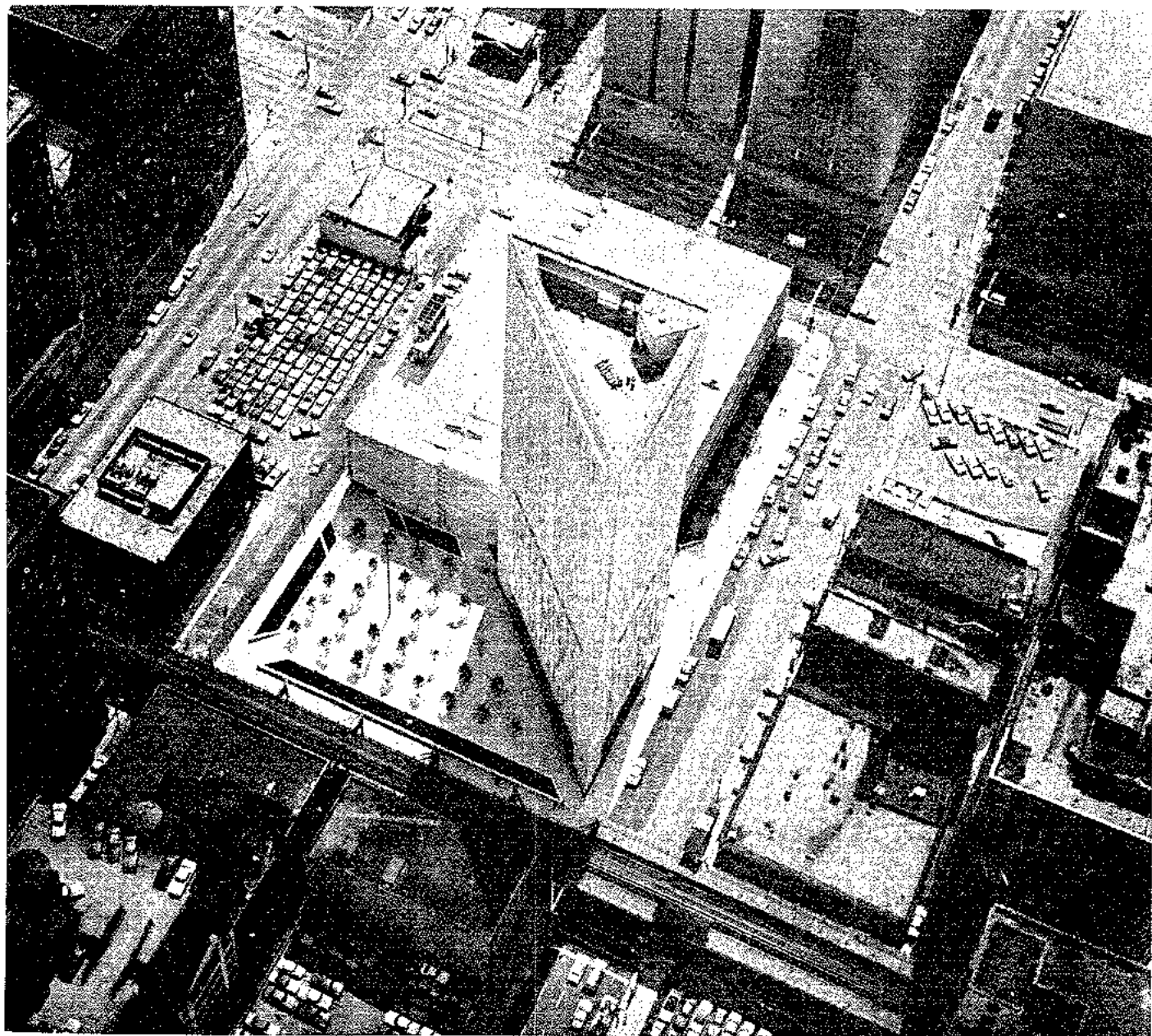
設計委託에 併行, 當局에서는 몇가지 要求가 提出되었다. 拘留은 被拘留者의 自主管理에 委任되는 것과, 50人을 限度로 하는, 罪狀別 및 性別에 따라 分割管理의 可能한 拘留單位가 構成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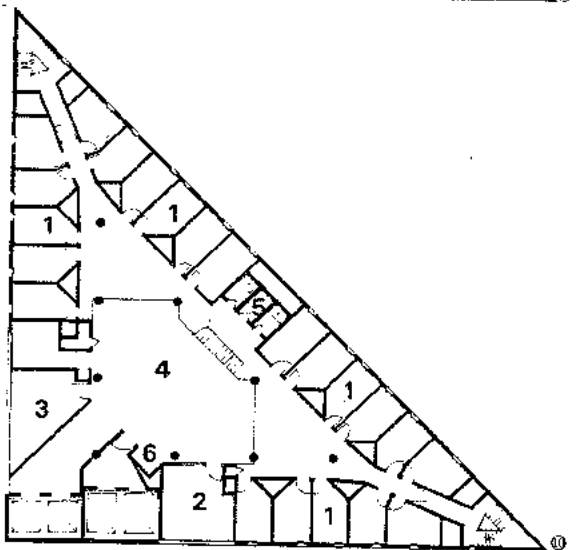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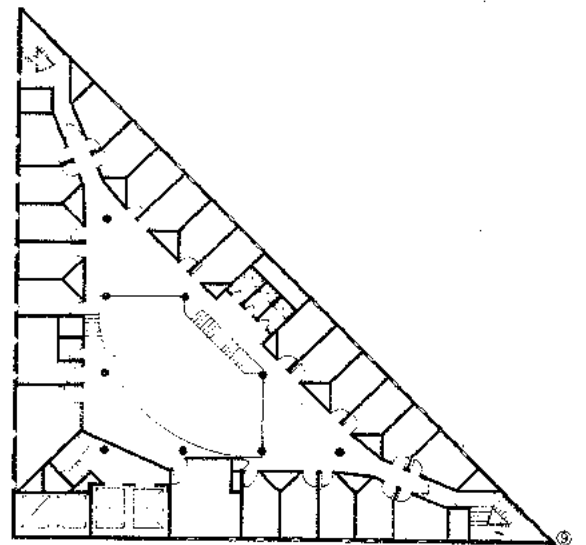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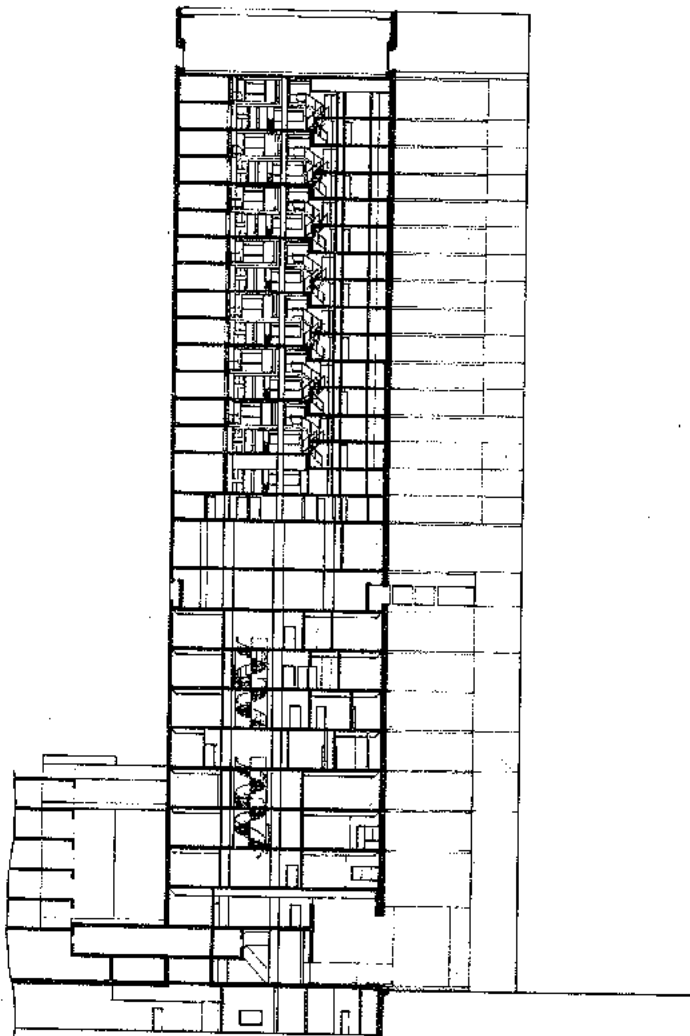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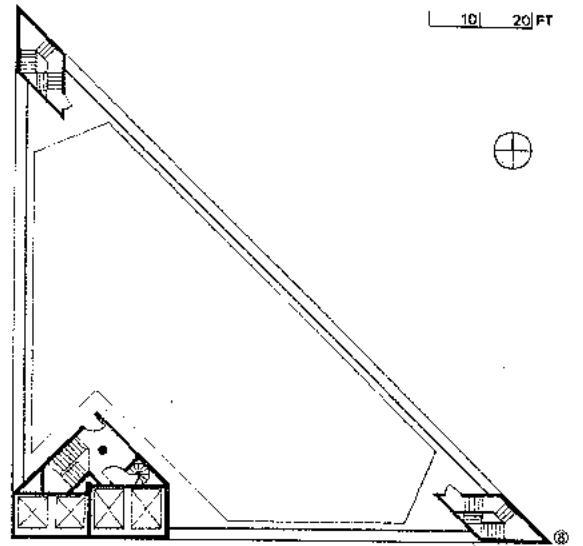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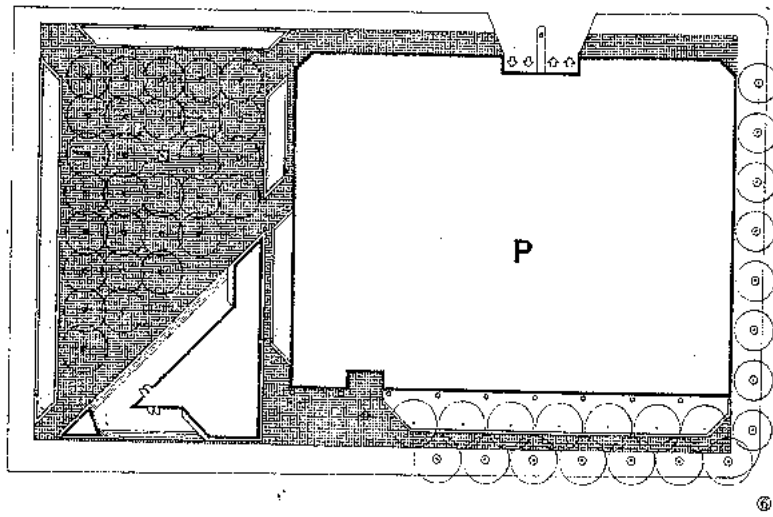
大都市 內의 中心地에 建築되는 것에서 保安管理에 對한 萬全의 配慮가 이루어 질것. 醫療施設을 비롯한 被拘留者가 拘置期間中, 人道主義的인 生活를 할 수 있는 充分한 環境을 갖출것.

그리고 이 建物이 從來이 不評이나 좋지않은 印象을 一掃시킨 새로운 모델로서 被拘留者의 社會復歸施設이 되도록 하는것 等인 것이다.

또한 敷地內에 隣接한, 大駐車施設의 建設도 計劃에 包含되는 것이 發注者의 連邦調達庁에서 要求되었다. 이 建物은, 前述의 뉴-욕市 및 산디에고市의 計劃도 併行 메트로폴리탄·코렉슨날·센터의 適切한 모델을 찾는 제기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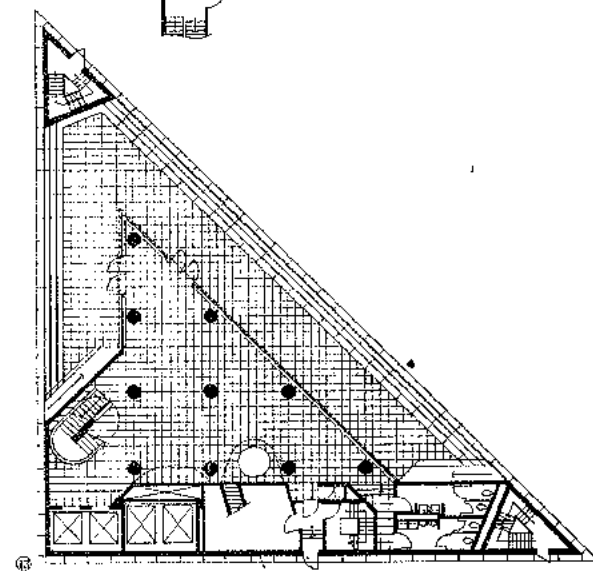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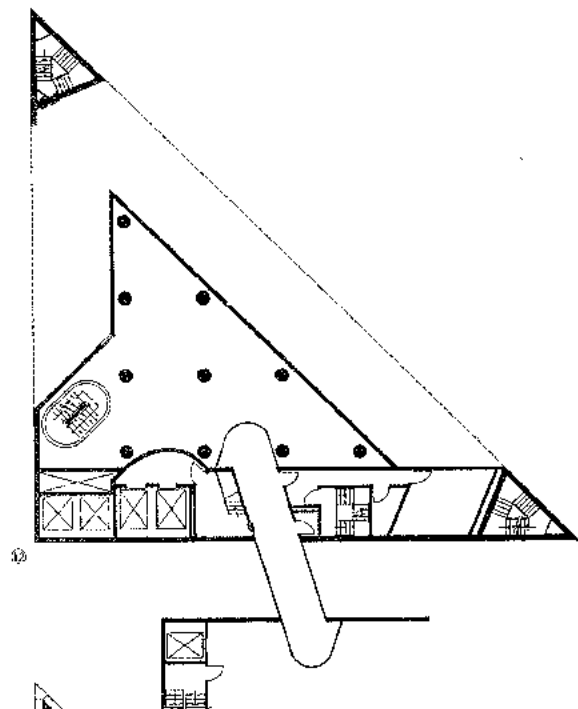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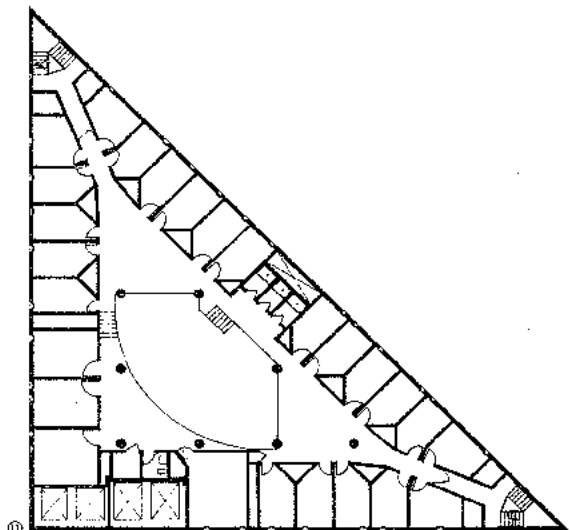
管轄은 連邦拘置局이다.





- ⑥ 配置図
- ⑦ 断面図
- ⑧ 屋上階平面図
- ⑨ 26階平面図
- ⑩ 25階平面図
- ⑪ 14, 16, 18, 20階平面図
- ⑫ 中2階平面図

- ⑬ 1階平面図
- 1. 個室
- 2. 作業室
- 3. 面会室
- 4.
- 5.
- 6. 湯沸



解決：

위스는 當局의 要求를, 立
面에 있어, 콘퓨터의 - 데이
타 카-드를 想起시키는 不規
則의 스트릭트의 窓을 만들고,
三角形의 高層BL이라는, 一
見아꾸로바틱한 設計를 提示
하는 것으로 解決하고 있다.

27層의 建物の 上層部分 에
拘留區域을 下層部分에 医療
및 事務等, 管理서비스區域을
区分 配置하고 있다.

두 空間사이에는 拘留者의
移送等에 必要한 保安管理원
에레베이터도, 面會室나 서비스
를 위한 2系統의 에리베이터
를 갖추고, 保安管理區域의
分離를 明確히하여 管理를 容
易하게 하고있다.

拘留區域에 있어서는, 各層
의 外壁面에 沿해서 個室및
面會室, 作業室, 監視 事務室
等の 空間을 配置하고 있다.

이들 房들에 둘러싸인 中央
空間은, 二層씩 吹抜로 되었
이, 多目的의 廊과, 二層을 一
體化해서 一個의 拘留區劃을 構
成하고 있다.

이들은, 食卓이나, 비라야
-드等の 施設이 整理된 食事
나 團集의 場所일뿐 아니라,
社會集團生活의 訓練場 이기
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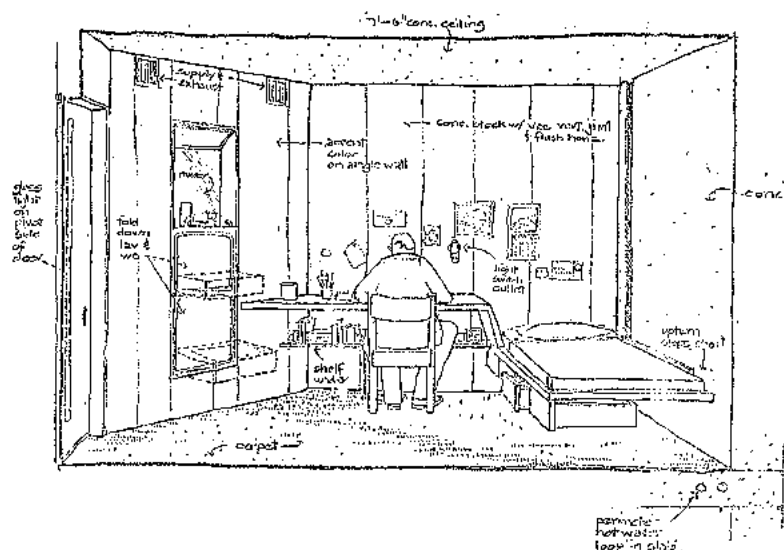
1個層에 22個房이 있어 44
名의 連邦拘留者가, 區劃內에
서 自主的으로 日常生活을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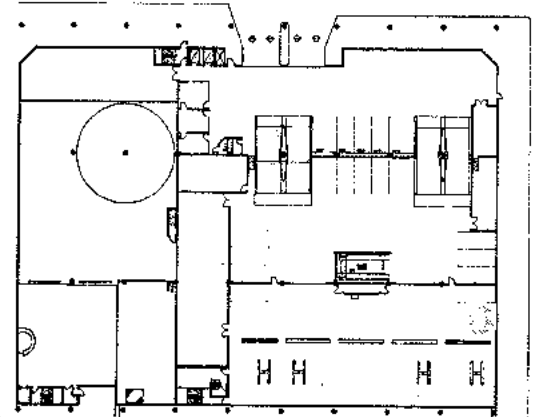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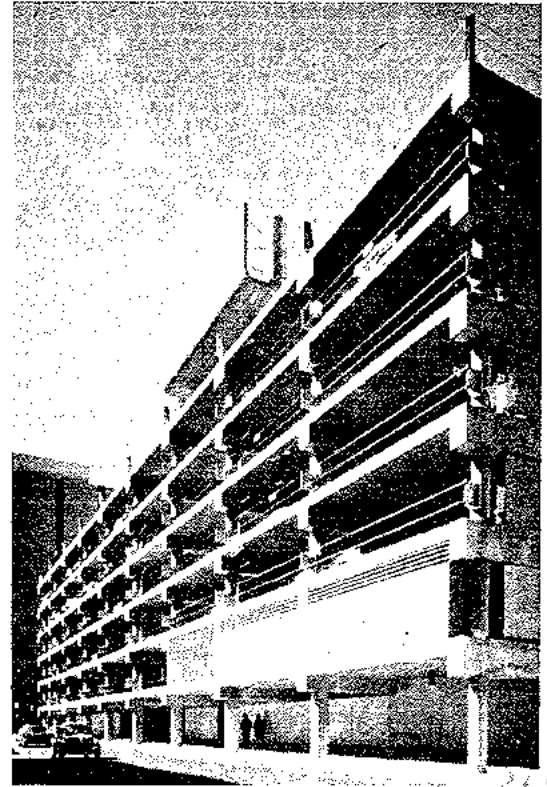
平面圖에 있어, 三角形 의
長邊에 沿한 個室과 複道의
바닥레 벨이 半層내려 있으며,
空間의 變化와 監視의 便利性
이 엿보인다.

위-스는 「「.....모든 個室 에
는 外部에 面한 窓
이 必要하다. 三角
三角形은 그 面積에
대해서 한층진 둘레
를 준다.....
나는 三角形의 建物
을 設計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三角形이란 棼 彫刻
의인 形態라고 보며,
長方形이나 円보다
도, 오히려 興味있는
循環을 可能하게 한
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라고 이建物の 計劃書에 대해
서 말하고 있다.

一見 曲芸라고 생각되는 形
體는 其中複道 밑에 多目的
의 홀에 감추어져, 拘留所의 새
로운 循環을 만드는 同時에,
위-스의 個室에 대한 생각
과, 形態에 대한 理解에서 發
想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⑩ 玄関
- ⑪ 個室
- ⑫ 個室
- ⑬ 西側外觀
- ⑭ 駐車場
- ⑮ 駐車場 1階平面図



하러·위-스는 1938년에 미사츄세스工科大学에서, 建築学士를 取得 1936年에서 1932年까지, 에일大学에서 修学. 1938~1939까지 구란부록·아카데미에서 計劃研究生의 資格을 얻어 修学하고 1939~1940까지 마사츄세스工科大学에서 研究助手로 勤務. 1940년에 SOM시카코事務所 勤務. 1947년에 個人事務所 開設.

마감工事: 外壁은 콘크리트
미장, 粒狀광내 기
돌부치기. 内部는
벽이 콘크리트 부
록塗装 마감. 바닥
은 吸音 때문에 카
-페트 깔기.

회원의 한마디가 '건축사'지의 질을 바꾸어 놓을수도 있습니다.

다음 10월호로 "건축사"지는 창간 13주년을 맞습니다. 기관지 발행의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은 무엇보다도 "건축사"가 우리 건축계에 꼭 존재해야 할 매체라고 믿어주신 협회회원 여러분의 덕분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적인 성장을 볼때 정상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련을 극복 해야 할 시급한 문제 해결을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편집 내용을 회원위주의 기사로서 충당함이 편집체제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되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기획방법을 결정해 나가려 합니다.

아래 설문서에 응답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 "건축사"지 편찬위원회에 반영될것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근거로 우리 "건축사"지를 도약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절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을 읽으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 1) 본협 편찬위원 구성관계

- 가. 만족
- 나. 개선
- 다. 기타

(문 2) 구독하시는 방법에 ○표 해 주십시오.

- 가. 협회 사 도지부를 통하여
- 나. 정기 송달로 입수
- 다. 기타

(문 3) "건축사"지를 구독하신 후 주위의 어느

분들과 나누어 보시며 대개 몇분이나 됩니까?

- 가. 직원 또는 보조사
- 나 가족, 친지
- 다 기타

(문 4) 해외 건축 서적은 어떤것들을 구독 하십니까?

- 가. 일본
- 나 미국
- 다 기타

(문 5) "건축사"지의 기사내용중 마음에 드는 것을 열거한다면.

- 1.
- 2.
- 3.

(문 6) "건축사"지의 기사내용,중마음에 안드는 것을 열거한다면

- 1.
- 2.
- 3.

(문 7) "건축사"지의 편집방향이나 레이아웃트, 광고 등 희망사항을 몇가지만 써 주십시오.

- 1.
- 2.
- 3.

(문 8) "건축사"지에 기고되고 있는 회원작품에 대한 의견.

- 1.
- 2.
- 3.

(문 9) "건축사"지를 받아보신 후 장서로서 소장하고 있으신지?

(문10) 건축관계 아닌 일반문화면도 게재한다면

- 가) 좋다.
- 나) 나쁘다.
- 다) 기타

(문11) 건축계 유관단체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 가) 좋다.
- 나) 나쁘다.

(문12) 기타 저희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자르는 선 ①

접는 선 ①

우편 봉합 엽서

20원 우표

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9-1

대한건축사협회 출판부 귀중

접는 선 ③

자르는 선 ②

뒷면의 봉합한 지

접는 선 ②

자르는 선 ③

<일본 기술을 도입>

콘크리트, 몰탈, 푸라스타(石灰) 防水·防湿用

하이너루 防水劑

수성페인트混和劑

사용후 다시찾는 防水工의 마약

◆ 特徴·利點 ◆

- * 防水콘크리트로 母体防水가 可能함.
- * 塩類, 酸類에 強하며 金屬性부식이 全無.
- * 用途가 다양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 * 防水, 防濕, 防腐效果는 100%이다.
- * K. S 規格에 맞은 優秀品質.
- * 수성페인트 混和劑는 100% 방수효과를 낸다.
- * 價格低廉, 經濟性이 倍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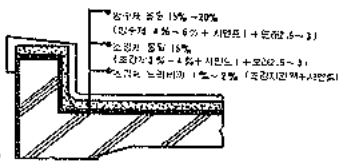
◆ 用 途 ◆

- * 터·널 地下室 屋上 벽체 옥실防水
- ◆ 사 용 법 ◆
- * 콘크리트용은: 시멘트중량비 2%이상.
- * 몰탈용은: 시멘트중량비 4%이상
- * 석회용은: 석회중량비 4%이상.
- * 使用水量에 混和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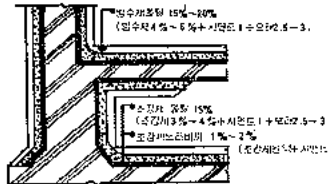
◆ 제품성능 ◆

- * 국립건설연구소(KS규격에 합격), 대한주택공사(KS규격에 합격), 국립공업시험원(KS 규격에 합격), 상용메이콘시험실(強度시험), 日本工業規格(JIS)에 의한 시험성적이 品質을 보증함.

① 屋上, 베란다等 防水工法



② 地下室等 防水工法



하이너루工法에 의한 소요재료

재료	시멘트	모래	하이너루원액소요량			비 고
면적			조강페스트	조강몰탈	방수몰탈	기준량
			70%	3%	4%	이 상
100M ²	(42.75포) 1,710kg	3.0M ³	42kg	27kg	30kg	참가요

* 방수콘크리트는 시멘트 중량비 2%이상 첨가.

예: 320kg (1 M³) × 2% = 6.4kg (하이너루방수제)

四季節 土木建築工事を 용이하게하는

하이너루 防凍劑 早強劑

시멘트混和劑의 最新·最優秀製品

◆ 特徴·利點 ◆

- * 1일, 3일, 7일 強度가 보통 콘크리트 3일, 7일, 28일 強度와 同一.
- * A, E 劑, 減水劑, 分散劑役割
- * 工事費의 減少, 工期短縮, 凍害防止.
- * 強度增大로 Cement 절감.

◆ 用 途 ◆

- * 初期強度를 要하는 工事 * 突貫工事, 水中工事
- * 凍期工事(-15℃), 緊急을 要하는 工事
- * 시멘트 2次製品
- * 早強 Cement를 要하는 工事
- * 防水工事に 止水劑로 사용.

◆ 使用法 ◆

- * 早強효과: 시멘트중량비 1~5%첨가
- * 防凍효과: 시멘트중량비 6~12%첨가
- * 止水효과: 100%원액을 사용
- * 사용水量에 稀釋사용

◆ 品 質 ◆

- * 性能은 국립건설연구소, 국립공업시험원, 日本工業規格(JIS A-6101에 의한 시험 성적), 大韓住宅公社 시험성적이 外國産을 능가함을 증명한다.

◆ 納品実績 ◆

* 양양양회공업주식회사 * 대한주택공사(경남기업, 미성건설, 정우개발)
 * 부산시청 * 부산세관 * 수협중앙회 * 자명건설Co. * 총성건설Co.
 * 태평양건설Co. * 삼익주택(여의도 Apt) * 삼부트진(여의도 타워형 Apt)
 * 부산시청 영도제2대교가설공사(홍파공업) * 대한주택공사 사직동아파트(경남기업)
 * 부산제7부두축조공사(동아건설)의 200여처

三龍化學工業株式會社

서울 ⑥ 5377·7892 부산 ③ 0777 ② 0113·⑤ 0253 대구 ⑦ 1797 이리 2945 인천 ⑤ 5125 성남 ② 1807 청주 ②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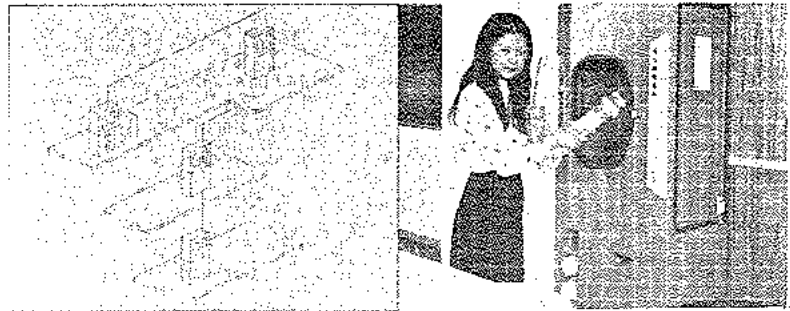
物品, 伝票運搬의 現代化設備

선진국의 대열에 선 우리의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중외상사가 日本 Nippon Air-Shooter 와 제휴, 현대 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Air Shooter.

서류반송만이 아니고 문석자료의 급송, part 반송등 풍부한 기종과 system으로 모든 분야에서 쓰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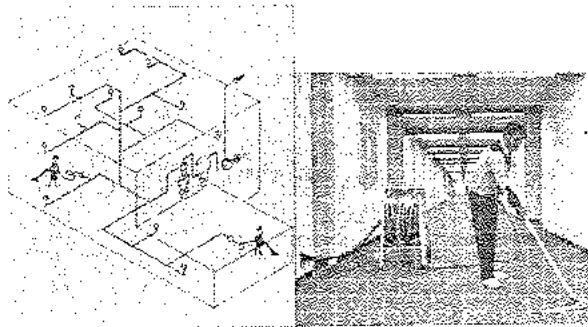
먼지의 수집방법을 크게 바꾼

NAS Nippon Air Shooter;

Central Refuse

먼지진공수송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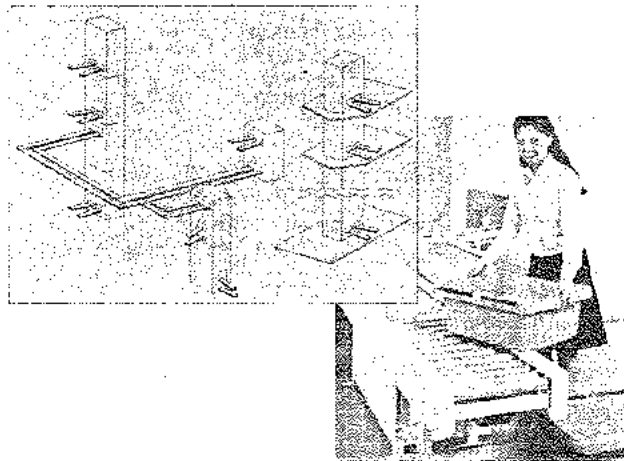
초대형의 진공소제기라고 생각해주세요. 먼지는 投入口에서 수송관을 통하여 수집된다.



어디서나 利用되고 있는

Vertical Conveyor System

15kg 以下の重量으로 tray 에 들어갈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반송된다. 즉, Bilding 内の Track 대량 반송에도 편리하다.



○ Air-Shooter 의 主 利用하는곳

銀行, 商社, Maker, 病院, 電力会社, 出版社, 保險, 証券会社, HOTEL, Golf 場 等.

製造元



日本 AIR SHOOTER 株式会社



韓國總代理店

大韓中外商事株式会社

서울市 城北區 下月谷洞80-2 94·0981~4 (교) 95·4449 (직)

시멘트 혼和劑 標準型

AE · 分散劑 · 減水劑

췁폴·씨

CHUPOL · C

▲ 췁폴·씨의 特性

- 單位水量的 減少 (8 - 12%)
- 作業性이 좋아짐.
- 強度增大로 Cement 節減 (8 - 10%)
- 工期短縮, 工事費節減
- 過多使用하여도 效能不變
- 非이온性이므로 鉄骨腐蝕性 없음.

▲ 췁폴·씨의 使用法

- 使用하는 Cement 重量의 0.04%가 標準임.
콘크리트 1m³을 만들때 췁폴·C 사용으
로 절감되는 시멘트 량은?
(보통 콘크리트 1m³ 만들때 시멘트 320
kg 이 소요된다면)
췁폴·C 사용시 시멘트 10%를 절감한 (320
kg - 32kg) 288kg에 췁폴·C 를 115g (288
kg의 0.04%)을 투입사용하시면 됩니다.

- ◆
- 시멘트 한포 (40kg) 에
췁폴·씨 16g.

經濟的이며 品質優秀한
最新混和劑

▲ 使用 量

췁폴·NR 遲延型

- 지연효과 : 시멘트 重量의 0.1%
- 早強효과 : 시멘트 重量의 0.5%

췁폴·Z-I 早強型

／ 脫型油는 폴리췁

▲ 品質保證

- 本 製品은 日本에서 20余年間 使用한 特許品임.
- 技術導入 및 合作投資로 国内 生産供給
- 国立건설연구소, 국방부조달본부, 농업진흥공사
品質시험합격, 日本工業規格 (JIS) 合格.



新韓有機化學工業株式會社

TEL : 仁川 ⑥ 0031 · 1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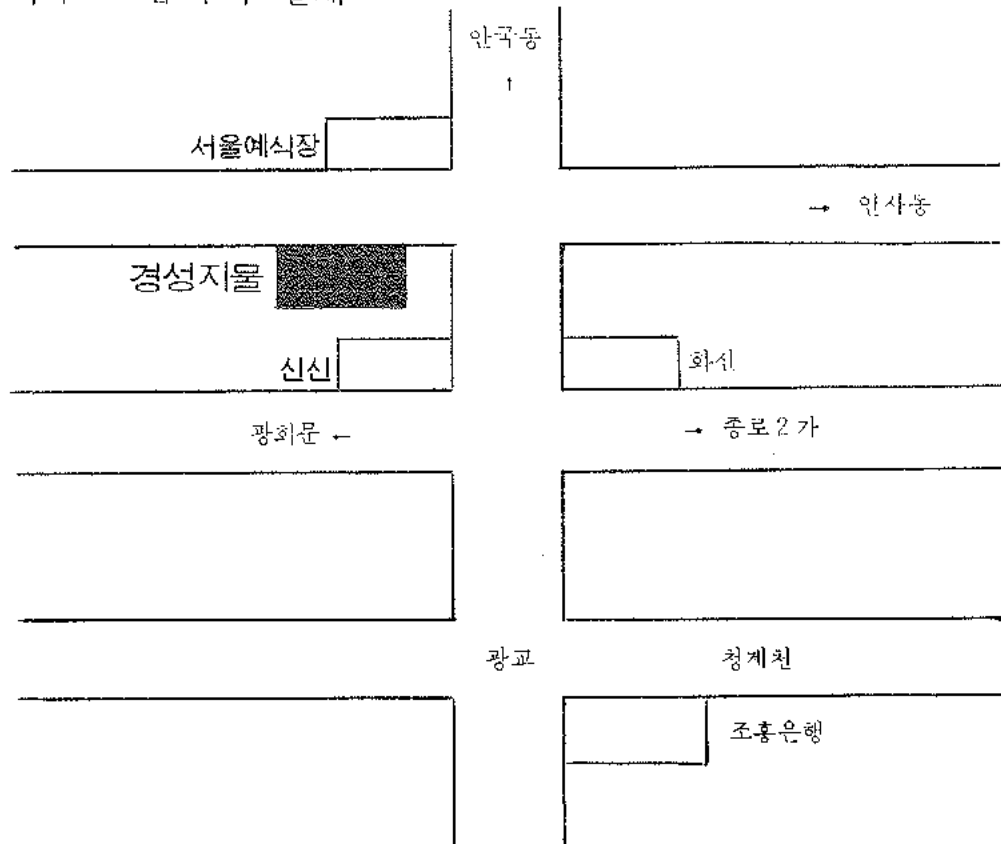
本社 · 工場 : 京畿道 富川市 春衣洞 209 서울連絡所 : 22 - 5486 · 23 - 8821

경성지물포 이전안내

80년의 전통과 신용을 자랑하 는
 서울의 명소 경성지물포를 항상
 아껴주시는 고객여러분의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
 울시 당국의 도로확장공사로인하
 여 부득이 하기장소로 이전 개업
 하게되었습니다. 어제와 처럼 앞
 으로도 계속 아껴주시길 부탁하
 으며 정성을 다하여 모실것을 약
 속드립니다.

취급품목 :

종이벽지, 비닐벽지, 마직, 자사, 깔포,
 장판지, 기타 특수 고급벽지 일체



(종로 서울예식장 맞은편)

☎ 73 - 3587

예원네

솜씨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원의 색상은 더욱 새로와 졌습니다. 정확한 구도와 점진한 컬러링으로 공간미술의 획기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던 저희는 전격부터 건축계의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저희의 솜씨는 이 세는 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까지의 보람을 되새기며 쉼을 도약할 예원에게 귀하의 예술품을 맡기십시오. 예원의 예술성을 늘기만을 앞서 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시도 소감도 투시도 조감도 투시도 조
PERSPECTIVE BIRD'S EYE VIEW PERSPECTIVE
94.5784 藝園



Rocket Bo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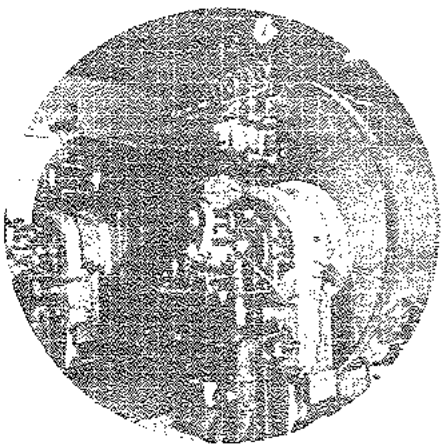
연료비 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產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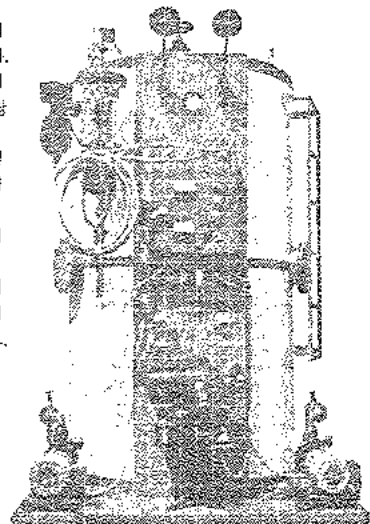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고압연관식보일러 (KR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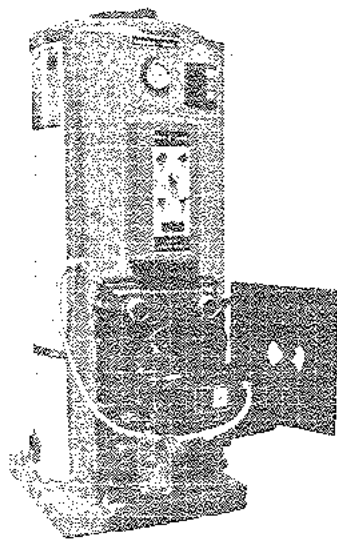
- 1ton에서 10 ton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열가스의 원손과 기온 절하한 새로운 보일러로 높은 성능의 보일러입니다.
- 연료비 보일러의 신기록을 세운 제품입니다.

전자동 증기보일러 (K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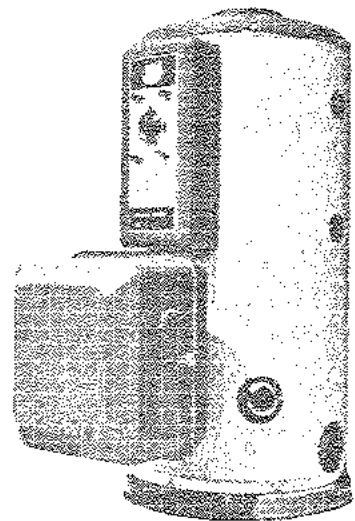
- 1000명 미만 거주자 위서는 20분내에 해결됩니다.
- 직물공장 건조 처리 증기다라이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 화학약품기 살균 난방 및 급탕용 식품가공·공장에 적합합니다.
- 미역제조용 수산물가공에 적합합니다.
- 규격 0.2에서 0.5ton의 전자동 소형 스팀보일러로 관리에 편리하고 연료비 40%가 절약됩니다.
- 전자동이므로 관리가 편리합니다.

다목적온수보일러 (KRZ)



- 난방용 급탕용 복욕탕 전용.
- 성전서 또는 오일머어니 고장시 연료화물 및 배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제품은 5만에서 40만 Kcal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취급이 간단한 one-to-uch식입니다.
- 배수가 완전 도급처리된 급탕용과 동코일이 삽입된 급탕 난방겸용이 있습니다.

전자동 소형온수보일러 (KRQ)



- 경제적인 보일러 기술의 혁신.
- 신제품 KRQ는 열기에의 안전 기술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 본제품의 개발목적은 15명 이상 30명 미만 40명 이상 60명 미만 주택의 난방과 목욕을 해결 하는데 있습니다.
- 본제품은 저렴한 시설비와 낮은 기온연료비 1/2소형 오일머어너로 전기소비기 적고 설치면적이 작은 기화성 부양 창고 등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량생산 기계화도 동종 타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비가 30% 이상 저렴합니다.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고려강철주식회사

본사: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54-6

전화: (6) 5131-4

여의도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9(세우회관 6층)

전화: (782) 7373, 7387, 8757

韓國유리는 使命感을 갖고 精進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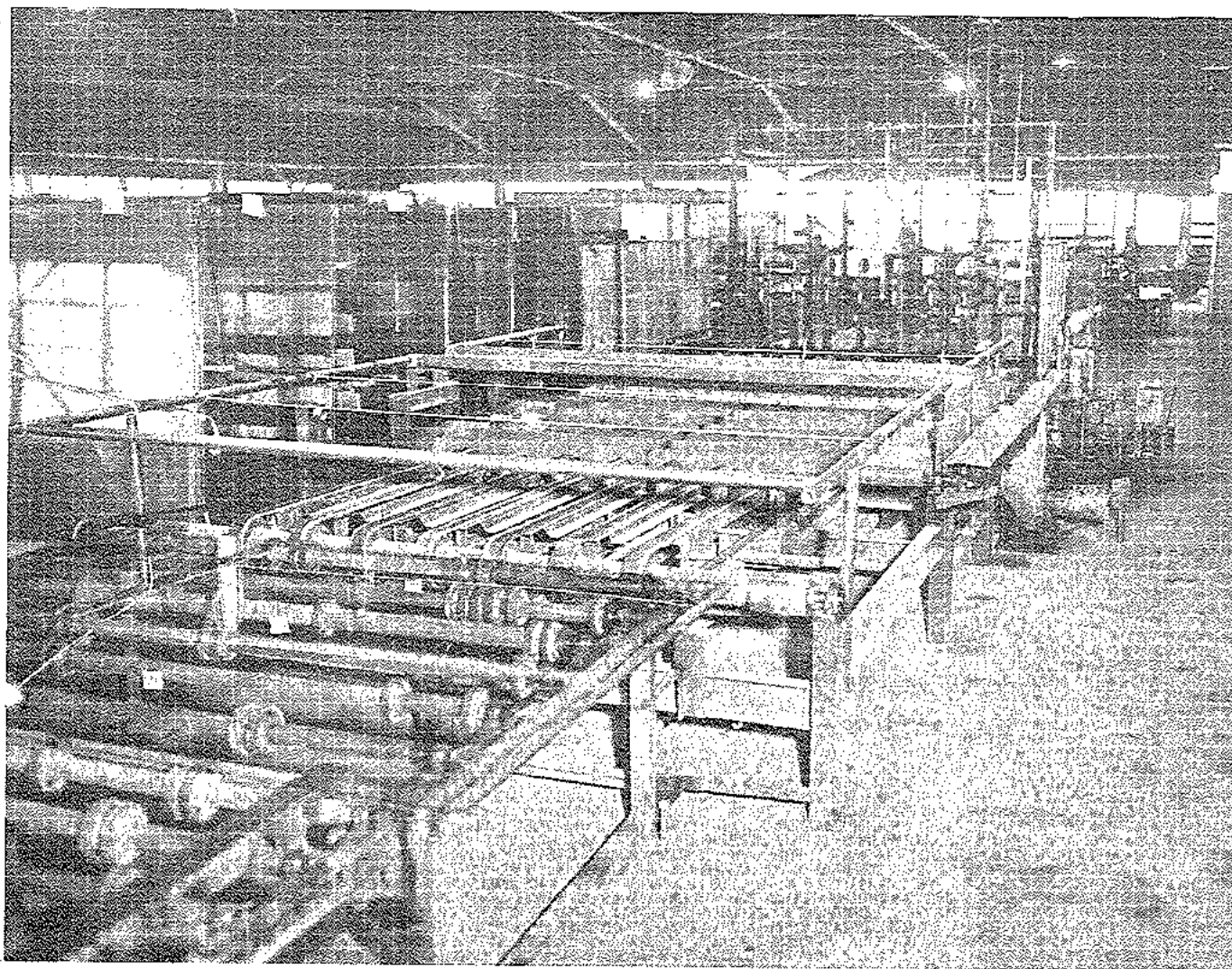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 속에서 成長하는 韓國유리는
優秀한 製品을 生産 供給하기 爲해 끊임없이 研究
努力하고 있습니다.

◎生産製品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安全強化유리

◎맑은유리最大規格

두께 (mm)	inch	길이
5	84×120	2134×3048
6	84×120	2134×3048
8	84×108	2134×2743
10	84×96	2134×2438
12	84×96	2134×2438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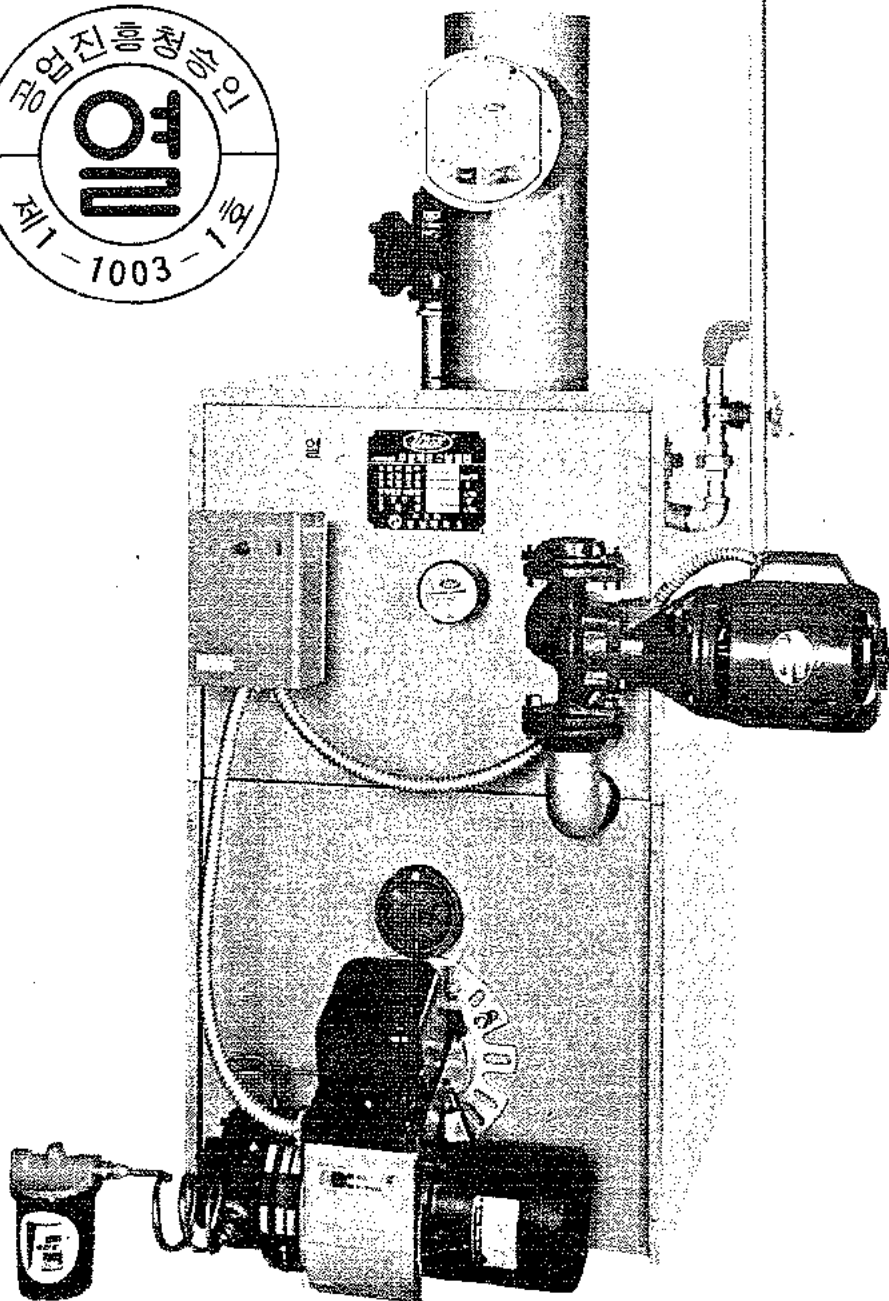
本 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75 ②3 7141~5 ⑦⑦ 8022~6
仁川工場：京畿道 仁川市 東区 万石洞2 仁川 ⑦ 0111~0119
釜山工場：慶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345 釜山 ⑤2 4066~4070

Cast Iron Boilers

뛰어난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 4 街 126-1 号

進洋商街 1 층 2 동 나열 109 号

TEL: 266-2807, 266-8015